

2026
12th Edition



코어 *CORE* 세법학

양기노트

유은종 지음

국세기본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이 책은 임팩트세법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임팩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 답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한 권의 책으로 단권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의 위·아래 여백을 다소 두었으며, 스스로 논제를 추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최종정리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3월

유은중 올림

차례

Part I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3
Chapter 02	국세기본법 총칙	4
Chapter 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9
Chapter 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15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22
Chapter 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8
Chapter 07	과세	31
Chapter 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9
Chapter 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42
Chapter 10	보칙	57

Part II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 총설	61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62
Chapter 03	익금	67
Chapter 04	손금의 범위	75
Chapter 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77
Chapter 0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83
Chapter 07	감가상각비	89
Chapter 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2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94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96
Chapter 11	충당금	100
Chapter 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104
Chapter 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104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	111

Chapter 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116
Chapter 16	합병·분할 등	119
Chapter 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28
Chapter 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129
Chapter 19	외국법인	132
Chapter 20	연결납세제도	136
Chapter 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141

Part III 소득세법

Chapter 01	납세의무자	147
Chapter 02	종합소득	149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74
Chapter 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9
Chapter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186
Chapter 06	퇴직소득	192
Chapter 07	양도소득	193
Chapter 08	비거주자	210

Part IV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217
Chapter 02	증여세	237
Chapter 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264

Part V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설	275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276
Chapter 03	과세거래	283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291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등	298
Chapter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0
Chapter 07	세액공제	315

Chapter 08	경영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316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319
Chapter 10	간이과세	327

Part VI 개별소비세법

Chapter 01	총설	335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336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339
Chapter 04	납세의무자	340
Chapter 05	과세시기(성립시기)	340
Chapter 06	과세표준	343
Chapter 07	미납세반출	346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348
Chapter 09	면세	352
Chapter 10	보칙	365

Part VII 지방세법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369
Chapter 02	취득세	372
Chapter 03	등록면허세	397
Chapter 04	재산세	400
Chapter 05	지방세특례제한법	410

Part VIII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설	417
Chapter 02	직접국세	418
Chapter 03	간접국세	506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513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521
Chapter 06	보칙	528

PART I

국세기본법

-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 Chapter 02 국세기본법 총칙
- Chapter 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Chapter 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 Chapter 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 Chapter 07 과세
- Chapter 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Chapter 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 Chapter 10 보칙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SECTION 0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why ?

2. 조세법률주의

(1)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법정주의

① 위임입법문제 :

② 조세예규통첩의 문제 :

2) 과세요건명확주의

① 불확정개념문제

㉠ 가치개념 :

㉡ 경험개념 :

② 차용개념문제 :

3) 소급과세의 금지

(2) 해석상의 원칙

판례

(1) 엄격해석의 원칙 :

(2) 목적론적 해석 :

(3) 집행상의 원칙(합법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4 Core 세법학

SECTION 02 조세평등주의 (08년 기출)

1. 개념

(1) 조세평등주의의 개념

(2) 공평의 개념

1) 수평적 공평

2) 수직적 공평

2. 조세평등주의

(1) 실질과세의 원칙

(2) 조세회피금지의 원칙 (08년 기출)

구 분	사 법	세 법	예
조세회피 행위			
조세포탈 행위			
절세행위			

(3) 조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주의

Chapter 02 국세기본법 총칙

SECTION 01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친족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2) 경제적 연관관계

- ①
- ②
- ③

(3) 경영지배관계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SECTION 02 기한연장의 특례

1.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

:

2.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시 서류제출기한 특례 (발신주의)

(1) 우편신고 시 발신주의

(2) 우편에 따른 불복청구

(3) 전자신고

SECTION 03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2년 기출)

1. 기한연장의 사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 기한연장의 신청 및 승인

(1) 신청

(2) 기한연장 통지

3. 기한연장기간

① 신청·청구 기타 서류제출 :

② 신고 :

SECTION 04 **서류의 송달** (04년 기출)

1. 의의

2. 서류의 송달장소

(1) 원칙

(2) 예외

- ① 연대납세의무자 :
- ②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
- ③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 :
- ④ 신고된 장소 :

3. 서류의 송달방법

(1) 원칙

1) 교부송달

①

② 보충송달 :

③ 유치송달 :

핵심

판례

2) 우편송달

①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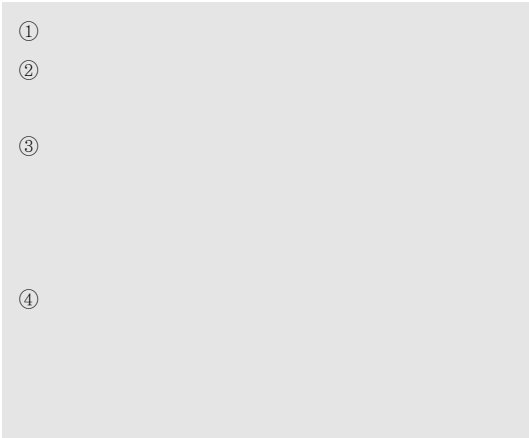
④

② 보충송달 :

③ 유치송달 :

3) 전자송달

① 전자송달의 신청



② 전자송달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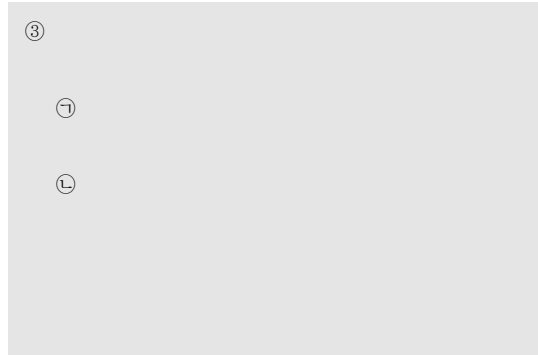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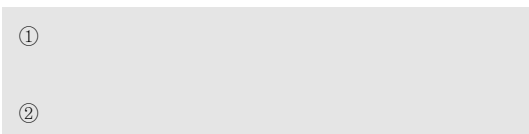
③ 재신청

④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예외 : 공시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사유(엄격해석)



3) 공시송달 방법 :

4. 효력발생시기

① 교부·우편송달 :

② 전자송달 :

③ 공시송달 :

판례 보충송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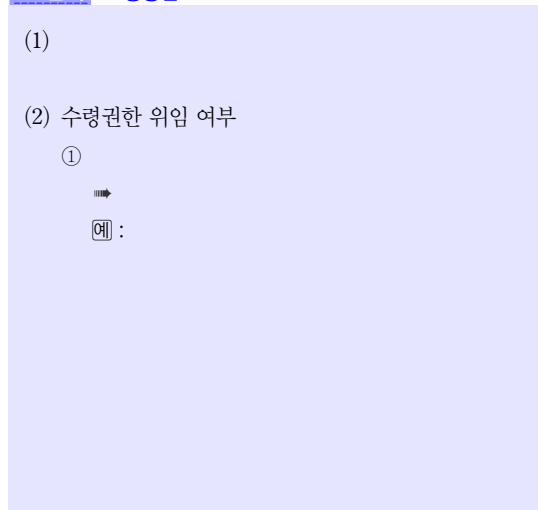
(1)

(2) 수령권한 위임 여부

①



예 :



8 Core 세법학

②
⇒
예 :

판례 공시송달

(1)

(2) ①

②

SECTION 05 인격 (84,11년 기출)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

(1) 당연 법인 의제(수익을 분배 ×)

①

②

(2) 신청·승인에 의한 법인 의제

①

②

③

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취급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1) 원칙

①

②

2)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는 경우 등

① 확인되는 부분 :

②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

3)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Chapter 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SECTION

01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88,92,00,08,09,10,13,15,18,19년 기출)

(1) 의의

why ?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1)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3) 경제적 실질(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실질과세

✚ 보론 위법소득과 과세 (05,10,25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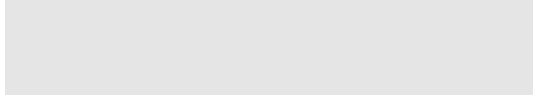
(1) 학설

1) 부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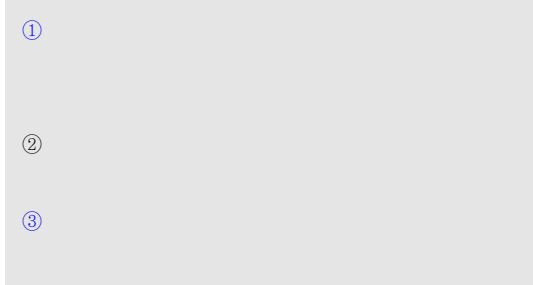
①

②

10 Core 세법학



2) 긍정설



(2) 판례

(3) 결어



판례

(1)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① 원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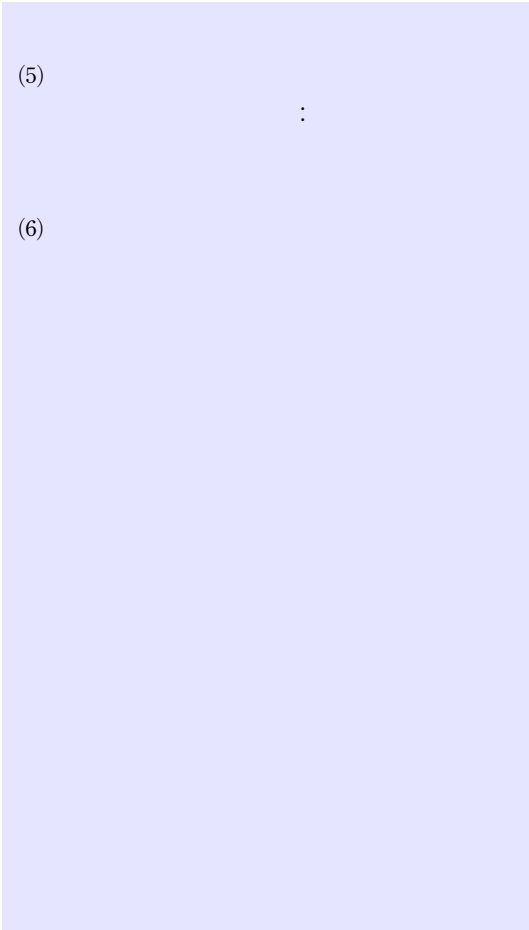
② 예외 :

*

(2)

(3)

(4)



2. 신의성실의 원칙 (90,01년 기출)

(1) 의의

why?

(2) 적용대상

* 다만,

(3) 신의성실의 원칙

1) 과세관청 신의칙

① 적용요건

- ㉠
- ㉡
- ㉢
- ㉣

② 효과

2) 납세자 신의칙 (17년 기출)

① 적용요건

- ㉠
- ㉡
- ㉢

② 효과

(4) 신의칙의 한계(합법성과의 관계)

<

판례 과세관청 신의칙

- (1)
- (2)

12 Core 세법학

(3)

(4)

1)

판례 남세자 신의칙

(1) 신의칙을 위배하지 않은 경우

1)

기출

2)

(17년

1)

3)

(2) 신의칙을 위배한 경우

1)

(근거 : ①

②

)

2) 수출업자 :

3. 근거과세의 원칙

(1) 내용

(2) 이유의 부기

(3) 결정서 열람·복사

(4) 추계조사에 대한 입증책임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SECTION
02

세법적용의 원칙 (91년 기출)

1. 세법해석기준

2. 소급과세금지

(1) 입법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 (98,07년 기출)

1) 의의

why?

2)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① 진정소급

② 부진정소급

보론 부진정소급과세 문제

(1) 학설의 견해

1) 긍정설

①

②

2) 부정설

①

②

14 Core 세법학

(2) 판례 :

(3) 현재 :

(4) 결어 :

3) 유리한 소급효

(2) 해석·관행에 따른 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

(07년 기출)

1) 의의

2) 비과세관행 적용요건 (07년 기출)

①

②

③

핵심

3) 요건 충족의 효과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보충적 적용)

세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②

③

SECTION

03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1)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2)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②

③

Chapter 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SECTION

01 납세의무의 성립 (94년 기출)

(1) 기간과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

(2) 특정행위과세

- ① 상속세 :
- ② 증여세 :

(3) 가산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그 밖의 가산세 :

(4) 예외

- ①
- ②
- ③

핵심

SECTION

02 납세의무의 확정 (94년 기출)

(1) 신고납부세목

(2) 정부부과세목

(3)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

- ①
- ②
- ③
- ④
- ⑤

SECTION

03

수정신고의 효력

①

②

SECTION

04

경정 등의 효력

1. 학설의 견해

(1) 흡수설

- ① 개념 :
- ② 경정처분의 효력 :
- ③
- ④ 소멸시효 :
- ⑤ 불복청구의 대상 :
- ⑥ 문제점 :

(2) 역흡수설

- ① 개념 :
- ② 경정처분의 효력 :
- ③
- ④ 소멸시효 :
- ⑤ 불복청구의 대상 :
- ⑥ 문제점 :

(3) 병존설

- ① 개념 :
- ② 경정처분의 효력 :
- ③
- ④ 소멸시효 :
- ⑤ 불복청구의 대상 :
- ⑥ 문제점 :

2. 국세기본법 규정

(1) 증액경정처분

(2) 감액경정처분

3. 최근 대법원의 해석

(1) 증액경정처분

- ① 조세불복의 대상 :
- ② 청구할 수 있는 세액 :

*1

*2

(2) 감액경정처분

4. 증액경정처분시 후속조치의 효력

SECTION 05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사유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87,13,19,25년 기출)

(1) 취지

(2) 제척기간

1) 상속세·증여세·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외의 국세

①

:

②

(

):

③

() :

④

:

⑤

:

세부 "부정행위"란

①

②

③

④

⑤

2) 상속세·증여세·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①

18 Core 세법학

②

③

3) 상증세 포탈의 경우 특례제척기간

· (

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적용배제 : ①

②

4) 조세쟁송 등의 특례제척기간

① 조세쟁송

㉠

㉡

(1) 학설의 견해

1) 편면적용설 :

2) 양면적용설 :

(2) 판례의 태도

②

③ 상호합의 :

④ 경정청구

㉠

㉡

⑤

⑥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⑦

5) 명의대여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 ①
- ②
- ③

(3) 기산일

- ①
- ②
- ③
- ④
- ⑤

(4) 효과



판례

(1) 부정행위

①

②

③

④

3. 징수권의 소멸시효 (87.13년 기출)

(1) 취지

(2) 소멸시효

1) 소멸시효기간

- ①
- ②

*

2) 기산일

- ①
- ②
- ③
- ④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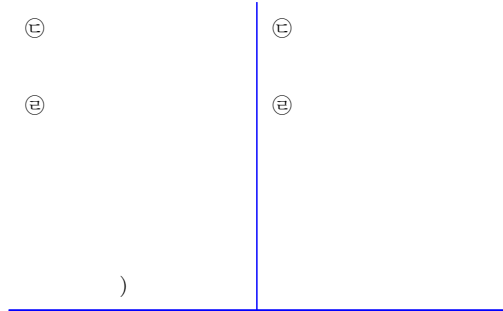
(3) 중단과 정지

1) 중단

① 개념 :

② 중단 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새로운 시효 진행시기
㉠	㉠
㉡	㉡



2)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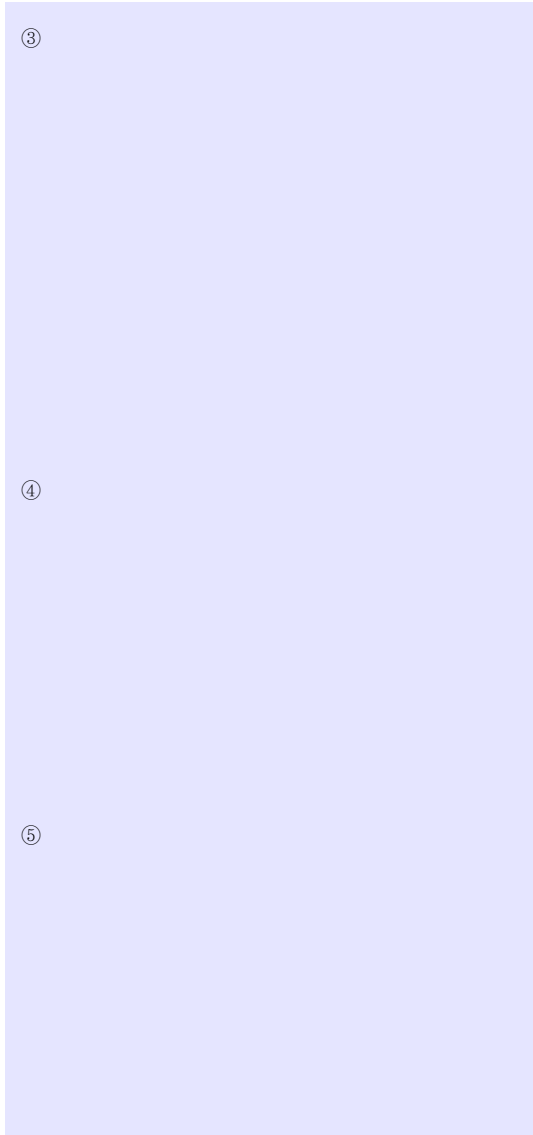
- ①
- ②
- ③

(4) 효과



판례

- ①
- ②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SECTION

01 **납세의무 승계**

(취지 :)

1. 합병

2.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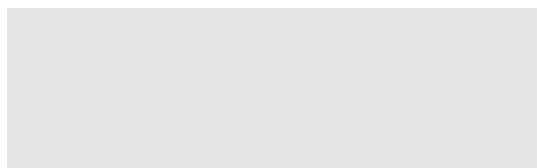
(1)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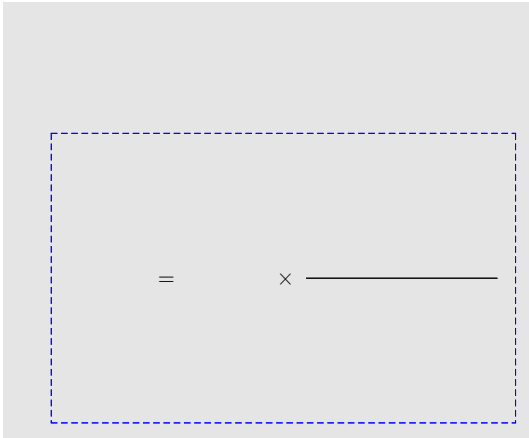
①

상속으로 받은 재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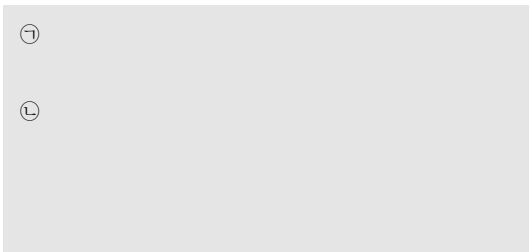
②





(2) 상속인 2명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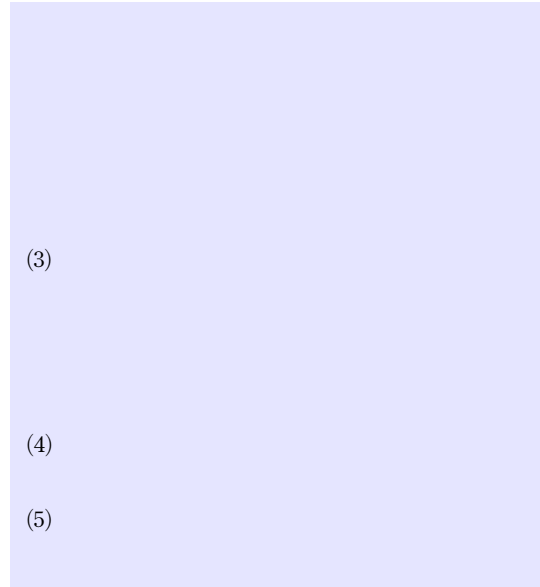
①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



②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한도 :

(3)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피상속인에 대해 행한 처분의 효력



SECTION 02 연대납세의무

1. 의의

2. 국세기본법 규정

(1)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1) 존속분할의 경우

2) 소멸분할의 경우

(3) 신회사 설립시 연대납세의무

3. 소득세법 특례

①
②

핵심

보론

(1) 절대적 효력

(2) 상대적 효력

판례

①
②
③
④

SECTION 03 제2차 납세의무 (83년 기출)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20년 기출)

(2) 법적 성격

① 부종성

② 보충성

판례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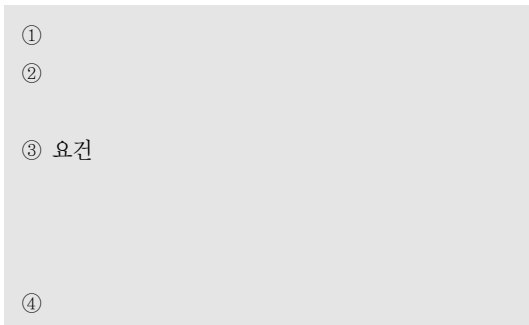
③

(3) 성립

(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척기간

2. 제2차 납세의무의 유형

(1)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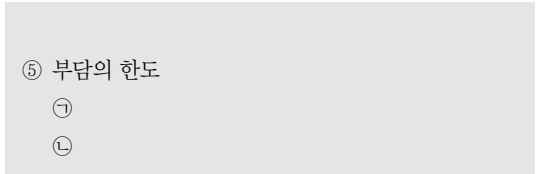


①

②

③ 요건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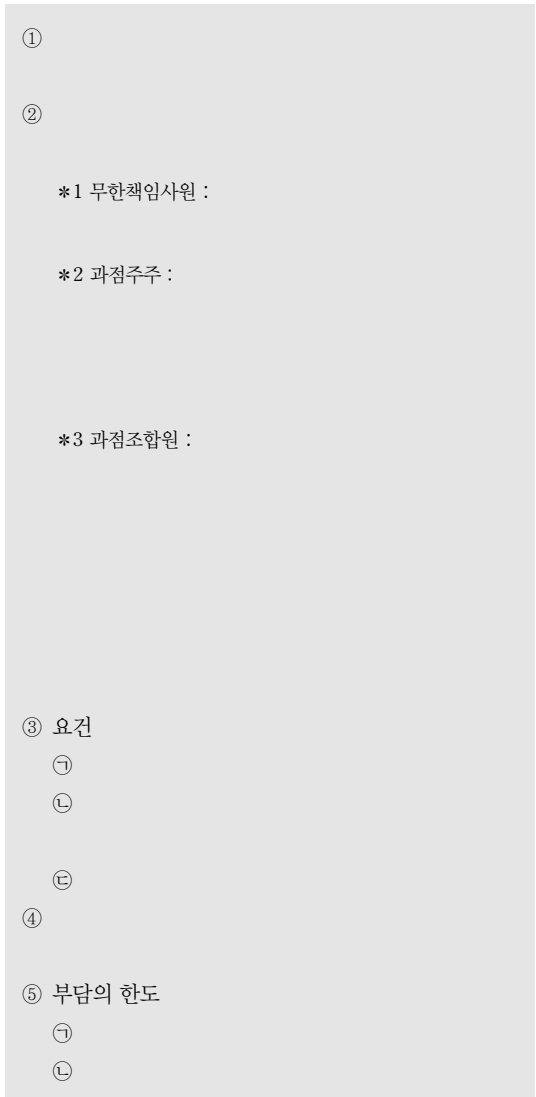
⑤ 부담의 한도

㉠

㉡

*

(2)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89.06.20년 기출)



①

②

*1 무한책임사원 :

*2 과점주주 :

*3 과점조합원 :

③ 요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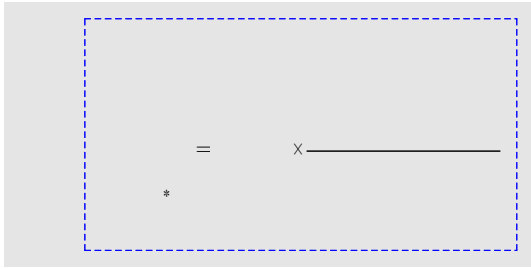
㉢

④

⑤ 부담의 한도

㉠

㉡



*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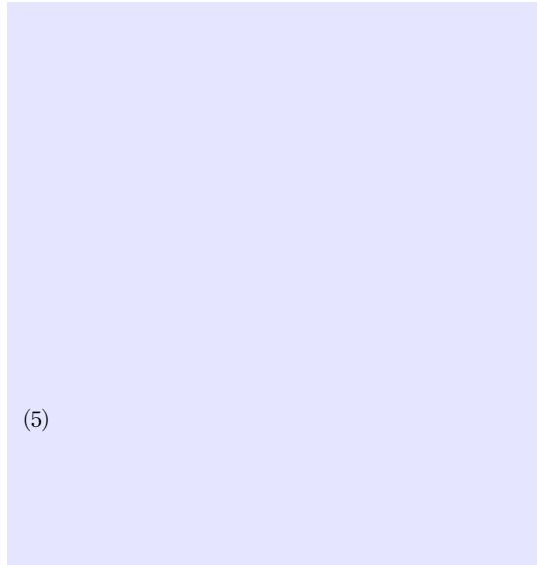
(1)

(2)

(20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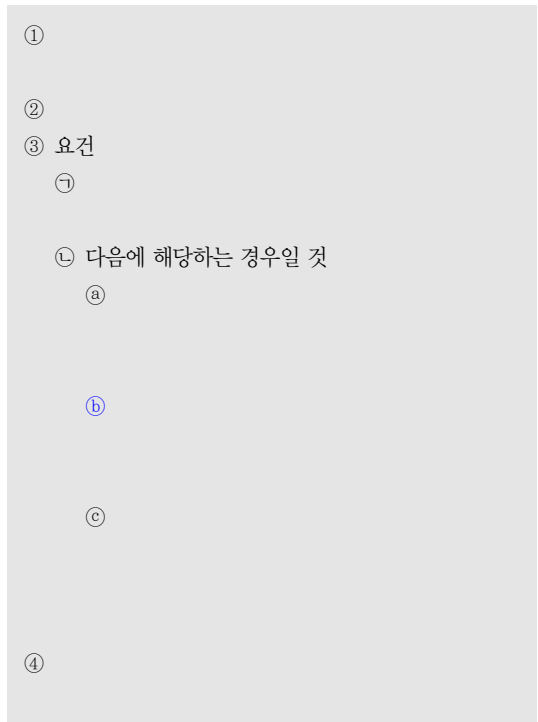
(3)

(4)



(5)

(3)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판례



(4)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85.03.23년 기출)

①

②

㉠

㉡

③ 요건

㉠

㉡

㉢

④

⑤

㉠

㉡

국기

(

) → ∴]

②

(3)

-)

(

판례

(1)

(2) ①

[근거 : ㉠

㉡ : ㉢

Chapter 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SECTION

01 국세우선권 (80,86,90,91,95,99,02,06,10년 기출)

1. 의의

why?

2.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

(2) 공익비용

(3) 소액임차보증금

(4) 임금채권

① . . . :

② :

(5) 피담보채권

①

②

③

* 법정기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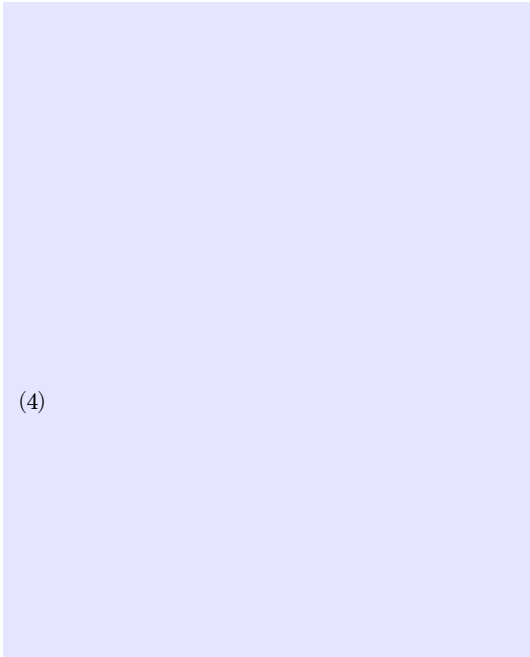
⑧

판례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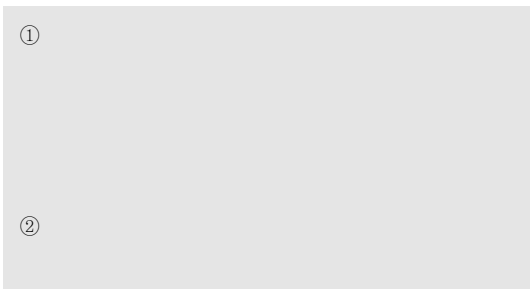
(4)

3. 당해세

(1) 당해세 우선 적용

(2) 당해세 적용 예외

(6) 재산 소유자 변경시 피담보채권



①

②

판례



①

②

(근거 :)

_____)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조세 상호 간의 우선순위

(1) 압류에 의한 우선

(2)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_____ > _____ > _____

☞ 판례

①

②

6. 거짓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 (91년 기출)

(1) 취소청구

(2) 거짓계약의 추정

SECTION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06,10년 기출)

(1) 의의

(2) 요건

①

②

③

④

(3) 효과

핵심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확장

☞ 판례

(1)

(2)



Chapter 07

과세

국기

SECTION

01

과세관청

①

②

SECTION

02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81,87년 기출)

(1) 신고자 적격

(2) 신고사유

(3) 신고기한

(4) 추가자진납부

(5) 효력

1) 확정력

2) 수정신고의 효력

①

②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구 분		가산세 감면율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내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내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내	%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내	%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내	%
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초과 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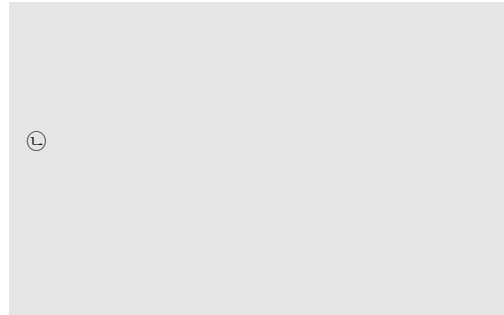
2. 경정청구 (96.09.12,16,25년 기출)

(1) 통상적 경정청구

① 청구자 적격 :

② 청구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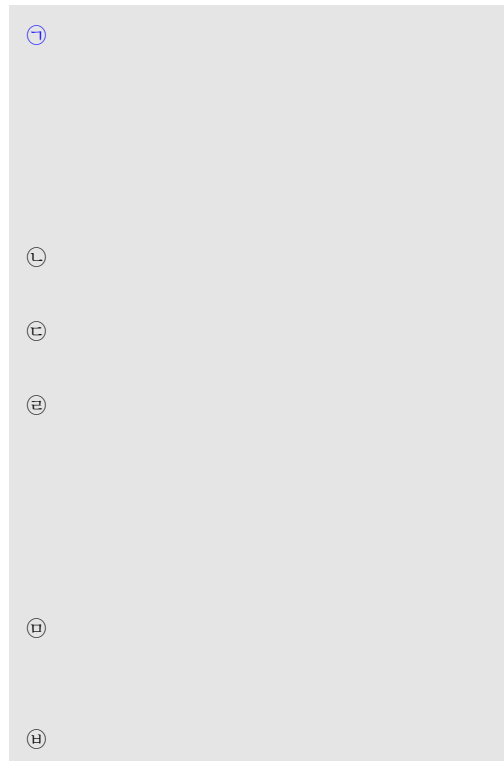


③ 청구기한 :

(2) 후발적 경정청구

① 청구자 적격 :

② 사유



③ 청구기한 :

(3) 원천징수대상자 등의 경정청구

① 경정청구

㉠ 청구자 적격 :

㉡ 사유 :

㉢ 요건 :

㉣

② 경정청구도 가능

*

(4)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 청구

1) 청구자 적격

2) 경정청구기한

(5) 청구효력

① 통지의무 :

②

③ :

판례

(1)

(2)

(3)

(비교 :

)

(4)

(5)

(6)

(7)

(8)



). [근거 :

①

(

②

]

(9)

(10)

(11)

3. 기한 후 신고 (23년 기출)

(1) 신고자 적격

(2) 신고기한

(3) 자진납부

(4) 결정통지

(5) 효력

- ①
- ②

구 분		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내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초과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초과	%
이내		

4. 기한후납부

SECTION 0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93,05,18년 기출)

1. 의의(법적성격)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구 분	일 반	부 정
무신고가산세	%	% (역외거래 : %)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	% (역외거래 : %)

납부지연가산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⑥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액
 = Min(①, ②)
 ① = ㉠ + ㉡ + ㉢ + ㉣
 ㉠ × %

㉠ × ()

× %

㉡ ×

× %

㉢

② 한도 :
× %()

②

③

④

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①

㉠

㉡

㉢

㉣

(3)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①

②

3. 가산세 감면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2) 가산세 감면하는 경우

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이내 ()

구 분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개월	%
㉡ 개월~ 개월	%
㉢ 개월~ 개월	%
㉣ 개월~ 년	%
㉤ 년~ 년 개월	%
㉥ 년 개월~ 년	%

②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이내 ()

구 분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개월	%
㉡ 개월~ 개월	%
㉢ 개월~ 개월	%

③

우 :

④

:

⑤

:

⑥

:

4. 가산세 부과요건

= +

판례

(1) 정당한 사유

①

②

(2)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
-

(3)

(4)

(5)

(6)

(7)

(8)

(9) ①

) (

②

(10) ① :

② :

()

(11)

Chapter 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SECTION

01 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79년 기출)

1. 국세환급금

(1) 법적성격

(2) 발생원인 (24년 기출)

1) 과오납금 :

① 과납금 :

② 오납금 :

2) 환급세액 :

2. 국세환급대상자

① 원칙 :

② 예외(국세기본법 통칙 내용) :

*

3. 결정과 총당

(1) 결정(즉시)

(2) 총당

① 총당의 유형

㉠ 직권총당 :

㉡ 동의총당 :

② 총당의 소급효

국세환급금 발생일 :

③ 납세자 신청에 의한 총당

④ 원천징수세액 간의 총당

⑤ 장기간 미수령한 소액환급금의 국세 총당

⑥ 국세환급금의 총당 관련 순서

4. 지급

5. 국세환급금 규정의 적용 배제

6. 권리의 양도와 소멸시효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②

(2)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판례

(1) 과오납금 :

(2)

why?

SECTION

02 물납재산의 환급

1. 물납재산의 환급

(1) 원칙 : 물납재산의 환급(국세환급가산금 배제)

(2) 예외 : 금전환급

①

②

③

2. 환급방법

①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

3.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4. 과실의 귀속

판례

SECTION

03 국세환급가산금

1. 법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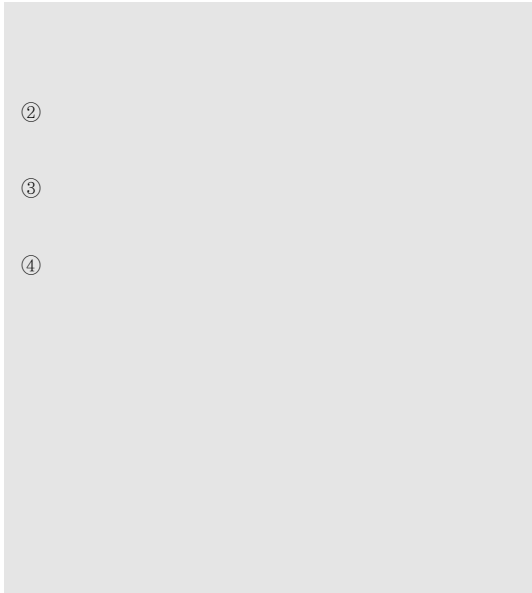
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

3. 기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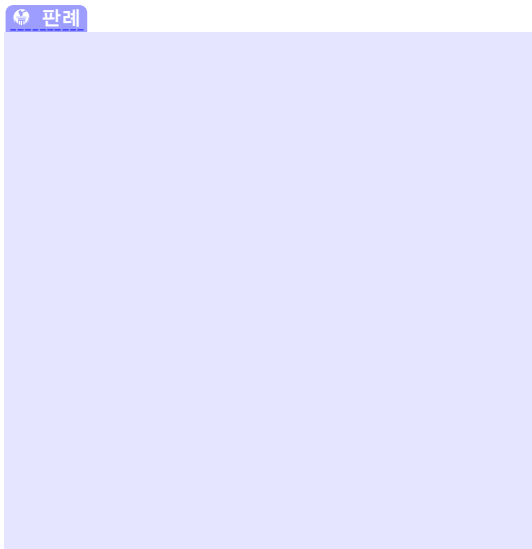
①

*



- ②
- ③
- ④

4.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판례

Chapter 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SECTION

01 조세불복 (78,88,24년 기출)

1. 개요

() ⇨ ⇨

보론 행정심판 전치주의(24년 기출)

취지

판례

(1) 전치주의를 거친 경우로 보는 경우

①

②

(2)

(3)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지 않는 판례

①

②

③
(24년 기출)

세부

①

②

③

㉠
㉡

2. 불복대상 (22년 기출)

판례

(1)

(2)

(3)

(1)

, ②

③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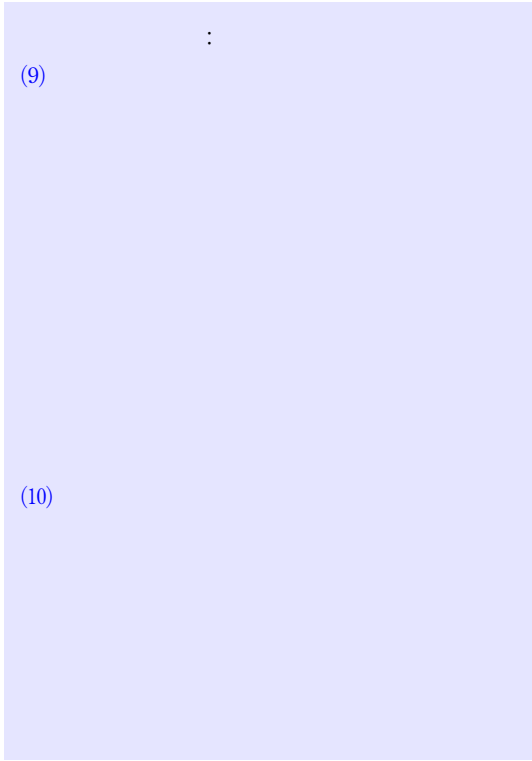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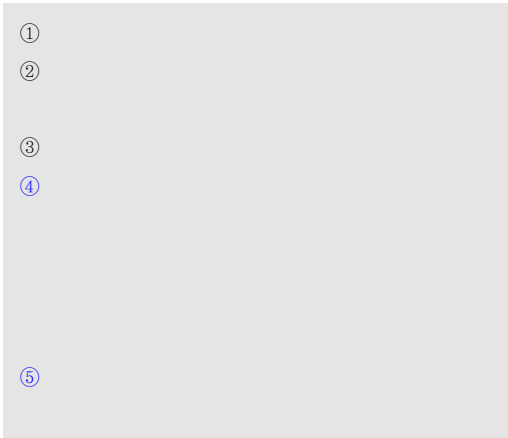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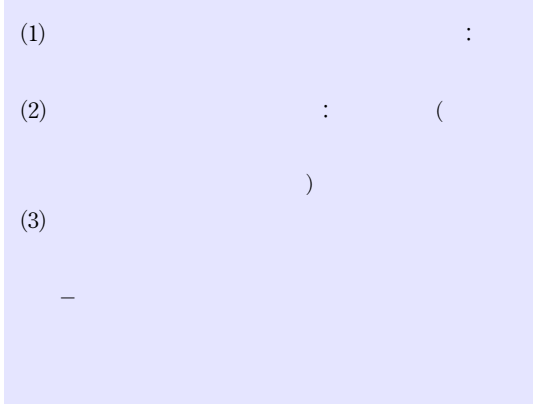
세부 다음의 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



3. 불복청구인

- (1) 불복당사자
-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 (3) 청구자 적격 승계
- (4) 대리인

판례



4.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5. 국선대리인 신청

①
 (ㄱ) 개인인 경우 :

 (ㄴ) 법인인 경우 :

 ㉠
 ㉡
 ②
 ③

*

①

 ②

 ③

6. 불복청구기간

- ①
- ②

㉠

 ㉡

7. 결정 (88년 기출)

(1)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 :

② 심사·심판청구 :

(2) 결정의 종류

①

 ②
 ③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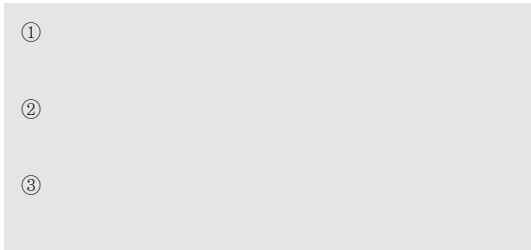
 (ㄷ)



판례 재조사결정의 경우 조세불복 기산일



(3) 결정의 효력



세부 형성력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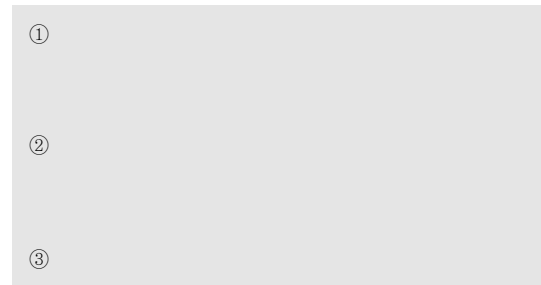


8. 심판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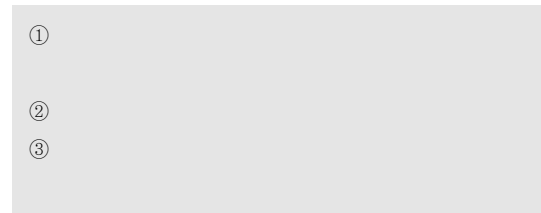
(1) 결정기관

1) 조세심판관 회의

2) 주심조세심판관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2) 제척과 회피 및 기피

① 제척 :

② 회피 :

③ 기피 :

(3) 내용심리상의 원칙

1)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2) 불고불리의 원칙

핵심

3) 자유심증주의

판례



SECTION 02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 권리현장의 교부

① 납세자 권리현장의 교부 :

② 요지 낭독 및 설명 :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13년 기출)

①

②

③

④

⑤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1) 세무조사 남용금지

(2) 중복조사의 금지 (17.21년 기출)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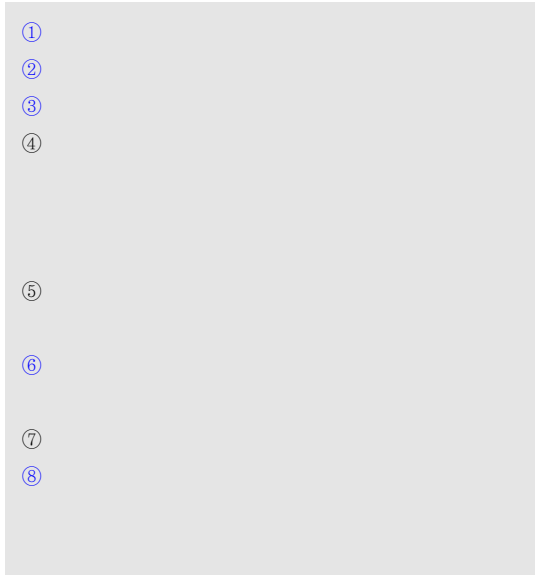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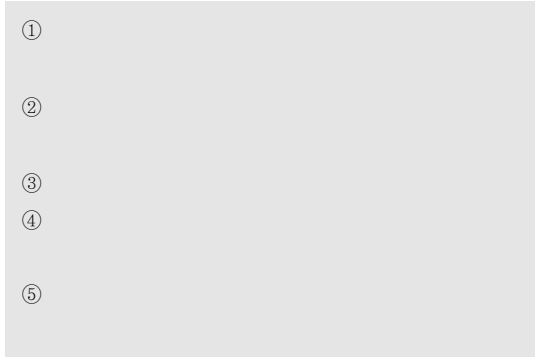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세부

(1)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취지 :

(2)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

(3) 장부 등 제출 요구

판례

(1)

(2)

(3)

(4)

(5)

(6)

(7)

(8)

(4)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 금지

4.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①

②

5. 세무조사 관할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 세무조사 관할

(2) 정기선정 (14년 기출)

①

②

③

(3) 수시선정

①

②

③

④

⑤

(4) 부과세세목의 조사

(5)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

판례

6.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 연기신청 (14년 기출)

①

㉠

㉡

㉢

②

㉠

㉡

③

(3)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7. 세무조사 기간

(1) 세무조사 기간

①
②
③
④
⑤
⑥

(2)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3)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4) 세무조사 중지(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①
②
③
④

(5) 세무조사 재개

(6) 중지기간 중 질문 및 장부 등의 제출 요구 금지

(7) 세무조사기간 단축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21년 기출)

①

②

9. 장부·서류 보관금지

- ①
- ②
- ③

10. 통합조사의 원칙

- ①
- ②
- ③

㉠

㉡

㉢

㉣

㉤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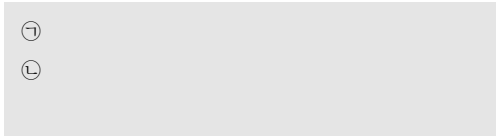
- 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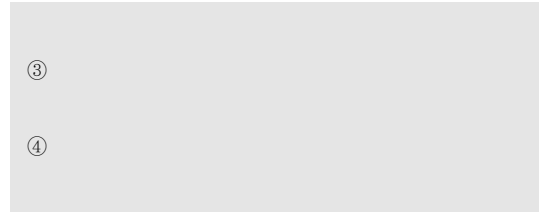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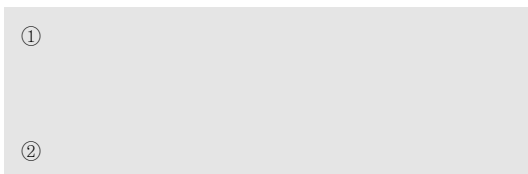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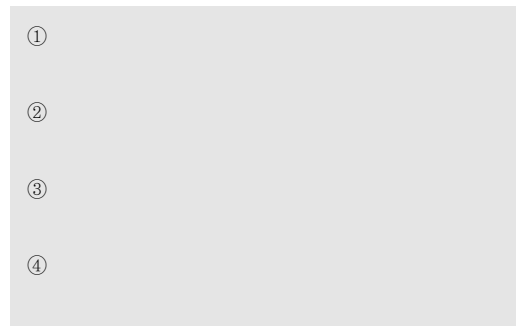
12. 비밀유지



13.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1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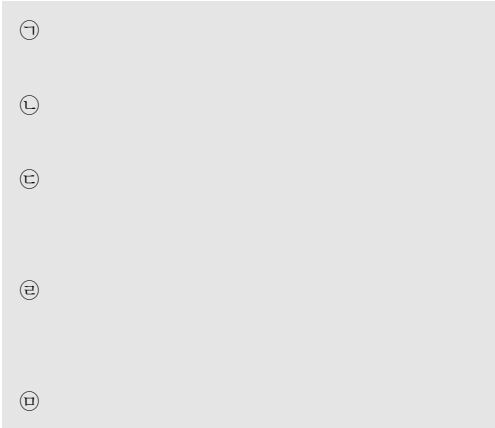


15. 납세자의 협력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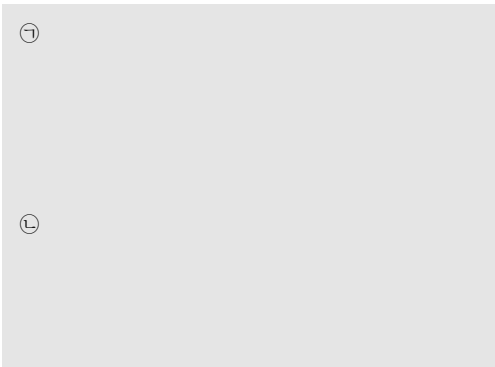
16. 납세자보호위원회 (14,21,22년 기출)

①

②



③



17.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②

③

④

⑤

판례

(1)

(2) ①

②



SECTION
03 과세전적부심사 (15년 기출)

1. 의의

2.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 ①
- ②
- ③
- ④
- ⑤

세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①
- ②
- ③
- ㉠
- ㉡

3. 청구대상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4. 결정의 유보

5. 심리절차와 결정기간

6. 결정의 유형

- ①
 - ㉠
 - ㉡
 - ㉢
- ②
- ③

7. 조기결정신청

8.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판례

- (1)

(15년 기출)

- (2)
- (3)
- (4)
- (5)

(6)

(7)

(8)

(9)

(10)

(11)

[정리]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 ...

() ...

() ...

Chapter 10

보칙

1. 납세관리인

2. 포상금의 지급

- ①
- ②
- ③

판례



3.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4.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1) 명단공개대상

- ①
- ②
- ③
- ④

(2) 명단공개제외자

5. 이행강제금

①

②

③

④

PART II

법인세법

- Chapter 01 법인세 총설
-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Chapter 03 익금
- Chapter 04 손금의 범위
- Chapter 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 Chapter 0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 Chapter 07 감가상각비
- Chapter 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 Chapter 11 총당금
- Chapter 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 Chapter 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
- Chapter 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 Chapter 16 합병·분할 등
- Chapter 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Chapter 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 Chapter 19 외국법인
- Chapter 20 연결납세제도
- Chapter 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SECTION

01

납세의무자 (04년 기출)

1. 납세의무자 =

2. 법인의 분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1) 내국법인

2) 외국법인

- ①
- ②
- ③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비과세법인

SECTION

02

과세소득의 범위 (04년 기출)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quad -$$

2. 청산소득

$$= \quad -$$

3. 토지 등 양도소득

$$= \quad -$$

4. 미환류소득

$$= \quad \times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내국 법인	영리 법인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 법인		과세	과세	과세
외국 법인	영리 법인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 법인		과세	과세	과세
국가·지방 자치단체			과세	과세	과세

*

법인

SECTION 03 사업연도

1. 본래의 사업연도

- (1) 원칙 :
- (2) 법령·정관 규정 × :
- (3) 신고 × : ~

2.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 (1) 원칙 :
- (2) 특례

판례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SECTION 01 세무조정 (79년 기출)

1. 개념

2. 결산조정사항

- (1) 개념
- (2) 대상
()
- (3) 손금산입여부
()
- (4) 손금공제방법
- (5) 손금귀속시기
- (6)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

3. 신고조정사항

(1) 개념

(2) 대상

(3) 손금산입여부

(4) 손금공제방법

(5) 손금귀속시기

(6)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

SECTION

02

소득처분 (81,85,87,05,09,22년 기출)

1. 개념

2. 유형

(1)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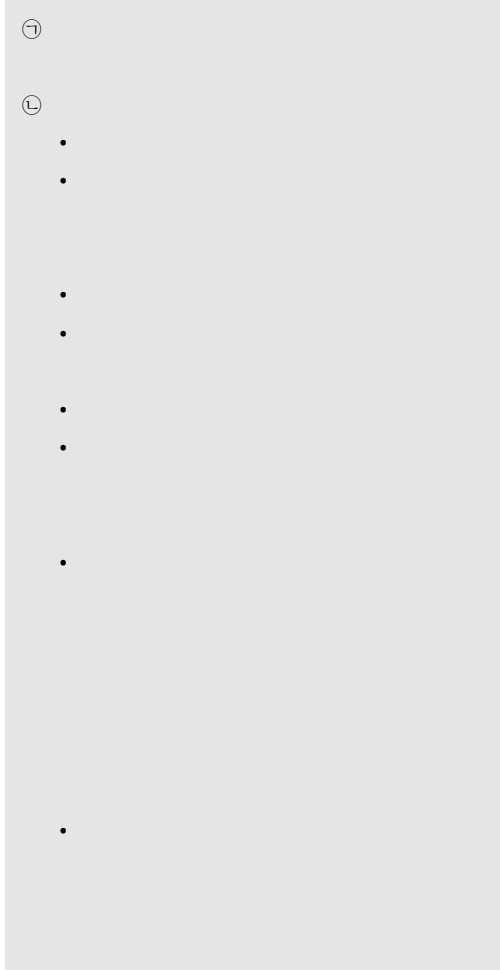
(2) 사외유출

1) 그 귀속자가 명백한 경우

① 배당 :

② 상여 :

③



④ 기타소득 :

2)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09년 기출)

세부 대표자 판정

- ①
- ②

판례

- (1)
- (2)
- (3)
- (4)

3)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한 경우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판례

- (1)
- (2)
- (3)

4) 추계의 경우

(3) 기타

3. 법인의 신고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 분된 경우

(1)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1) 수입시기

① 인정상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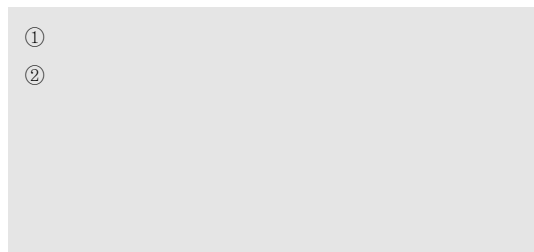
② 인정배당·기타소득 :

2) 귀속자의 처리

(2)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4. 현금매출누락

(1)



(2) 판례

5. 횡령에 대한 소득처분 (10,17년 기출)

(1) 대표이사 등의 경우

(2) 사용인 등의 경우



6.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관련 사항

(1) 지급법인

(2) 귀속자

()

(3)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

② :

② 무 :

(4) 기산일

1)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③

2) 제척기간 기산일

3) 경정청구 기산일

①

:

④

②

:

(5) 조세불복

①

출) :

(09년 기

[정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인	조세불복 가능여부
①		:

②		:
③		:
④		:

⑤

⑥

⑦

Chapter 03 익금

법인

SECTION 01 익금의 범위

1. 익금의 개념

$$= \quad - \quad -$$

판례

(1)

(2) :

(3) ...

2.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14,15년 기출)

- ①
- ②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

(1) 익금산입

- ①
- ②

(2) 정당한 사유

- ①
- ②
- ③
- ④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① 가지급금 등의 미회수액

< > ×××()

- < > ×××()
- ② < > ×××()
- < > ×××()
- ③ < > ×××()

판례

4. 이미 과세된 소득 등

- ①
- ② :
-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5.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14년 기출)

2) 과세이연 내용

3) 사후관리

6. 채무의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 (12,15년 기출)

7. 자기주식

(1)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성

(1)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1) 학설

1)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손익거래설(손익거래로 봄)

- ①
- ②

② 자본거래설(자본거래로 봄)

2)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 ()

2) 판례의 태도

(2) 특정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2) 포함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의 익금성

1) 요건

1) 학설

다음의 이 이어야 함

- ①
- ②
- ③
- ④

2) 판례의 태도

3) 결어

(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의 익금성

1) 학설

2) 판례의 태도

3)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4) 결어

(4)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매입

SECTION 02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

1.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① 취지 :

② 적용대상 :

$$+ \quad (\quad)$$

$$+$$

③ 적용배제 :

④ 간주임대료

$$= (\quad \quad \quad *1 - \quad \quad \quad *2) \times$$

$$\times / (\quad) - \quad \quad \quad *3 (\quad)$$

*1 임대보증금 적수의 계산 :

*2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① 건설비상당액 :

②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

*3 금융수익 : ①

, ②

, ③

④

$$[\quad \quad \quad]$$

2. 추계결정의 경우

① 취지 :

② 적용대상 : (\quad \quad \quad)

③ 간주임대료

$$= \quad \quad \quad \times \quad \quad \quad \times \frac{\quad \quad \quad}{(\quad)}$$

SECTION

03

의제배당 (83,89,05,11년 기출)

1. 의의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 의제배당

(1) 의제배당 판단

1) 원칙

2) 예외

①

(ㄱ)

㉠
㉡

(ㄴ)

②

(15년 기출)

자본에 전입되는 잉여금의 종류		익금 항목 여부	의제배당여부	
			1차 배정부	추가 배정부
자 본 잉 여 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주식발행 초과금			

	채무면제이익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익 • 내 자본전입분 • 후 자본전입분 : >			
	나머지			
합병차익·분할차익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재평가	% 재평가세율 적용분			
적립금	% 재평가세율 적용분			

(2) 의제배당액

$$\text{의제배당액} = \text{잉여금} \times \text{배당률} \times \text{주요지분율}$$

*

(3) 귀속시기

(4) 문제점

3. 감사·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1) 의제배당액

$$\text{의제 배당액} = \text{---}$$

1) 주주가 받는 대가의 평가

① 원칙 :

②

$$\text{Min}(\text{---})$$

2)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① 원칙 :

② 단기소각주식특례 :

(2) 귀속시기

- ① 감자·퇴사·탈퇴의 경우 :
- ② 해산 :
- ③ 합병·분할 :

핵심

판례

$$\text{---} (\text{---}) / \text{---}$$

보론 현물배당과 관련된 세무문제

<사례>

(1)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무문제

(2)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법인)의 세무문제

1) 현물배당시 처분손익의 인식 여부

①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

②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2) 결어

SECTION

0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02,25년 기출)

1)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취지 이중과세 방지

$$\text{익금불산입액} = \left[\text{---} \times \text{---} \right] \times \text{---} \quad *2$$

*1

*2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이상	%
% 이상 % 미만	%
% 미만	%

2) 적용배제

①

②

③

④

㉠

㉡

㉢

⑤

⑥

㉣

㉤

⑦

㉥

㉦

법인

판례

(1)

(2)



(25년 기출)

참조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 산입률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 이상	% 이상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① 지주회사 요건 :

② 자회사 요건 :

㉠ 지분율 요건 :

㉡ 업종 요건 :

-
-

(2)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25년 기출)



2.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액 및 외국자회사의 범위

① 익금불산입액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액} \times \text{적용배제율}$$

② 외국자회사의 범위

2)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Chapter 04

손금의 범위

법인

3) 익금에 해당하는 배당

①

②

③

4) 추계시 적용배제

(2) 외국법인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1. 손금의 개념

$$\text{손금} = (\text{---} - \text{---}) \text{ and } (\text{①} \text{ or } \text{②})$$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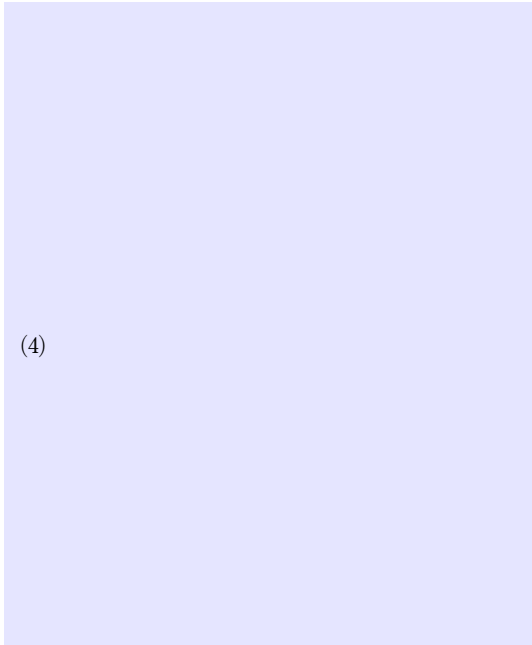
(1)

(∵ ---)

cf.

(2)

(3)



(4)

2) 2017년 판례(담합사례금)

2. 위법지출에 대한 손금성

(1) 학설의 태도

① 긍정설 :

② 부정설 :

(2) 판례의 태도

통상성 :

1) 2015년 판례(제약회사 리베이트 비용)

Chapter 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SECTION

0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 인건비

취지

(1) 급여

1) 원칙 :

2) 예외 :

- ①
- ②
- ③

(2) 상여금

①

구 분	임원	직원
기준 범위 내 금액		
기준 범위 초과 금액		

②

판례



법인

(3) 퇴직급여

1) 현실적 퇴직급여

구 분	임원	직원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 금액		

* 임원퇴직금 한도액

- ①
- ② 그 외의 경우 :

* 여기서

- ㉠
- ㉡
- ㉢
- ㉣
- ㉤

㉞

2) 비현실적인 퇴직급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①
②	②
③	
④	③
	④
⑤	⑤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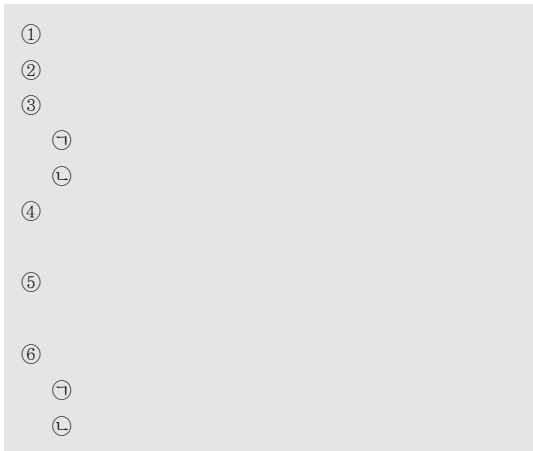
2. 공동경비

(1) 출자공동사업 :

(2) 비출자공동사업

1) 특수관계인간 공동사업

*1*2



*1

*2

2) 비특수관계인간 공동사업



SECTION 02 세금과 공과금

1. 조세

(1) 원칙 :

(2) 예외 :

- ①
- ②
- ③
- ④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①
- ②
- ㉠
- ㉡

2.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취지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손금불산입항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법인

3. 공과금

구 분	공과금의 처리
(예) :)	또는
(, 예) : 등)	
(예) : 등)	

4. 조합비·협회비

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quad \times \frac{\quad - \quad}{\quad}$$

SECTION 03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손금불산입

(1) 업무무관 부동산 (21년 기출)

1)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 ①
- ②

* 업무의 범위 :

- ㉠
- ㉡

2) 부동산 유예기간

- ①
- ②

- ③

3)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2) 업무무관동산

①

②

세부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

- ㉡

(3) 업무무관자산 과세문제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세법상 제재)

① 업무무관비용[() ()], () :

②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

3) 처분단계

(4) 손금불산입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① () 계산방법
- ② () 계산방법

판례

()

=)

2.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손금불산입

- ①
- ②
- ③
- ④
- ⑤

판례

(1)

(쟁점 : vs /
:)

(2)

법인

3.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취지 :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 ①
- ②
- ③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시부인

- ①
- ②
- ③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업무미사용금액 손금 불산입

1) 업무사용금액

구분	내용
①	= ×
②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

= _____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업무사용비율 = _____

2) 업무미사용금액 : (:)

(5)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①

 ②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1)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

2)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

(7)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①

 ②

 ③

2) 특정법인의 범위

- ①
- ②
- ③

세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②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 %

Chapter 0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인

SECTION

01 기업업무추진비 (90,06년 기출)

1. 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규제 이유

3. 다른 손금과의 구별

(1) 기부금과 구별

구 분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업무 관련성		
현물의 평가	Max ()	① 의 : ② 의 : Max(,)

이월공제		
귀속시기		

(2)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1) 상대방 및 지출목적의 차이

구분	상대방	지출목적
광고선전비		
기업업무추진비		

2) 구분실익

(3)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분

1) 판매부대비용의 개념

2) 구분실익

구분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
수익과 관련성		
지출 의무		

4.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1)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 ①
- ②
- ③
- ④

(2)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

5. 현물기업업무추진비 평가 : $\text{Max}(\quad, \quad)$

6. 기업업무추진비 손금귀속시기 :

7.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1) 직부인 조정

- ① 증명서류불비기업업무추진비 : ()
- ② 건당 만원() 초과분 중
: ()

(2) 한도초과액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① + ② + ③

① 한도액
= [법인 : +
법인 : (+) × %

㉠ 기본한도 :
() × _____

㉡ 수입금액한도 :

$$\left[\text{A} \times \text{B} \right] + \left[\text{C} \times \text{D} \times \% \right]$$

② 한도액 = Min(,)

㉠
㉡ × %

③ 한도액
= Min(, ㉡)

㉠
㉡ × %

(3)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 ①
- ②
- ③

판례

(1)

(2)

(∵

(3)

(1)

(2)

법인

SECTION 02 기부금 (94년 기출)

1. 기부금의 개념

(1) 본래의 기부금

(2) 의제기부금

정상가액 =

2. 취지

3.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시

vs

구 분	상대방	기 준
기부금		정상가액 (= % 또는 %)
부당행위계산 부인		

4. 기부금의 범위

구 분	손금산입액
①	
②	
③	
④	

1) 특례기부금

①
②
③
④
⑤
⑥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 일반기부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4) 비지정기부금

5. 현물기부금의 평가

(1) 특례기부금 :

(2) 일반기부금

-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 :
- 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 :

(3) 비지정기부금 :

6. 손금귀속시기

(1) 원칙 :

(2) 현금주의의 예외

7.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1) 특례기부금

1) 손금산입한도액

$$\begin{aligned} \text{①} & \quad \text{ } = \text{ } + \text{ } \\ \text{②} & \quad \text{ } = \left(\text{ } - \text{ } \right) \times \% \end{aligned}$$

2)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손금산입한도액

$$\begin{aligned} \text{우리사주} \\ \text{조합기부금} &= \left(\text{ } - \text{ } - \text{ } \right) \times \% \\ \text{한도액} & \end{aligned}$$

2)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3) 일반기부금

1) 일반기부금 한도액

$$\begin{aligned} \text{일반기부금한도액} \\ &= \left(\text{ } - \text{ } - \text{ } - \text{ } \right) \\ &\quad \times \% \left(\text{ } \% \right) \end{aligned}$$

2)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4) 비지정기부금

- ①
- ②
- ③
- ④

8. 기부금 vs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구분	개념의 차이	손금
기부금		
사용수익 기부 자산가액		

핵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비용(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

판례

(1)

(2)

(3)

()

().



Chapter 07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감가상각대상자산

①

②

* ㉠ 개발비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세부】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① 임의상각제도 :

② 결산조정사항 :

(2) 감가상각제외 자산

①

②

③

(3) 리스자산

①

②

2. 즉시상각의제

(1) 원칙

(2) 특례

①

②

③

④

⑤

㉠

㉡

법인

3.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계산

(1) 상각범위액 계산

① 정액법

$$= \left(\frac{\text{원가}}{\text{수명}} \times \text{연월수} + \text{잔존가액} \right) \times \text{세율}$$

② 정률법

$$= \left(\text{원가} \times \text{정률} \right) \times \text{세율}$$

$$= \left[\begin{array}{l} \text{원가} \times \text{정률} \\ \times \end{array} \right] \times \text{세율}$$

$$= \left[\begin{array}{l} \text{원가} \times \text{정률} \\ \times \end{array} \right] \times \text{세율}$$

5. 감가상각방법

(1) 유형자산

- ①
- ②
- ③
- ④

(2) 무형자산

- ①
- ②

6. 감가상각의제

(1)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1) 감가상각의제의 내용

2) 감가상각의제액의 효과

① 감가상각의제액 발생 사업연도

$$\text{감가상각의제액} = \left[\quad + \quad \right]$$

② 그 이후 사업연도

$$\begin{aligned} & \text{(ㄱ) 정률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 & = (\quad - \quad) \times \\ & \text{ㄷ} \quad \times \\ & \text{ㄴ} \quad - \end{aligned}$$

(2)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의 감가상각의제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임의조정사항) (21년 기출)

구 분	신고조정할 감가상각비
이전 취득분	
이후 취득분	

8. 손상차손

Chapter 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

(1)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

Min(상각부인액, 평가이익) 익주(△유보)

(2) 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의 순서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취지

(2) 세무조정

2.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1) 취지

(2) 세무조정

3. 건설자금이자

(1) 자본화방법

① 특정차입금 이자 :

특정차입금의 이자 = - -

①

②

③

② 일반차입금 이자 :

(2) 자본화대상자산(21년 기출)

()

(3)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건설자금이자 과소 계상한 경우

① 비상각자산(토지): ()

② 감가상각자산

㉠
·
㉡

2) 건설자금이자를 과대 계상한 경우

()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취지

(2) 손금불산입액(기타사외유출)

× _____ + _____

1) 업무무관 자산의 가액

2) 업무무관 가지급금

① 개념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 처리

㉠ 원칙:

㉡ 예외:

③ 가지급금에서 제외

㉠
㉡
㉢

세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①
②	
③	
④	②
	③
	④
	⑤
	⑥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95, 10, 19년 기출)

1.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본원칙

(1) 권리·의무 확정주의

1) 권리(익금)·의무(손금)확정주의 채택

판례

(1)

(2)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한계

①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소득 :

② 감가상각비 등의 배분 :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3) 귀속시기의 중요성

①

②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

1) 자산의 양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할부판매

①

②

㉠ 원칙 :

㉡ 예외 :

(2) 용역제공 등

1) 손익귀속시기

① 원칙 :

② 특례 :

2) 진행기준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산

구분	내용
①	
②	(×) -

*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

(3) 이자소득 등

1) 이자수익

① 원칙 :

② 예외 :

2) 이자비용

3) 배당금 수익

(4) 임대료 등

1) 임대료

①

㉠ 원칙 :

㉡ 특례 :

②

2) 금전등록기 설치법인

3) 사채할인발행차금

판례

(1)

(10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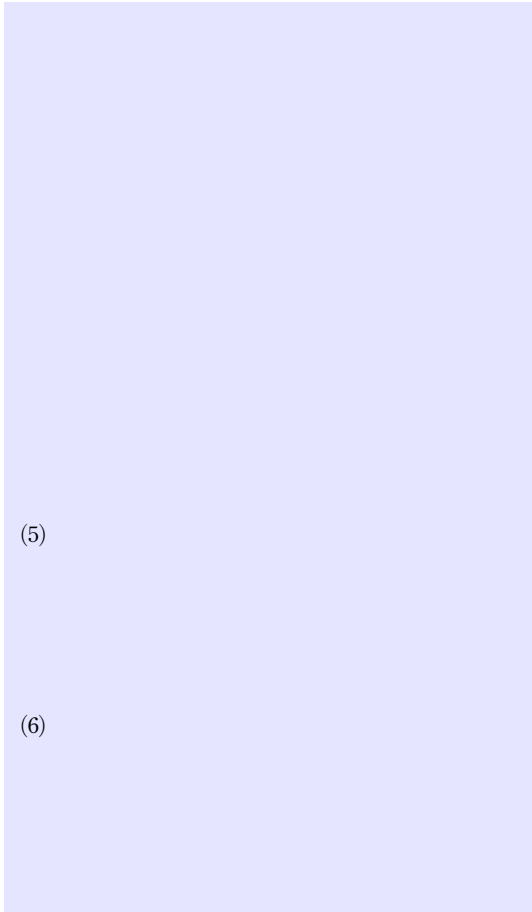
(2)

①

②

(3)

(4)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SECTION

01 자산의 취득가액

1. 형태별 취득가액

(1) 일반적인 경우

①

②

㉠

㉡

③ :

 +

④

⑤ :

⑥ :

⑦

(2) 현물출자·물적분할

1) 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①

②
①
③

2)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 포함) :

(3) 합병·인적분할로 취득한 자산

1) 합병·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quad + \quad +$$

$$-$$

2) 법인이 취득한 자산

- ①
- ②

(4)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12년 기출)

1) 일반법인의 출자전환 : 주식의 시가

2)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의 출자전환

①
②

2. 취득가액 계산특례

(1) 자산의 고가·저가매입

1) 저가매입

- ①
- 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

(14년 기출)

2) 고가매입

①
②
: (× %)

입(14년 기출) :

(2)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과 연지급수입의 경우

①
②
③
④

(3) 건설자금이자

(4)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 의제매입세액

SECTION 02 자산·부채의 평가 (80,88년 기출)

1. 자산의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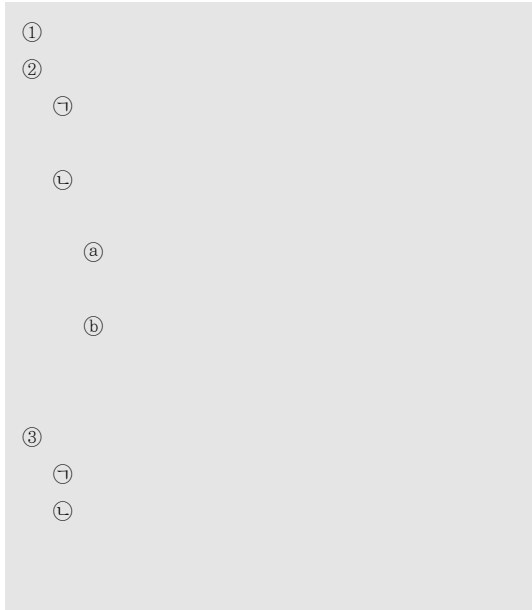
(1) 원칙

$$\times ()$$

(2) 예외

1) 평가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2)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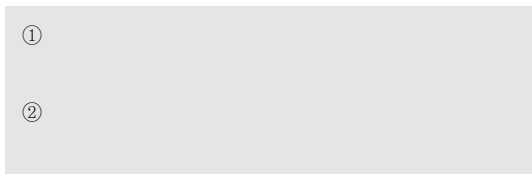
*

2.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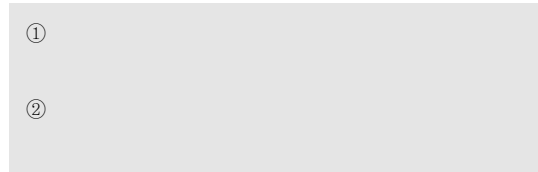
(2)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1) 평가방법의 신고



*

2) 변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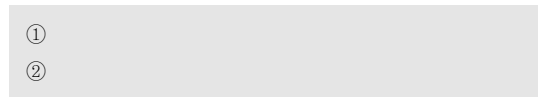


(3) 무신고 및 임의변경의 경우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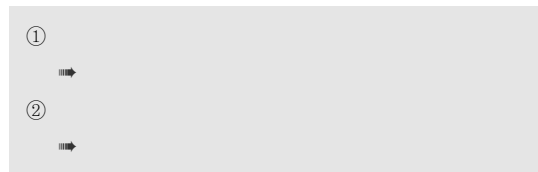
1) 무신고의 경우



2) 임의변경의 경우 : Max(,)



(4) 재고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세무조정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②

3. 유가증권 등의 평가

(1) 평가방법

(2) 신고와 변경신고

(3) 무신고 및 임의변경의 경우 평가방법

1) 무신고의 경우

2) 임의변경의 경우 : $\text{Max}(\quad , \quad)$

①

②

(4)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1) 외화·자산 부채 평가

① 특정금융회사

㉠

㉡

② 일반법인

㉠

㉡

2) 평가손익

외화평가손익 = $\quad - \quad$

세부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구분	화폐성 항목	비화폐성 항목
외화 평가		
성격		
사례		

(2) 상환차손익

5. 가상자산 평가

Chapter 11

총당금

SECTION

01 퇴직급여총당금

(1) 설정대상자

(2) 손금산입방법

(3) 손금산입한도액

Min(,)

① × %

② × % + -

(4) 퇴직급여 지급기준

① , ②

(5)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 ()

SECTION

02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총당금)

(-) _____

(+) ()

(-) (Δ):

1) 퇴직연금총당금 손금산입한도액

Min(,) -

① -

②

2) 연충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 ()

한도미달액 : ()

판례

①

②

(근거: ㉠)

㉡

㉢

)

SECTION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08,10,12,22년 기출)

(1) 대손금

()

(2) 대손금에서 제외하는 채권

- ①
- ②
- ③

* ②, ③의 채권은

세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대손불능채권에서 제외함

- ①
- ②
- ③
- ④

(3) 대손사유

1) 강제대손사유(신고조정사항)

- ①
- ②

-
-
-

법인

2) 임의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①

②

* 부도발생일 =

③

④

⑤

⑥

세부

(4) 채권·채무의 조정 (12년 기출)

1) 자산이전

- ① 채권자
- ② 채무자

2) 출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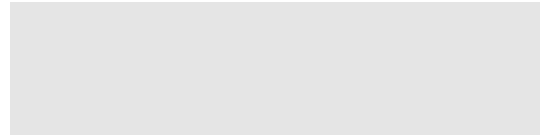
- ① 일반법인의 출자전환
 - ㉠ 채권자 :
 - ㉡ 채무자 :
- ② 특정법인의 출자전환
 - ㉠ 채권자 :
 - ㉡ 채무자
 -
 -

3) 원금감면

- ① 채권자
- ② 채무자

4) 기타 조건변경(이자율의 완화 등)

- ① 채권자
- ② 채무자



2. 대손충당금

(1) 손금산입한도액

Blank dashed blue rectangular area with a small 'x' symbol in the center.

(2) 설정제외 채권

- ①
- ②
- ③
- ④

(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 상계 여부

- ① 원칙 :
- ② 예외 :

(4)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사항

(5) 한도초과액 : 손불(유보)

판례

(1)

(2)

(3) (집행기준) .

(4)

(5) 일시상각·압축기장총당금의 환입

구 분		내 용
일반적인 경우	일시상각 총당금	① $= \times \frac{\text{---}}{\text{---}}$ ② :
	압축기장 총당금	• : :
의무사용기한 내 미사용한 경우		•
자산 취득·개량 전 폐업·해산하는 경우		•

3. 일시상각총당금·압축기장총당금

(1) 취지

(2) 손금산입방법

(22년 기준)

(3) 손금산입시기

(4) 의무사용기한

① 원칙 :

② 특례 :

()

*

Chapter 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구 분	대상법인	손금산입방법
법 인 세	①	
	②	
	③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Chapter 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81,93,08,11,14,16,18년 기출)

SECTION

01 취지, 요건 및 효과 (08,14,18년 기출)

(1) 취지

(2) 요건

- ① 당사자적 요건
- ② 객관적인 요건
- ③ 결과적인 요건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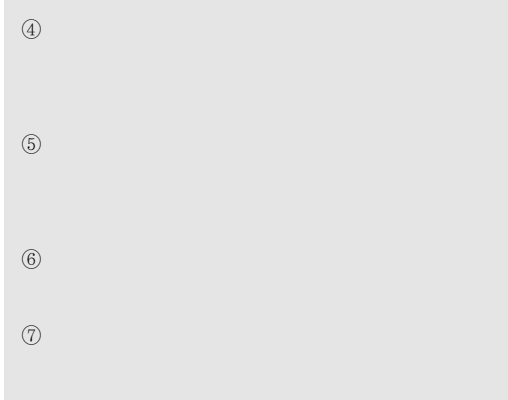
*3

세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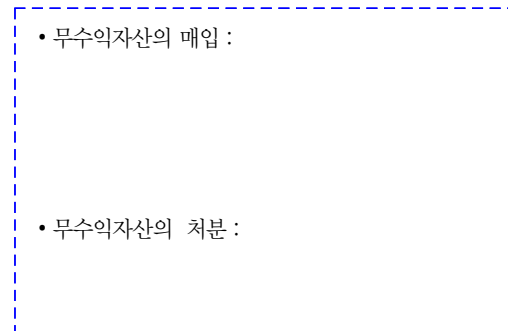
③



(3) 유형 등

1) 유형

- ①
- ②
- ③
- ④



⑤ 불량자산의 차환 :

⑥ 불량채권의 양수 :

⑦ 출연금 대신 부담 :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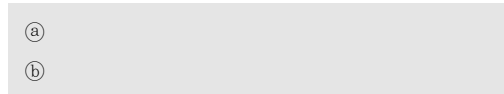
2) 현저한 이익 검토

(4) 시가의 산정기준

1) 시가의 개념

2) 시가의 산정방법

- ① 일반원칙
- ㉠ 본래의 시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

② 금전 대여·차용의 경우 (18년 기출)

㉠
㉡
㉢

③ 자산(금전 제외) 또는 용역의 제공

구 분	시가계산 방법
자산 임대료 시가	$\left[\begin{array}{c} \times \% - \\ \end{array} \right] \times \frac{\quad}{(\quad)}$
용역 매출액 시가	$(\quad) \times (\begin{array}{c} + \\ * \end{array} \quad)$

* 수익률 = $(\quad - \quad) /$

(5) 효과

- ① 소득금액 재계산 : (\quad)
)
 ②
 ③

판례

(1) ①

②

[근거 : ㉠
 ×(호텔 : , 아파트 : &
) ∴
 ㉡
 ×()
 (2)]

(3)



SECTION 02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1. 자산의 고가매입

구 분		특수관계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			
세 무 조 정	시가 (정상 가액) 초과액	< >	< >
	자산 감액	< >	< >

2. 저가양도

구 분		특수관계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
		< >	< >

판례

(1)

(결론 : ①

:

, ②

:

)

(2)

법인

3. 저가매입

① 원칙 : =

② 특례() : =

4. 고가양도

①

②

SECTION
03 가지급금 인정이자 (16년 기출)

1. 가지급금의 개념

2. 인정이자 계산

- ① 인정이자
= () × () × / ()
- ② 익금산입액
= () -

3. 인정이자율

- ① 원칙 :
- ② 예외 :

- ㉠
- ㉡
- ㉢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처리

[현저한 이익 검토 :]

5.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 ①
- ②
- ③
- ④
- 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이]

구 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근거		
적정이자 수령 고려여부		
이자비용 존재여부		
소득처분		

판례

(1)

(08년 기출)

(2)

(3)

(근거 : ① ②)

(4)) :

(5) 1)

(18년 기출)

(6)

(근거 : ① ②)

(7))

1)

6. 이중과세문제

SECTION
04

불공정합병 (07,23년 기출), 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 (11년 기출)

1. 과세문제

(1) 이익을 부여하는 주주

① 법인주주 :

 ⇒ ()

② 개인주주 :

 ()

(2) 이익을 부여받은 주주

① 법인주주 :

 ⇒ ())

② 개인주주 :

2. 적용요건

구 분		현재한 이익 요건	주주 간 특수관계 요건	
			법인주주	개인주주
불공정합병 ()				
불 균 등 증 자	저가 발행			
	고가 발행			

불균등감자			
-------	--	--	--

판례

(1)

(2)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

SECTION
01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01년 기출)

(1) 취지

(2) 결손금의 이월공제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 공제한도

①

②

3)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4)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14년 기출)

5) 채무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6) 이월결손금 공제의 배제

7)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

①

②

③

(3) 결손금 소급공제

1) 요건

①

②

③

④

2) 환급세액의 계산

$$\text{Min}(\text{①}, \text{②})$$

① 산출세액의 차이

$$= \quad - \left(\quad - \quad \right) \times$$

② 한도액 = $\quad - \quad \cdot$

3) 사후관리(환급세액의 추정)

①

+

②

+

③

+

판례

법인

[:
]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①

②

③

④

㉠
㉡

SECTION 02 세율

(1) 내국법인의 경우(아래 (2)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구 분	세 율
이하	× %
초과 이하	+ (-)× %
초과 이하	+ (-)× %
초과	+ (-)× %

(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구 분	세 율
이하	× %
초과 이하	+ (-)× %
초과	+ (-)× %

SECTION 0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취지 :

2. 납세의무자 :

3. 과세대상

- ①
- ②
- ③

세부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

- ①
- ②

4. 귀속시기

5. 양도소득계산

-

6. 세율

구 분	세 율
①	%(%)
②	%(%)
③	%

판례



법인

SECTION

04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02년 기준)

(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quad + \quad +$$

①

㉠

㉡

㉢

②

Blank area for foreign tax credit calculation details.

③

* 외국자회사의 범위 :

(2)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이중과세조정방법)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

$$\text{Min}(\quad , \quad)$$

① 외국납부세액 : + +

② × _____

2) 국외사업장이 :

3)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3) 공제의 배제

판례 의제외국납부세액

(1)

(2)

2. 재해손실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세액

$$\text{Min}(\quad , \quad)$$

① * ×

② 한도 :

* 공제대상세액의 범위

①

②

$$(\quad - \quad + \quad)$$

*

(3) 세액공제의 신청

- ①
- ②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17,24년 기출)

(1) 취지

(2) 세액공제

- ①
- ②

(3)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①

②

세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①

②

③

④

(3)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Chapter 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SECTION

01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무

세부 중간예납의무자

-
-
-
-
-

2. 중간예납세액

선택 = ①, ②

①

②

SECTION

02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①

②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SECTION

03

수시부과

1. 개념

2. 수시부과사유

①

②

③

SECTION
04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

* 제출서류 : ① (②), ③ ④

2. 납부

3. 분납

①
②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②
③

법인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1) 신고기한 연장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 $\text{Min}(\quad , \quad)$
 ① $\times \%$
 ② 한도 :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text{Max}(\quad , \quad)$
 ① $\times \%$
 ② $\times \%$

2) 세무조사사유(수시선정사유)에 추가

[정리] 특정법인에 대한 세법상 제재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의 축소

- ①
- ②
- ③

(2)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축소

한도액 = + +

- ① 일반한도액 = (+) × %
- ② 문화한도액 = Min(, × %)
- ③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 = Min(, × %)

(3) 법인세를 인상 :

과세표준	세율
이하	%
초과 이하	%
초과	%

(4)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

(5)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에 포함

(6)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조특령)

SECTION 05 결정과 경정 (20년 기출)

1. 원칙

2. 예외

(1) 추계결정·경정사유

- ①
- ②

(2) 추계결정·경정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원칙)

과세표준 = - * - ×

* 주요경비의 범위 :

2)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예외)

3)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 Min(, ,)

- ① ×(-)
- ② ×
- ③

SECTION 06 가산세

(1)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text{Max}(\quad , \quad)$$

- ① $\quad \times \quad \%$
- ② $\quad \times \quad \%$

(2)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quad \times \quad \%$$

*

Chapter 16

합병·분할 등

법인

SECTION 01 합병 (87,89,96,98,07,23년 기출)

1.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비적격합병의 경우

$$\text{양도손익} = \quad - \quad$$

① 양도가액 = $\quad * + \quad + \quad$

*

② 순자산장부가액

$$= (\quad - \quad \text{부} \quad)$$

+

(2) 적격합병의 경우

1)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의제

2) 적격합병요건

① 사업목적성

② 지분의 연속성

③ 사업의 계속성

④ 고용 승계

* 내국인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① , ②
③ ④

핵심 합병신주교부비율 요건 판정특례

구 분	금전교부액으로 간주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세부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세부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세부 고용 승계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세부

①

②

2.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비적격합병의 경우

① ():

②

③

㉠

㉡

*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

(2) 적격합병의 경우

①

②

③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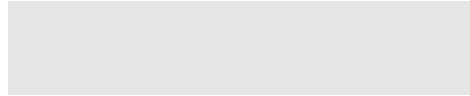
④

㉢

㉣

㉤

㉥



법인

(㉦)

:

3.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07년 기출)

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②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③ 합병 전 보유자산에서 발생한 처분손실 공제 제한

④ 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

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

4.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피합병법인의 주주)

$$\text{의제 배당액} = (\quad + \quad) -$$

핵심 합병신주의 가액

① 적격합병 :

② 비적격합병 :

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구 분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자본전입 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합병차익	① ②	순위

	③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차익		순위

구 분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 -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		
결손금승계		
세무조정 사항승계		
합병 매수손익 또는 자산 조정계정	= • 상각자산에 대한 자산 조정계정 : • 비상각자산에 대한 자 산조정계정 :	• 합병매수차익 : • 합병매수차손 :
합 병 법 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 •	

적격합병 요건 이탈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합병교부주식가액 • 주식만 받은 경우 : • 금전을 받은 경우 : Min(,)	합병교부주식 가액 :

SECTION 02

인적분할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경우)

1.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1) 비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손익 = -

① 양도가액

= + +

② 순자산장부가액

= (-)
+

(2) 적격분할의 경우

1)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의제

2) 적격분할요건

① 사업목적성

- ㉠
- ㉡
- ㉢

*

② 지분의 연속성

㉠ 분할신주교부비율요건 :

㉡ 분할신주배정요건 :

×
*

* 지분비율 :

㉢ 주식계속보유요건 :

③ 사업의 계속성

④ 고용승계

2.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1) 비적격분할의 경우

- ①
- ②
- ③

㉠

㉡

(2) 적격분할의 경우

- ①
- ②
- ③
- ④
- (㉠)

㉠

㉡

㉢

(㉣) 분할매수손익의 익금(손금)산입 :

3.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①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이월결손금
- ②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결손금
- ③ 5년 이내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한 처분손실

④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

⑤ 분할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

4. 분할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1) 비적격분할의 경우

$$\text{양도손익} = \quad -$$

(2) 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의제 :

(3) 준용규정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분할법인의 주주)

$$\text{의제배당액} = \quad -$$

핵심 분할신주의 가액

① 적격분할 :

[단,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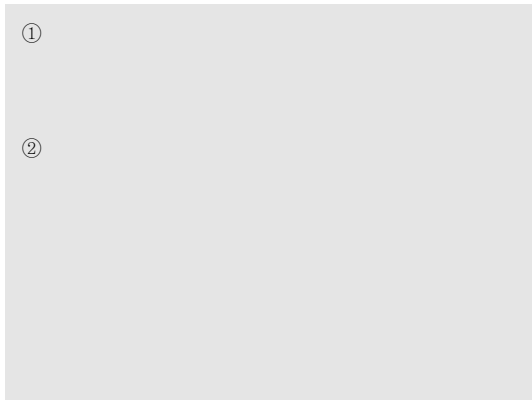
경우 :

]

법인

② 비적격분할 :

6.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SECTION

03

물적분할(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이 받는 경우)

1.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요건

2)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익금산입(압축기장총당금의 환입)

$$\times [\quad (\quad)^+ \quad (\quad)^- \times]$$

(2) 적격분할요건 이탈시 사후관리

- ①
- ②
- ③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문제

(1) 자산의 취득가액

(2)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세액감면·공제 승계

SECTION 04

현물출자

1.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 요건

- ①
- ②
- ③
- ④

(2)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익금산입

$$\times [\quad (\quad)^+ \quad (\quad)^- \times]$$

2. 적격현물출자요건 이탈시 사후관리

①

②

①

②

SECTION 0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요건

①

②

2. 특례내용

손금산입금액 = Min(, ②)

① 양도차익

= () - (+)

② 한도

= -

SECTION 06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Chapter 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text{청산소득} = \quad -$$

(1) 잔여재산가액

$$= \quad -$$

(2) 자기자본총액

$$= \quad +$$

$$+ \quad - \quad (\quad)$$

3. 세율

4. 신고·납부

1) 신고납부

②

2) 중간신고납부

①

Chapter 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03,16년 기출)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취지

①

②

③

④

⑤

㉠

㉡

× _____

⑥

⑦

법인

판례

2. 구분경리

3.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상 특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취지

2) 손금산입한도액

손금산입한도액 = +

① (+ +) × %

②

= (*1 - - *2 -) × % *3

*1 수익사업소득금액 :

*2 이월결손금 :

*3

*

핵심

2) 손금산입방법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4) 준비금의 일시환입 및 미사용시 환입

①

②

③

④

⑤

5) 조기환입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배제

7)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2)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①

②

(3)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판례

(1)

(16년 기준)

(2)

[근거 : ①

②
]

(3)

(4)

법인



(
)

4. 그 밖의 특례

① 기장의무의 완화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배제 :

②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 :

③ 간주익금 적용 배제 :

Chapter 19

외국법인 (00년 기출)

1. 외국법인의 개념 (20년 기출)

- ①
- ②
- ③

2. 국내원천소득

열거주의(10가지)

3.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25년 기출)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 ㉠
 - ㉡

②

③

4. 국내사업장 (20년 기출)

(1) 본래의 국내사업장

세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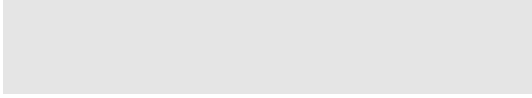
①

②

(2) 의제국내사업장

①

②



판례



5. 과세방법

(1) 종합과세

1) 대상

2) 과세표준

$$\text{과세표준} = \text{---} - \text{---} * \text{---} - \text{---}$$

*

3) 세율의 적용 및 신고납부 등

(2) 분리과세

1)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

① 지급자 :

- $\text{---} * \text{---} \times \%$
- $\text{---} : \text{---} \times \%$
- $\text{---} : \text{---} \times \%(\%)$
- $\text{---} : \text{Min} \left(\begin{matrix} \times \% \\ \times \% \end{matrix} \right)$

*

② 귀속자(외국법인) :

2) 신고납부에 의한 분리과세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text{과세표준} = \text{---} -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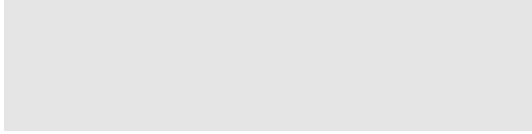
6.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vs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 개념

2) 과세대상

- ①
- ②
- ③
- ④



3) 과세방법

- ①
- ②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실질귀속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 :

(2)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 개념

2)

2) 과세방법

- ①
- ②

:

2)

핵심 유가증권양도소득과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구분

≥ ×

7.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1) 개념

①

②

③

(2) 과세방법

- ①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는 경우 :
- ②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지 않는 경우 :

8.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

① *

②

(2) 과세방법

- ①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는 경우 :
- ②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지 않는 경우 :

판례

(1)

(2)

(3)

(4)

법인

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지점세**(04.20년 기출)

(1) 의의

(2) 지점세액의 계산

1) 기본구조

$$\text{지점세} = \text{ } \times \text{ } \%$$

2) 과세대상 소득금액

① 지점세의 경우

$$\begin{array}{r} \text{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 \hline = \end{array} \text{)}$$

② 지점송금세의 경우

Chapter 20

연결납세제도 (13년 기출)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의의

(2) 도입이유(취지)

세부 용어의 정의

(1)

(2)

(3)

(4)

(5)

2. 통칙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 적용대상(25년 기출)

구 분	연결모법인 제외	연결자법인 제외
①		
②		
③		
④		
⑤ ()		
⑥		
⑦		

2) 연결지배의 의미 (13년 기출)

①

②

③

㉠
㉡
㉢

④

$$\text{간접보유비율} = \quad \times$$

3) 적용신청

4) 승인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승인 취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연결납세방식의 재적용 제한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① 포기 :
- ② 5년간은 포기제한 :

(4) 연결자법인의 추가

-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
- ②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 :

(5) 연결자법인의 배제

(6) 사업연도

3. 과세표준과 그 계산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조정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① 수입배당금액·기업업무추진비·대손충당금 상당액의
익금·손금불산입

제거대상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거래손익제거조정

②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차익의 이연

(ㄱ) :

ㄱ

 a

 b

 c

 d

 e

 L

(L)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25년 기준)

연결집단기준 계산	익금·손금 불산입액 배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계산		
기 부 금 손금불산입액 계산		

(2) 과세표준

과세표준
= - - -

(3) 결손금의 한도 및 처분손실

①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 :

② 연결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

③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연결법인의 결손금 :

④ 처분손실 특례

(ㄱ)

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L)

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

㉡

4. 세액의 계산

(1) 연결산출세액

$$\text{연결산출세액} = \quad \times$$

(2) 세액감면

(3) 최저한세

5. 신고 및 납부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2) 중간예납세액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1) 연결모법인의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2) 연결법인별 세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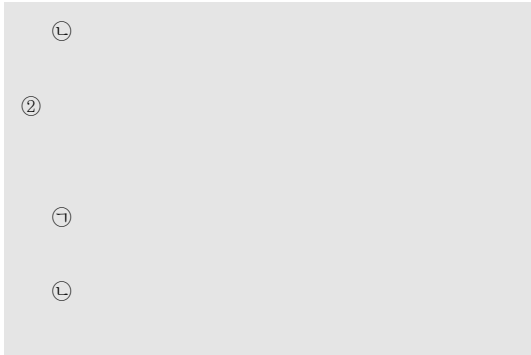
①

②

3)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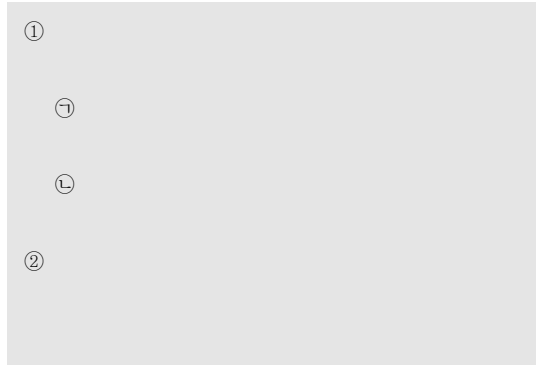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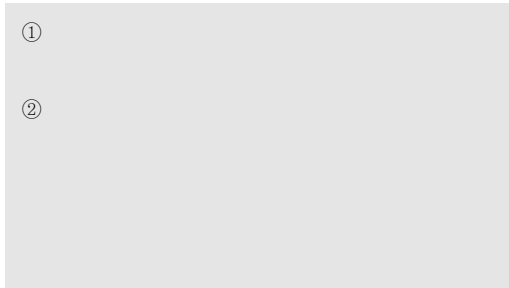
①

㉠



세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연결법인 연대납세의무

6. 가산세 등

(1) 가산세

(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1)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Chapter 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1) 수익자 과세신탁

(2) 수탁자 과세신탁(법인과세신탁재산)

- ①
- ②
- ③
- ④

(3) 위탁자 과세신탁

- ①
- ②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4년 기준)

법인

(1) 통칙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수탁자의 납세의무

②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③ 이익분배액을 배당으로 의제

④ 수탁자 과세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설립

② 해산

③ 사업연도

④ 납세지

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납세의무

② 연대납부

(2) 과세표준과 그 계산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

② 소득공제적용의 배제

③ 신청요건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합병

② 분할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3) 신고·납부 및 징수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②

(4) 그 밖의 특례

① 설립신고

② 사업자 등록

③ 구분경리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PART Ⅲ

소득세법

- Chapter 01 납세의무자
- Chapter 02 종합소득
-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Chapter 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Chapter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 Chapter 06 퇴직소득
- Chapter 07 양도소득
- Chapter 08 비거주자

TAXATION LAW



Chapter 01

납세의무자 (03년 기출)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납세의무 범위

1)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① 원칙 :
- ② 외국인 단기거주자(

) :

2)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

*1 주소 :

*2 거소 :

3) 판례

핵심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 ①
- ②

2)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세부

- ①
- ②

- ㉠
- ㉡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①
②	②
③	

판례



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취급

(1) 원칙

- ①
- ②

(2)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는 경우 등

- ① 확인되는 부분 :
- ②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

(3)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3. 공동사업의 경우 납세의무

- ① 원칙 :
- ② 예외(공동사업합산과세) :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5.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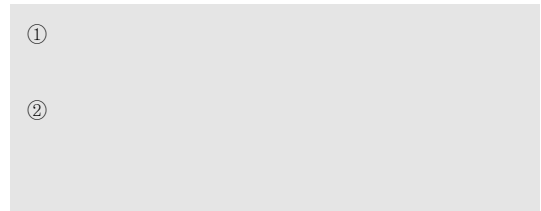
6.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7.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수익자

(2) 위탁자

- ①
- ②



8.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경우

Chapter 02

종합소득

SECTION

01 이자소득

소득

1. 개념 (20년 기출)

2. 범위

(1)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1)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2) 예금의 이자·할인액 및 상호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저축성보험

㉠

㉡

*

② 보장성보험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무조건 분리과세)

①

②

6) 비영업대금의 이익

① 개념

② 대금업과 구분

- 대금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충족
 - ㉠
 - ㉡
- 구분실익

구 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금업(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		
필요경비 인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대손금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수입시기	【원칙】 【예외】	
과세방법	→	

③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④ 수입시기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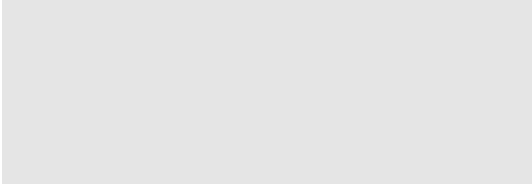
(Blank area for case law)

7) 유사이자소득

(사례)

① 채권대차거래보상액 :

②



☞ 판례



8)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

①

②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①

②

3. 비과세 이자소득

4. 계산구조

이자소득금액 =

→ × (,)

☞ 판례



5. 수입시기

(1) 원칙(약정주의)

①

②

③

④

⑤

소득

(2) 예외(현금주의)

- ①
- ②
- ③

(3) 기타

- ①
- ②

☞ 판례

- (1)
- (2)
- (3)
- (4)

(5)

SECTION 02 배당소득

1. 개념 (20년 기출)

2. 배당소득의 범위

1) 이익배당

:

세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
- ㉡
- ㉢

㉠
㉡

판례

(권리확정주의는)

②
③

2) 인정배당

3) 의제배당

- ①
- ②

의제배당액 = -

세부

- ①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11년 기출)

①
②
③
㉠
㉡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①
②
③

6)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범위

(ㄱ)

(ㄴ)

ㄱ

ㄴ

②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

7) 간주배당

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08.11.22년 기출)

*

①

②

9) 유사배당소득

(사례)

①

②

③

10) 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세부 신탁소득의 구분

구 분	소득구분
투자신탁의 이익,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공익신탁의 이익	
법인과세신탁재산	(법인단계) (수익자단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보험계 약의 보험차익과 신탁 계약의 이익·분배금	
그 밖의 신탁인 경우	

3. 배당소득의 비과세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text{배당소득금액} = \quad +$$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실질배당

- ①
- ②

2) 의제배당

- ①
- ②
- ③
- ④

3) 인정배당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
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5) 간주배당

6)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08,11,22년 기출)

7) 유사배당소득 및 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6.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2년 기출)

Gross-up

- ①
- ② ()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 ①
Gross-up 적용배제배당소득 :
- ②
Gross-up 적용배제배당소득 :
(-)
(L)
•
•
•
•

(ㄷ)

-
-

(ㄹ)

-
-
-
-

③

Gross-up 적용배제배당소득 :

③

④

3)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①

②

4) 조건부 과세대상(대부분 금융소득)

세부

7. 금융소득 과세방법

(1) 소득의 지급자

1) 국내금융소득

()

2) 해외금융소득

()

(2) 소득의 귀속자

1) 비과세 금융소득

2)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①

②

SECTION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 및 범위

(1) 사업소득 개념 (20,23년 기출)

①
 ② (⇔ :)
 ③ (⇔ :)
)

(2) 다른 소득과 구분

1) 부동산매매업 vs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

②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

③ 판례의 태도

④ 구분의 실익

2) 사업소득 vs 기타소득(일시적인 인적용역제공)

① 판례의 태도

② 구분의 실익

㉠
 ㉡

(3) 전속계약금

(4)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① 원칙 :
 ② 예외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 = Max(, × %)]

소득

(5) 부동산임대업

①
②
③

세부 지역권·지상권

내 용	소득의 구분
	()

2. 비과세 사업소득

① 소득 :

② 소득 :

(*)

* 고가주택 :

세부 주택 수 계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④
⑤
⑥
⑦

(23년 기출)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⑤

(

) (23년 기출)

⑥

(

)

⑦

(

).

(23년 기출)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총수입금액항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2) 필요경비

- ①
- ②
- ③
- ④

(3)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건설자금이자

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① 초과인출금

$$= \text{부채합계액} (\quad \cdot \quad) -$$

② 필불 = $\quad \times \quad /$

4)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 유형자산처분손익

- ①
- ②
- ③
- ④

(5) 기부금

1) 특례기부금

① 특례기부금의 범위

(ㄱ)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가액

$$\begin{aligned} \text{자원봉사용역가액} &= \text{㉠} + \text{㉡} \\ \text{㉠ 인건비} &: \quad \times \quad \quad \quad (\quad \quad) \\ \text{㉡} &: \quad \quad \quad \cdot \quad \quad \quad (\quad \quad) \end{aligned}$$

②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 (\quad - \quad) \times \quad \%$$

2) 일반기부금

① 일반기부금의 범위

- ㉠
- ㉡
- ㉢
- ㉣

②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left[\text{---} - \text{---} \right] \times \%$$

(㉒)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left[\text{---} - \text{---} \right] \times \% + \text{Min}[\ominus(\text{---} - \text{---}) \times \%, \ominus \text{---}]$$

3) 현물기부금 평가 = Max(,)

판례

(1)

(2)

(3)

(4)

(5)

세부 필요경비 입증책임

(7)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1) 임대료

① , ② 선세금 : ()

2) 간주임대료

① 주택임대

-
-

$$\text{㉠ 기장} : \quad = (\quad - \quad)$$

$$\times \% \times \quad \times / - \quad (\quad , \quad)$$

$$\text{㉡ 기장} \times : (\quad - \quad) \quad \times \% \times$$

$$\times /$$

② 주택 외의 부동산임대

$$\text{㉠ 기장} : (\quad - \quad) \times$$

$$\times / - \quad (\quad , \quad)$$

$$\text{㉡ 기장} : \quad \times \quad \times /$$

3) 관리비수입

①

② (원칙 : \times , :)

4)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1년 기출)

(1)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2) 주요 거래형태별 수입시기

1) 인적용역의 제공

2) 어음의 할인

3)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4) 자산임대, 지역권·지상권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① 약정이 있는 경우 :
- ② 약정이 없는 경우 :

판례

5.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소득의 지급자

1) 원천징수

- ① 원칙 :
- ② 예외 :

㉠

$$\text{㉡} = \quad \times \%$$

㉢

* 봉사료 :

2) 연말정산

(2) 소득의 귀속자

1) 원칙(종합과세)

2) 예외(선택적 분리과세)

판례

(1)

(2)

(18년 기출)

SECTION

04

근로소득 (10년 기출)

1.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의 개념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①

②

③

㉠

㉡

④

*

2) 직무발명보상금

()

①

②

3) 인정상여

4)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급여

5) 임직원 할인금액

세부 임직원 할인금액

(1)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①

②

③

④

(2) 시가의 산정

①

②

판례

(1)

(2)

(3)

(4)

(근거 :

)

소득

2. 비과세 근로소득

(1) 본인학자금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 ②
- ③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가운전보조금 :

㉠ 업 ㉡

(3) 국외근로대가

(4) 사용자부담 법정부담금

(5)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 +

월정액급여
 = - ()
 - -

(6)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①
- ②

(7) 출산지원금 및 자녀보육수당

1) 출산지원금

(*1)

*2

:

- *1
- ①
 - ②
- *2

2) 자녀보육수당

:

(8)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①

②

㉠
㉡

③

㉠
㉡

④

⑤

(9) 직무발명보상금

(10) 임직원 할인금액

$$\text{Max}(㉠) \times \% , ㉡)$$

비과세 금액 = $\text{Max}(\quad \times \% , \quad)$

①

㉠
㉡
㉢

②

3. 근로소득금액

$$= \quad - \quad (\quad)$$

4. 수입시기

①
②
③
④

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근로소득

1) 상용근로자

①
②

2) 일용근로자

① 소득의 지급자()
세액 = (-) × % × (- %)

②

* 일용근로자의 범위 (23년 기출) :

(2) 국외근로소득

- ① 소득의 지급자 :
- ② 소득의 귀속자 :

6.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원천징수

(2) 연말정산

SECTION

05

연금소득 (14년 기출)

1.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구 분	납입시	인출시
공적 연금		① 연금수령 : ② 연금외수령 : ()
사적 연금 (연금 계좌)	①	① 연금수령 : ② 연금외수령 ㉠ 퇴직금 : ()
	②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과 운용수익 : (무조건 분리과세 : %)

세부 연금수령 :

①

②

③

세부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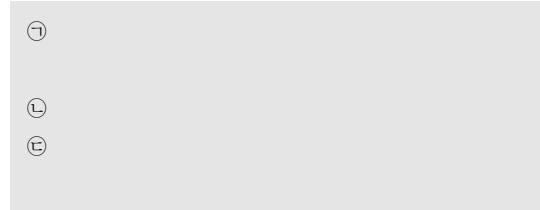
㉠

㉡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① 인출순서



소득

② 연금수령한도

(ㄱ)

$$\text{연금수령한도} = \frac{\quad}{\quad} \times \quad \%$$

(ㄴ)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text{연금소득금액} = \quad - \quad (\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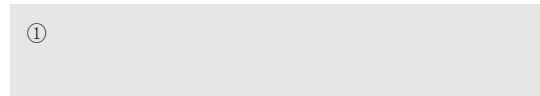
(1) 총연금액

1) 공적연금소득

구 분	총연금액
국민연금 소득 및 연계노령 연금	× _____ -
그 밖의 공적연금 소득(직역 연금 등)	× _____ -

(2) 연금소득공제

4. 수입시기



②

③

5. 과세방법

(1) 소득의 지급자

1) 공적연금 :

2) 사적연금

구 분		원천징수 세율	비 고
①	세 미만	%	① · ②
	세 이상 세 미만	%	
	세 이상	%	
②		%	
③	연금 실제 수령연차 가 년 이하인 경우		%
	연금 실제 수령연차 가 년을 초과하고 년 이하인 경우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년 초과하는 경우		%

(2) 소득의 귀속자

1) 종합과세

2) 무조건 분리과세

①

②

3) 선택적 분리과세

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begin{aligned} & \text{종합소득 결정세액} = \text{과 중 선택} \\ & \text{(1) 종합과세방식 :} \\ & \text{(2) 분리과세방식} = \quad + \\ & \quad \text{①} \quad \quad \quad \times \% \\ & \quad \text{②} \end{aligned}$$

SECTION 06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1) 개념

(2) 기타소득의 범위

①

②

세부

㉠



㉡

판례

(1)

(2)

③

④

핵심

(16년 기출)

㉠

㉡

㉢

판례

소득

⑤

⑥

⑦ 사례금 :

(19년 기출)

판례

(1)

(2)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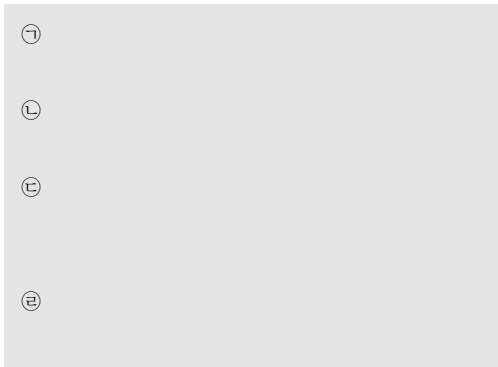
(4)



세부

⑧

⑨



인적용역제공		소득의 구분
종속성		
독립성		

⑩

⑪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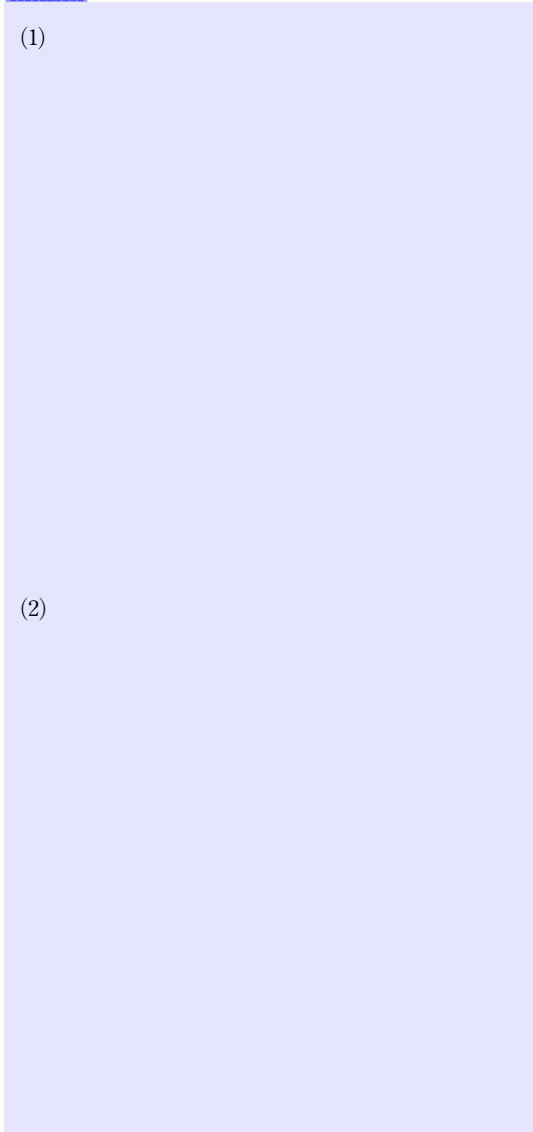
핀례

(1)

(2)

⑬

⑭



①

②

2. 비과세 기타소득

①

②

③

④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

(1) 최소한 80% 필요경비 인정

①

②

(2) 최소한 60% 필요경비 인정

①

②

③

④

⑤

(3) 최소한 80%(또는 90%) 필요경비 인정

①

②

4. 수입시기

(1) 원칙(현금주의)

(2) 예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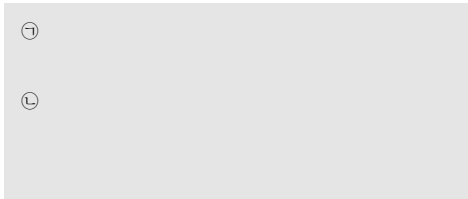
②

③

5. 과세방법

(1) 소득의 지급자

- ① 원칙 : *



- ② 예외 : × ()

(2) 소득의 귀속자

1) 무조건 분리과세

대 상 소 득	원천징수세율
•	%
•	%
•	%
•	(
•	%)

2) 무조건 종합과세

3) 선택적 분리과세

(3)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보론 종교 관련 종사자의 과세문제

1. 소득의 구분

(1) 기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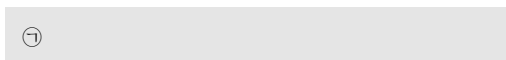
(2)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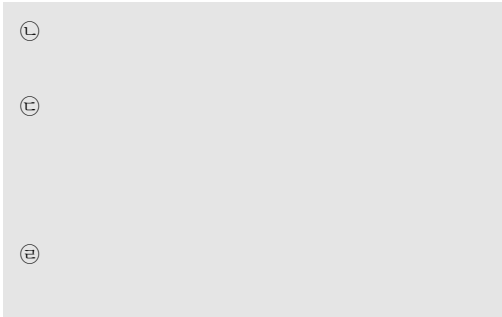
(3) 퇴직소득

2. 비과세 종교인소득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①
- ②
- ③





④ 보육수당 :

⑤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3. 소득금액의 계산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1) 기타소득금액 계산

$$\text{기타소득 금액} = \quad -$$

2) 필요경비

$$\text{필요경비} = \text{Max}[\quad, \quad]$$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text{근로소득금액} = \quad -$$

4. 수입시기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5.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3)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및 신고의무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6.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1) 연말정산 시기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2) 지급명세서 제출

1)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7. 소득의 귀속자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8.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9.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1) 종교단체에 대한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기준

(2)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 우선안내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SECTION

01 부당행위계산부인

1. 취지

2. 요건

(1) 특정소득요건

핵심

(2) 당사자 요건 :

(3) 객관적 요건 :

(4) 결과적 요건 :

3. 유형 등

(1) 유형

①

②

③

④

핵심

(2) 중요성 기준

*

4. 효과

- (1)
- (2)
- (3)

5. 부동산무상사용

구 분	증여자	수증자
()	()	()

6. 금전무상대출

구 분	증여자	수증자
()	: :	

판례



소득

SECTION 0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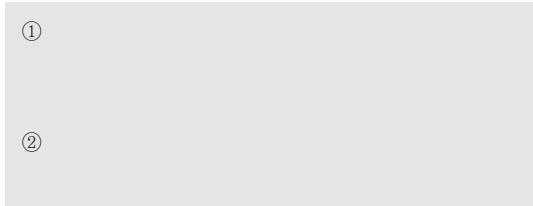
(82,08,11,17년 기출)

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2) 소득의 분배

(3) 소득의 구분



(4) 결손금 통산

(5)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6) 가산세

(7)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2.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8,11,22년 기출)

(1)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 ①
- ②

(2) 소득의 구분

- ①
- ②

(3) 소득의 귀속시기

(4) 원천징수

(5) 과세방법

(6) 산출세액계산

(7)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8) Gross-up 대상이 아님

3. 공동사업합산과세 (08,11,17년 기출)

(1) 취지

(2) 요건

1) 일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

2) 합산과세사유

- ①
- ②

(3)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 ①
- ②
- ③

(4) 연대납세의무

판례



(20년 기출)

SECTION

0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취급 (83,07년 기출)

1. 결손금 통산(사업소득)

(1) 개념

(2)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3)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2. 이월결손금 공제

(1) 개념

(2)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3)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 순서

①

②

③

(5) 그 밖의 규정

1) 이월결손금공제배제

①

②

2)

3.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등의 공제

①

②

소득

4. 결손금소급공제제도(중소기업의 사업소득)

(1) 요건

- ①
- ②
- ③

(2) 소급공제한 결손금 취급

(3) 환급취소세액 등의 징수

- ①
- ②
- ③

SECTION 04 그 밖의 특례 규정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1) 채권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이자소득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특례

매도자	매수자	원천징수내용

2.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 구분계산

(1) 원칙

(2)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Chapter 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SECTION

01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text{인적공제} = \quad +$$

(1) 기본공제

$$\text{기본공제} = \quad \times$$

공제대상	나이요건	연간소득금액요건
거주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세 이상	연 만원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또는 세 이상	
	해당 없음	
	세 미만 ()	

(2) 추가공제

구 분	추가공제사유	1명당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연 만원
장애인공제		연 만원
부녀자공제	① ②	연 만원
한부모공제		연 만원

소득

2. 연금보험료공제

$$\text{연금보험료공제액} = \quad (\quad)$$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text{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액} = \text{Min}(\quad , \quad , \quad)$$

①
②
③

4. 특별소득공제

$$\text{특별소득공제} = \quad +$$

(1) 보험료소득공제

$$\text{보험료 소득공제액} =$$

(2) 주택자금소득공제

공제액	한도	
Ⓐ × %(조특법)	Min(,) ① +	Min(,) ① + +
Ⓑ × %	② 연 만원	② 연 .
Ⓒ		. , 만원

5.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1)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2)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거주자에 대한 특례

(4) 수시부과결정시의 특례

SECTION

0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년 기출)

$$\begin{aligned}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 \text{Max}(,) \\ \text{①} &: \\ &\times \% + \left(- \text{만원} \right) \times \\ \text{②} &: \text{Max}(,) \\ \text{㉠} &\times + \left[+ - \right] \times \\ \text{㉡} &\times + \times \% + \left[- \right] \times \end{aligned}$$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 ()$$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 취지

(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3) 비교과세의 요건

- ①
- ②
- ③
- ④

(4) 산출세액 계산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① \times

② $\left[\begin{array}{cc} - & - \end{array} \right] \times + \left[\begin{array}{c} - \\ - \end{array} \right] \times$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 과세표준의 계산

- ①
- ②

과세 표준 = $\left(\begin{array}{c} \\ \end{array} \times \% + \begin{array}{c} \\ \end{array} \right)$

(2) 산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left(\begin{array}{c} \\ \end{array} \times \begin{array}{c} \\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c} \\ \end{array}$

(3)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산출세액 = $\begin{array}{c} \\ \end{array} \times \begin{array}{c} \\ \end{array}$

*

소득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종합소득 결정세액 = 과 중 선택

①

② $\begin{array}{c} \\ \end{array} = \begin{array}{c} \\ \end{array} + \begin{array}{c} \\ \end{array}$

㉠ $\times \%*$

㉡

*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① 원칙

사업소득 금액 = $\begin{array}{c} \\ \end{array} - \left(\begin{array}{c} \\ \end{array} \times \% \right) - \begin{array}{c} \\ \end{array} *$

②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text{사업소득 금액} = \text{ } - \left(\text{ } \times \% \right) - \text{ } *$$

*

세부 등록임대주택 :

㉠

㉡

㉢

(3)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사후관리)

①

②

5.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SECTION 03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1) 취지

(2) 세액공제액

$$\text{Min}(\text{ , })$$

①

②

2. 기장세액공제

(1) 의의

(2) 기장세액공제액

$$\text{Min}(\text{ , })$$

① $\times \text{ } \times \%$

② 한도 :

(3) 기장세액공제의 배제

①

②

*1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

①

②

③

*2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

①

②

3. 외국납부세액공제

(1) 의의

⇒

(2) 공제방법

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text{외국납부세액공제액} : \text{Min}(\quad , \quad)$$

$$\text{㉠ 외국납부세액} = \quad +$$

$$\text{㉡ 한도} : \quad \times \text{—————}$$

소득

②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③ 한도액 계산방법(국가별한도방식)

2) 사업소득의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선택

4. 재해손실세액공제

$$\text{재해손실세액공제액} = \text{Min}(\quad , \quad)$$

① $\quad \times$

② 한도액 =

5. 근로소득세액공제

6.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7. 자녀세액공제

구 분	자녀세액공제액
① : ② 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인 경우 : 연 만원 • 명인 경우 : 연 만원 • 명 이상인 경우 : 연 만원 + 명을 초과하는 명당 연 만원
② : ③ 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경우 : 연 만원 • 인 경우 : 연 만원 • 이상인 경우 : 연 만원

8.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Min(,) × % (또는 %*)
① 한도 : +
㉠ Min[Min(, 연 만원) + , 연 만원]
㉡ : Min(× %, 만원)

*

9. 특별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자

• : (+ + +)
• : ()

(2)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① : () +
② : () +
㉠ : (+ + +)
㉡ : () +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
②
③

(3) 보험료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 제 대 상	

세 액 공 제 액	보험료세액공제액 = +
	① () × % ② () × %

(4) 의료비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 제 대 상	
세 액 공 제 액	의료비세액공제액 = (+) × % + × % + × % ① Min(,) ㉠ - × % ㉡ 연 만원 ③ ④

(5) 교육비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 제 대 상	
세 액 공 제 액	교육비 공제액 = Min(,) × % ① - ② 한도 ㉠ :

㉡	명당 : 연 만원
㉢	당 : 연 만원
㉣	:

소득

(6) 기부금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 제 대 상	
세 액 공 제 액	①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 +) - ㉠ Min(,) ㉡ Min(,) ㉢ Min(,) ㉣ ② 기부금세액공제액 = Min(,) ㉠ × % () ㉡

Chapter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SECTION

01 과세기간 종도의 신고·납부 등

1. 중간예납세액

(1) 대상 :

(2) 중간예납기간 : ~

(3) 중간예납세액

① 원칙 :

② 예외 :

㉠

㉡

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3. 원천징수 (88.06년 기출)

(1) 개념

(2) 취지

세부 원천징수의 유형

①

②

(3)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시기

1) 원칙

2)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②

㉠

㉡

(5)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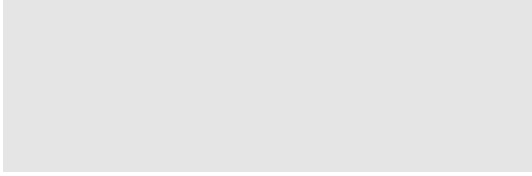
①

②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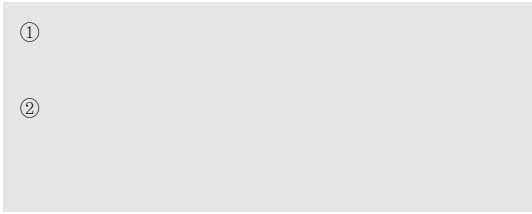
① 월별 납부 :

② 반기별 납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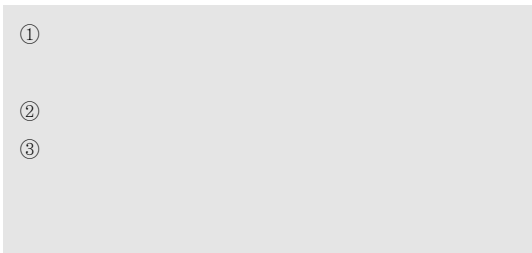


(7) 조세법률관계 (06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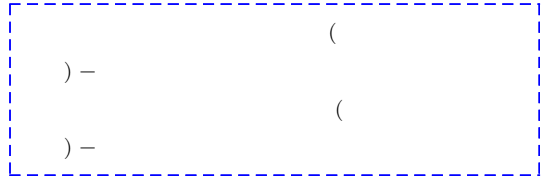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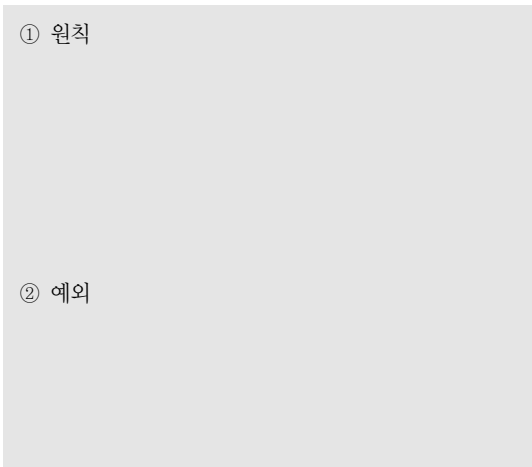
1)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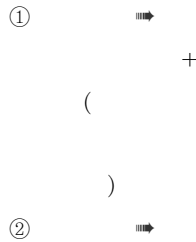


3) 국가와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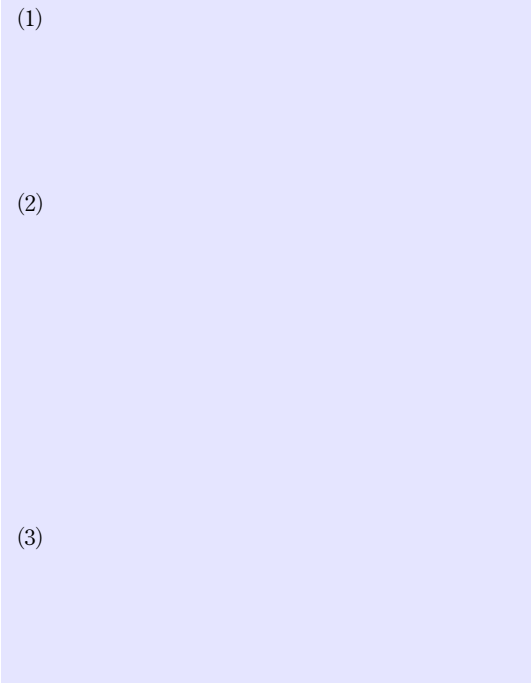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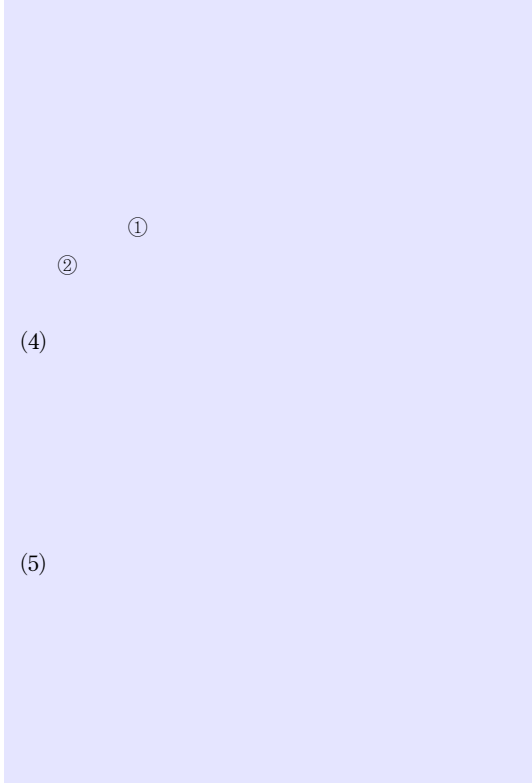
소득

핵심 비영업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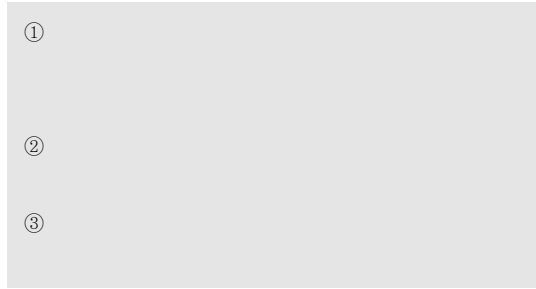
세부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② 추가신고 :



4. 수시부과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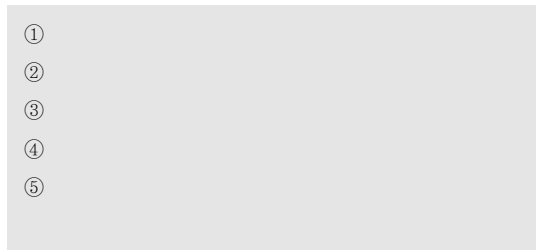


SECTION
0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면제



세부

3.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

(2) 분할납부

- ①
- ②

SECTION 03 사업장 현황신고

(1) 원칙

- ①
- ②

(2) 예외

SECTION 04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1) 신고기한 연장

(2)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3)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text{Min}(\quad , \quad)$$

① $\times \quad \%$

② 한도 :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①

$$\text{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액} = \text{Max}(\quad , \quad)$$

① $\times \text{—————} \times \%$

② $\times \%$

②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SECTION 0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1.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①

②

2.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

3.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times \%$
복식부기의무자가	$\text{Max}(,)$ ① $\times \text{---} \times \%$ A : B : C : (:) ② $\times \%$

SECTION 06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13,21년 기출)

1. 결정·경정방법

(1) 원칙 :

(2) 예외

①

②

2.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

(1) 추계수입금액의 계산 (21년 기출)

①

②

③

④

2) 수입금액에 가산

①

②

③

④

3. 추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

(1) 단순경비율

①

②

$$\text{소득금액} = \quad - \quad \times$$

*

(2)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기

Min(,)

① 수입금액

(-)

(-)

(-)

(단, × /) :

= 소득금액

② $\left[\quad - \left(\quad \times \quad \right) \right] \times$

4.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결정시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1) 총당금·준비금 가산

$$\text{소득금액} = \quad +$$

(2)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

)

판례

①

②

(13,21년 기준)

SECTION

07

가산세

1.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times \text{-----} \times \%$$

2.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소득

× %

Chapter 06

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개념

2. 퇴직소득의 범위

- ①
- ②
- ③
- ④

3. 비과세 퇴직소득

4.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2)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Chapter 07

양도소득

SECTION

0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소득

$$x \%x \text{ ----- } \times 3 + \quad x \%x \text{ ----- } x$$

5.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

①

② 한도액 = $x \text{ ----- } x$

6. 수입시기

7. 과세방법

(1) 소득을 지급하는 자

- 1) 원칙
- 2)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2) 소득의 귀속자

1. 양도소득의 개념 (15년 기출)

2. 양도소득의 범위

(1) 특정자산의 범위

<1 그룹>

- 1) 토지 또는 건물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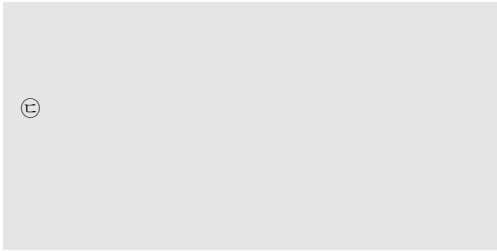
3) 다음의 기타자산

- ①
- ② 이촉권 :

③

④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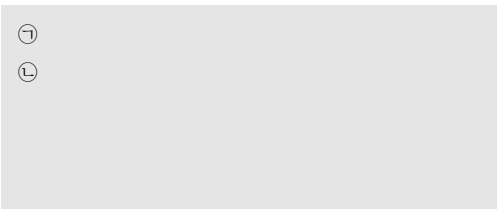


④ () :
) :

<2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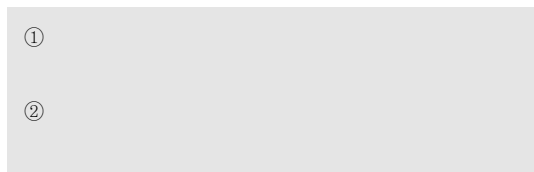
1) 국내주식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2) 국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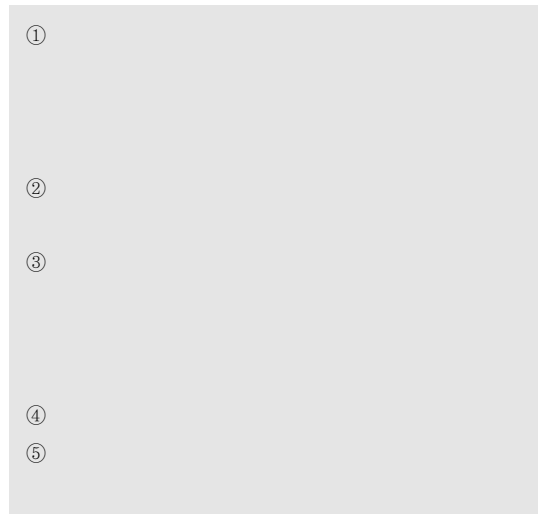


세부 대주주의 범위 :

구 분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상장법인	%	*
상장법인	%	
상장법인	%	
비 상 장 법 인	%	

*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 :

<3 그룹>



<4그룹>

(2) 양도의 개념 (04년 기출)

세부

핵심

(18년 기출)

판례

①

②

[일부 학설의 견해] 부

① 법정해제 :

② 약정해제 :

③ 합의해제 :

소득

판례

(1)

근거 : ①

②

①

②

(25년기출)

(2)

(3)

(4)

(5)

(6) ①

②

(25년기출)

SECTION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5년 기출)

(1) 의의

(2) 주택의 개념

① 주택 :

②

:

(3) 1세대의 개념

1) 원칙

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①

②

③

(4) 1주택의 요건

1) 1주택 요건의 판정

2)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①

②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③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④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

* 보유기간 :

4)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②

㉠

㉡

㉢

③

④

판례

판례

2. 비과세·감면배제

①

②

SECTION 03 취득 및 양도시기

① 유상양도

- ㉠
- ㉡
- ㉢

②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18년 기출)

*

③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④ 자가건설한 건축물

세부

판례

SECTION 0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1) 양도가액

1) 원칙

2) 저가양도

3) 고가양도

①

②

- ㉠
- ㉡

판례

(19년 기출)

(2) 취득가액

1) 원칙

2)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

3) 부당행위계산부인

4)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또는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 ()

5)

6) 부가가치세

①

②

③

(3)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①

②

(4)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 기

* 감정가액 :

소득

③ 필요경비개산공제

-
-
-

세부 기준시가

(1) 토지 또는 건물

- ① 토지 :
- ② 건물 :
-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 ④ 주택 :

(2) 주식 등

- ① 상장주식 등 :
- ② 비상장주식 등 :

판례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1그룹 :

② 2그룹 :

③ 3그룹 :

④ 4그룹 :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미등기 양도자산 :

①

②

③

④

⑤

판례



SECTION

05

세율

1. 원칙적인 세율

구분	대상자산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
		(%)
		(%)

			+ %
			+ %
			%
주식	국내 주식		%
			%(
			%)
			%
			%
	국외주식		%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과세율

종과대상 부동산	세 율
①	
②	+ %
③	
④	+ %

*

판례



소득

SECTION 06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04,12년 기출)

1. 요건

①

②

③

2. 적용배제

- ①
- ②
- ③
- ④

3. 이월과세의 내용

- ① 납세의무자 :
- ② 증여자 취득가액의 이월과세 :

- ③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
- ④ 보유기간 계산 :

SECTION 07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취지

2. 적용대상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
-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

3. 취득가액 계산

$$\text{①} \quad \times \quad *$$

$$\text{②} \quad \times (-$$

$$*)$$

*

-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
-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

②

소득

SECTION 08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1. 의의

2.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행위의 부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3. 효과

- ① 저가양도 :
- ② 고가매입 :

세부 시가

①

SECTION 09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06년 기출)

1. 요건

- ①
- ② + <
- ③
- ④

2. 효과

-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③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비교]

구 분	이월과세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1)		

(2)		
(3)		
(4)		
(5)		
(6)		
(7)		

SECTION 10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양도차손의 통산

(1) 그룹 구분

- ① 1그룹 :
- ② 2그룹 :

- ③ 3그룹 :
- ④ 4그룹 :

(2) 양도차손의 통산

- ① 1차 통산
- ② 2차 통산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15년 기출)

$$\times \frac{\quad - \quad}{\quad}$$

3.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06년 기출)

$$\text{양도(취득)가액} = \quad \times \frac{\quad}{\quad}$$

SECTION 11

신고납부절차

1. 예정신고납부기한(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2. 확정신고

- ①
- ②

SECTION 12 감자시 의제배당과 양도소득

- (1) 감자시 의제배당
- (2) 양도소득
- (3) 구분의 실익

- (4) 판례

소득

- 판례**
- (1)
 - (2)

(3) ①

②

③

④

(4)

SECTION
1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4, 24년 기출)

1. 납세의무자

2. 양도소득의 범위

3.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② ⇒ ③

(2)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3) 과표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
 (-) _____
 (=)
 (-) _____
 (=)

4. 세율 :

5. 외국납부세액공제

세부

①

㉠

㉡

②

SECTION 14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국외전출세) (24년 기출)

1. 취지

2.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국외전출자 :

①

②

3. 세액 계산구조

(1)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구조

(-) _____	...	+
(-) _____	... 연	만원
(x) _____	... % (%)	
(-) _____	...	

(2) 조정공제

조정공제액

= (_____ - _____) × _____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_____ , _____)

① _____ × _____

② 한도 : _____

소득

(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액 : $\text{Min}(\quad , \quad)$

① $\text{Min}(\quad \times \% , \quad \times \%)$

② 한도 : $\quad -$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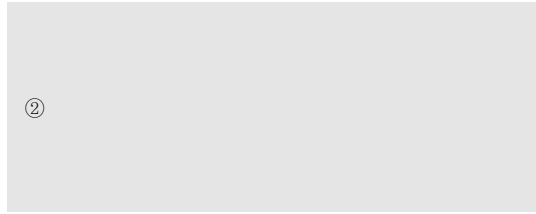
4.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1)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3)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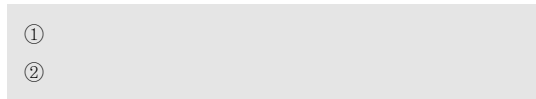
(4) 가산세



(5) 경정청구

5. 납부유예

(1) 납부유예



(2) 납부유예 후 납부

1) 5년(10년) 이내에 국외진출자 국내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2. 소득금액 지급받는 자(귀속자)

(1) 신고납부의무

1) 원칙

2) 예외

①

②

③

④

⑤

(2) 의무불이행시 불이익(제재)

Chapter 08

비거주자 (02년 기출)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1) 거주자

(2) 비거주자

2. 국내원천소득(13가지)

3. 국내사업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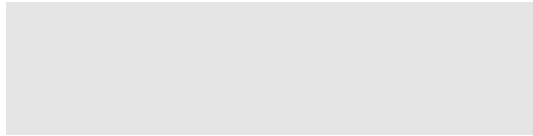
(1) 본래의 국내사업장

(예) :)

(2) 의제국내사업장

①

②



4.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 ㉠
 - ㉡
- ②
- ③

5. 과세방법

(1) 종합과세

1) 일반적인 경우

종합과세() :

2) 분리과세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 선택

소득

(2) 분리과세

1) 지급자

$$\begin{aligned}
 & \bullet \\
 & : \quad \times \% \\
 & \bullet \\
 & : \quad \times \% \\
 & \bullet \\
 & \bullet \\
 & : \quad \times \% (\%) \\
 & \bullet \\
 & : \text{Min}(\quad \times \%, \quad \times \%)
 \end{aligned}$$

2) 귀속자(비거주자)

(3) 분류과세(국내원천 퇴직소득·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 소득)

6.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 범위

(2) 과세방법

1)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text{원천징수세액} = \text{Min}(\quad \times \%, \quad \times \%)$$

2) 비거주자의 신고납부

*

핵심 유가증권양도소득과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구분

7.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 과세대상

①

②

③

(2) 과세방법

- ①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는 경우 :
- ②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실질귀속되지 않는 경우 :

$$\text{원천징수세액} = \text{Min}(\quad \times \%, \quad \times \%)$$

☞ 판례

(Blank area for case law)

8.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①

②

③

9.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25년 기출)

①

②

10.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PART IV

상속세 및 증여세법

- Chapter 01 상속세
- Chapter 02 증여세
- Chapter 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TAXATION LAW



Chapter 01

상속세

SECTION

01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비교

(22년 기출)

구 분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과세방법		
납세 의무자		
증여세 과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우리나라 과세유형	(1) 상속세 (2) 증여세	

SECTION

02

정의

1. 상속 (23년 기출)

①

②

③

④

2. 상속인

3. 수유자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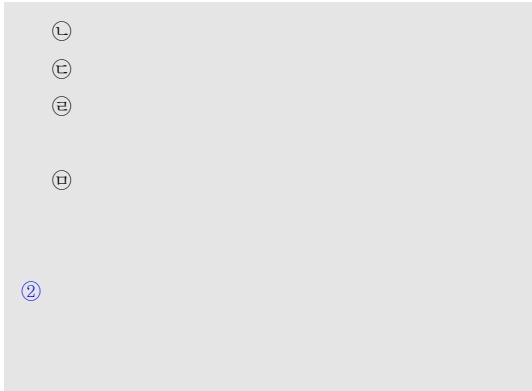
③

4. 특수관계인

①

㉠

상증



SECTION 03 상속세 납부의무

1. 인격에 따른 구분

(1) 자연인

=

(2) 법인

① 영리법인

취지

$$\left(\begin{array}{c} - \\ \times \% \times \end{array} \right)$$

② 비영리법인

(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

- ①
- ② 그 외의 경우 :

2.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 따른 구분

(1) 무제한납세의무자 :

(2) 제한납세의무자 :

3. 납부의무의 내용

(1)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

(2) 연대납세의무

$$\text{한도액} = \left[\left(\quad \right) - \quad \right]$$

보론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1) 상속세 납세의무

(2) 연대납세의무

판례

(1)

(2)

(3)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의 차이점] (14년 기출)

구 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차감액 ①		
②	만원 ~ 만원 공제	
③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의 차이		
과세표준계산 방법의 차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의 차이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제출기간의 차이		

상증

SECTION 04 총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

- ①
- ②

판례

(1)

(2)

(3) 처분 도중의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1) 피상속인이 양도자인 경우

①

② 대금의 일부받은 경우 :

2) 피상속인이 양수자인 경우

①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

②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

(상속재산의 평가 :

)

구 분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양도인 사망	양수인 사망
상속재산		
과세가액		

*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봄

구 분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양도인 사망	양수인 사망
상속재산		
과세가액		

[간주와 추정의 차이 (20년 기출)]

구 분	간주(= 의제)	추 정
개념		

(5)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하는 금액

$$\text{---} - \text{Min}(\text{---} \times \%, \text{---})$$

세부

SECTION 05

상속세 과세가액

1. 비과세

(1) 전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①
- ② $\text{Min}(\text{---} + \text{---}, \text{---}) +$
- ③
- ④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3. 공과금 등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1) 공과금

2) 장례비용(= +)

- ① $\leq \leq$
- ② \leq

3) 채무

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판례



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배제되는 채무

- ㉠
- ㉡

판례

- (1)
- (2)

핵심

구 분	10년·5년 이내 증여채무	10년·5년 이전 증여채무
증여채무 공제여부		
과세문제		

* 법령 :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4년 기출)

- ① 공과금 :
- ② 장례비용 :
- ③ 채무 :

상증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

(22년 기출)

(1) 의의

(2) 증여재산가액

- ①
- ②

(3) 평가방법

(4) 합산배제대상

- ①
- ②
- ③

- ㉠
- ㉡
- ㉢
- ㉣

- ㉓
- ㉔
- ㉕
- ㉖
- ㉗

(5) 비거주자인 경우

(6) 상속인·상속인 아닌 자의 판단기준

(7) 증여세액공제

- ①
- ②

판례

- (1)
- (2)
- (3)

SECTION 06 과세표준

1. 상속공제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2) 배우자상속공제 (13년 기출)

① 취지 :

② 배우자상속공제액계산

$$\text{Min}(,)$$

㉓

㉔ 한도 : $\text{Min}(,)$

$$\text{a) } \left[\begin{array}{ccc} & - & +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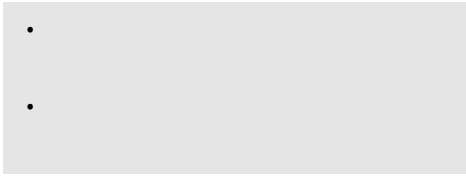
x -

㉕ 억원

③ 배우자상속공제의 공제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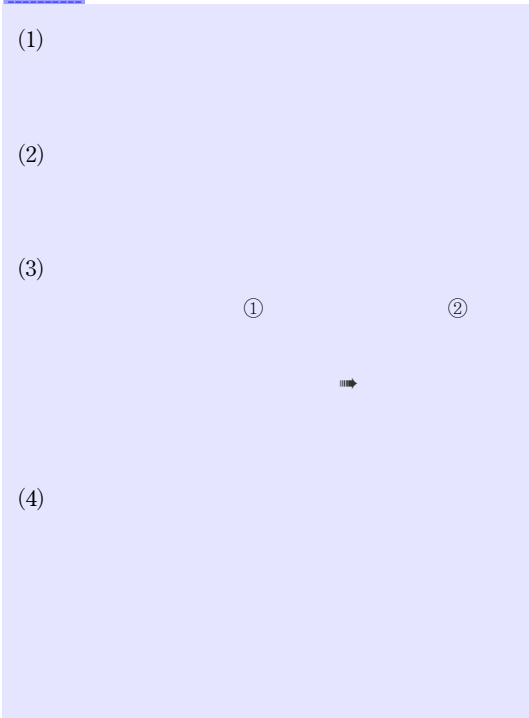
㉓ 원칙 :

㉔ 예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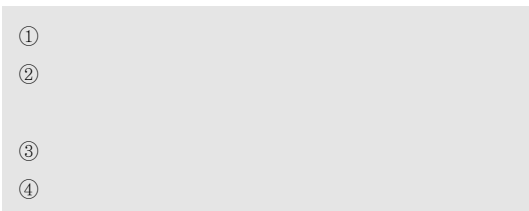


④ 공제의 최저한 :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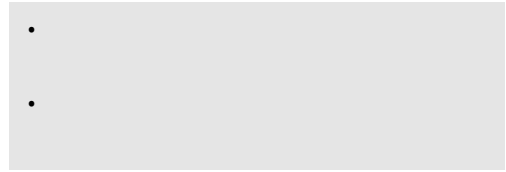
3) 그 밖의 인적공제



4) 일괄공제 [= Max(,)]

① +

②



상증

(2) 물적공제

1) 기업상속공제 (23년 기출)

① 기업상속공제액

기업상속공제액 = Min(,)

㉠

㉡

② 기업의 범위

세부 기업상속 적용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1.

- ①
- ②
- ③

2.

- ①
- ②
- ③

③ 기업상속공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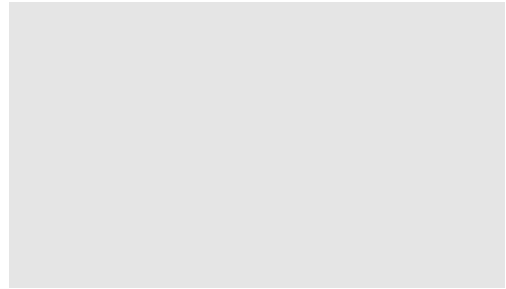
(ㄱ)

- ㉠
- ㉡
-
-
-

(ㄴ) 상속인 요건

- ㉠
- ㉡
- ㉢

(ㄷ)



세부

①

- ㉠
- ㉡

②

④ 기업상속재산의 범위

- ㉠
- ㉡

⑤ 사후관리

(ㄱ)
(ㄴ)
(ㄷ)
(ㄹ)
①

②

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기업인의 기업상속 혜택 배제

①

②

⑦ 사후관리 위반시 자진신고납부

⑧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상증

-

판례

2) 영농상속공제

① 영농상속공제액

$$\text{영농상속공제액} = \text{Min}(\quad , \quad)$$

② 영농의 범위 :

③ 피상속인의 요건

(ㄱ)

①

②

(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

④ 상속인의 요건 :

(ㄱ)

㉠

㉡

(ㄴ)

㉠

㉡

세부

①

②

⑤ 사후관리 :

⑥ 탈세·회계부정 영농인의 영농상속 혜택 배제

㉠

㉡

⑦ 사후관리 위반시 자진 신고납부

3) 금융재산상속공제

① 취지 :

② 금융재산의 범위()

$$\text{순금융재산가액} = \quad -$$

③ 공제금액

- ①
- 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만원 이하	
만원 초과 원 이하	만원
원 초과	() × %

판례

- (1)
()
- (2)

4)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
공제액 = -

5) 동거주택 상속공제(16년 기출)

① 요건

- ㉠
- ㉡
- ㉢

상증

② 공제액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Min(,)
 ① * × %
 ②

*

③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로 인정하는 범위

- ㉠
- ㉡
- ㉢

판례

- (1)
- (2)

(3) 상속공제 적용한도(16년 기출)

상속공제한도액 = - - -
 ① 상속세 과세가액

②
③
④

*(

)

*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
②
③

3.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 (14년 기준)

4. 과세최저한

SECTION
07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1. 산출세액

(1) 일반적인 경우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times \frac{\quad}{\quad} \times \%(\quad\%)^*$$

+

*

2. 납부세액의 계산

(1) 지정문화유산 등의 징수유예

1) 징수유예세액

$$= \quad \times \frac{\quad}{\quad}$$

2) 징수유예의 대상재산

①
②
③
④

3)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

(2) 증여세액공제

1) 취지 :

*

2) 공제방법

- ①
- ②

판례

(∵

)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5)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text{공제액} = \left[(\quad) - \quad - \quad \right] \times \%$$

SECTION 08 상속세 신고와 납부

1. 상속세 과표신고납부

2. 분할납부

- ①
- ②

3. 연부연납 (78,99년 기출) :

(1) 취지

(2) 요건

(3) 신청과 허가

구 분	신 청	허가와 통지
①		
②		
③		

(4) 담보제공

(5) 연부연납의 기간

① 상속세의 경우 : 다음에 따른 기간

㉠

㉡

㉢

② 증여세의 경우 : 다음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

㉣ 위 ㉠ 외의 증여재산 :

*1

①

②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

㉡

㉢

③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2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6)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1,000만원 초과)

$$\div (\quad + \quad)$$

(7) 연부연납가산금

세부 연부연납 가산의 가산율

①

②

(8)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 ①
- ②
- ③
- ④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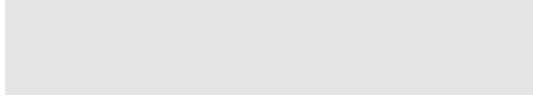
판례

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취지

(1) 유예신청

- ①
- ②



납부유예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 _____ × _____

상증

세부

1)

- ①
- ②

2) 절차 규정

① 신청절차

② 허가절차

- ㉠
- ㉡
- ㉢
- ㉣

(2) 납세담보의 제공

(3) 사후관리(상속세 납부사유)

①

:

②

③

㉠

㉡

$\times (\quad \div \quad)$

④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

⑤

(4)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5) 상속세 징수사유(허가 취소·변경)

①

②

(6) 재차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①

②

5. 물납 (07년 기출)

(1) 취지

(2) 요건

①

②

③

①

②

상증

(3) 물납신청의 범위

1) 물납한도(물납 신청세액의 범위)

①

㉠

㉡

- - ()

②

2) 비상장주식의 물납한도

물납
 신청세액 = - [-
 - (-)]

(4)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5) 물납의 신청과 허가(연부연납 준용)

1) 신청 및 허가

구 분	허가와 통지
①	
②	
③	()

2)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 ㉠
- ㉡

②

- ㉢
- ㉣
- ㉤
- ㉥
- ㉦
- ㉧

(6) 물납에 총당하는 방법

①

- ㉠
- ㉡
- ㉢
- ㉣
- ㉤
- ㉥

②

6.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1) 물납의 요건

①

②

(2)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의무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물납 요청

(4) 물납의 허가

(5) 물납 한도

SECTION 09 결정과 경정 등

1. 결정 (21년 기출)

2.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3.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hapter 02

증여세

SECTION

01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상증

판례

(:)

)

SECTION

02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1. 증여의 개념

판례

(1) ①

(=) ②

(2)

2. 증여세 납부의무

(1)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1) 무제한 납세의무와 제한 납세의무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2)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배제

3) 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4) 수증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의 면제

①

②

③

④

(2)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1) 연대납부의무

①

②

③

2) 연대납부의무 배제

①

②

③

④

⑤

3.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재산의 정의

- ①
- ②
- ③

(2)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재산의 범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 증여의제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04,19년 기출)

- ①
- ②
- ③

- ④

판례

(1)

(2)

상증

(4)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01,04,10,15년 기출)

- ①
- ②

반환시기	당초 증여	반 환
증 여 일 ~ 신고기한 이내		
신고기한 ~ 개월 이내		
신고기한 ~ 개월 지난 후		

핵심

판례

(1) :

(2)

(5)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6) 재산분할청구 (17년 기출)

- ①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
- ② 증여세 과세여부 :

- ③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7) 위자료 (17년 기출)

- ①

②

③

④

구 분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		
재산을 이전 받는 자		

(8) 사실혼 배우자 (17년 기출)

구 분	사실혼 배우자의 과세문제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	①
	②
협약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이혼)	①
	②

판례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②

-
-
-
-

SECTION 03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일반원칙

①

②

③

$$= \quad - \quad - \quad -$$

④

SECTION 04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1. 신탁이익의 증여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삼중

①

②

(2)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금의 증여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times _____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times _____ -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 (피상속인)	보험금 수령인	과세문제
			원칙 : 예외 :

3.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98.11.18년 기출)

(1)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 ① 요건 : $\geq \text{Min}(\quad \times \% , \quad)$
- ② 증여일 :
- ③ 증여재산가액

$$\text{증여 재산가액} = \quad - \text{Min}(\quad \times \% , \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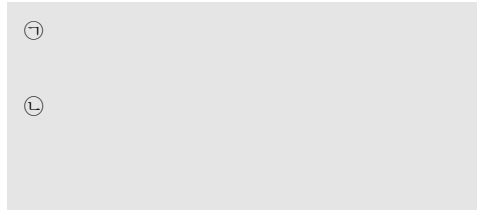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 ① 요건 :
- ② 증여일 :
- ③ 증여재산가액

$$\text{증여재산가액} = \quad - \quad$$

세부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①
- ②



③

판례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판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 ①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 (\quad)
- ②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1) 내용

$$\begin{aligned} \text{부동산} \\ \text{무상사용이익} &= \frac{\text{---}}{(\text{ + } (\text{ \%}))} \\ \text{각 연도 부동산} \\ \text{무상 사용 이익} &= \text{---} \times (\text{ \%}) \end{aligned}$$

2) 증여시기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1) 내용

$$\begin{aligned} \text{부동산 담보 이용 이익} \\ = \text{---} \times \text{---} - \text{---} \end{aligned}$$

2) 증여시기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4) 경정청구

- ①
- ②
- ③

$$\begin{aligned} \text{경정청구 대상금액} \\ = (\text{---}) \times \text{---} \end{aligned}$$

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begin{aligned} \text{①} & \quad \text{---} : \text{---} \times \text{---} \\ \text{②} & \quad \text{---} : \text{---} \times \text{---} \\ & \quad \quad \quad \text{---} \end{aligned}$$

*

(2) 대출기간의 계산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4) 경정청구

- ①
- ②
- ③

경정청구 대상금액
 = $\left[\quad \right] \times \underline{\hspace{2cm}}$

판례 상속개시 전 금전무상대출

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91년 기출)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1년 기출)

유 형	특수관계여부	현저한 이익여부
신주의 저가발행		
신주의 고가발행		

세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
 재산 = $\left(\quad - \quad \right) \times$
 가액

판례

(1)

(2)

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1년 기출)

10.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저가인수

$$\text{증여재산가액} = (\quad - \quad) \times$$

(2) 고가인수

$$\text{증여 재산가액} = (\quad - \quad) \times \quad \times \quad \times \quad *$$

*

유 형	특수관계여부	현저한 이익여부
저가인수		
고가인수		

상증

1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저가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 ②
- ③

$$\text{증여재산가액} = \quad - \quad$$

(2)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주가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①
- ②
- ③

$$\text{증여 재산가액} = (\quad - \quad) \times \quad - \quad - \quad$$

2) 주식이익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begin{aligned} & \text{증여재산가액} \\ & = (\quad - \quad) \times \quad \times \end{aligned}$$

(3) 전환사채 등의 고가양도의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quad - \quad$$

판례

(25년 기출)

1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년 기출)

(1) 취지

(2) 적용 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text{증여재산가액} = \quad - \quad$$

① 초과배당금액

$$\begin{aligned} & \text{초과배당금액} \\ & = \left[\quad - \quad \right] \times \quad \end{aligned}$$

②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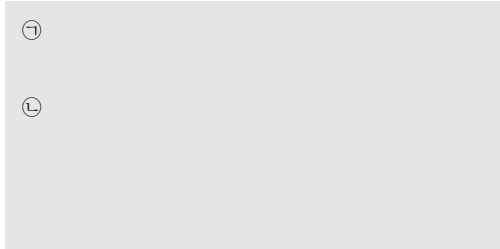
㉡ 그 밖의 경우 :

(4) 정산증여재산가액

① 증여세액의 정산

$$\begin{aligned} & \text{정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Delta\text{환급세액}) \\ & = \quad - \quad \end{aligned}$$

② 정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상증

(5) 증여시기

2)

1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증여재산가액

(1)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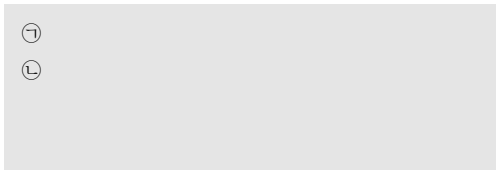
$$\begin{array}{l} \text{증여재산가액} \\ = \left[\quad - \quad - \quad \right] \times \end{array}$$

(2) 요건

1)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4) 증여세 정산

①



(5) 정산신고

②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세부

판례

(1) ①

②

③

(2)

(3)

(4)

(5)

(6)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정산신고 :)

$$\begin{array}{l} \text{증여재산가액} \\ = \left[\quad - \quad - \quad \right] \times \end{array}$$

*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재산가액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①

$$\begin{array}{l} \text{증여재산가액} \\ = \quad \times \quad - \end{array}$$

②

$$\begin{array}{l} \text{증여재산가액} \\ = \end{array}$$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

세부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text{㉠} \\ \text{㉡} \\ \times (+)$$

(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4) 경정청구

- ①
- ②

경정청구 대상금액
 = () × _____

판례



상증

16.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재산가액

구 분	증여재산가액
변동된 경우	(-) ×
변동된 경우	-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적용 요건

1) 수증자 요건

2) 재산 취득사유

- ①
- ②
- ③

3) 재산가치증가사유

- ①
- ②
- ③
- ④

4)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발생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 - - -

*

(3)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증여

판례

(1)

(2)

SECTION 05 증여추정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1) 취지

(2) 내용

1) 직접양도시

세부

2) 우회양도시

① 요건

- ㉠
- ㉡

② 증여추정

③ 이종과세 조정

3) 증여추정의 배제

- ①

- ②
- ③
- ④
- ㉠
- ㉡
- ⑤
- ㉠
- ㉡
- ㉢

상증

보론 증여추정과 관련된 과세문제

- ① 양도사실 입증 × :
- ② 양도사실 입증 ○ :

- ㉠
- ㉡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02.06.14년 기출)

()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3) 차명계좌 증여추정

(4) 자금출처 입증

(5) 증여추정배제

- ①
- ②

③ $\lt \text{Min}(\quad \times \%)$

(6) 증여재산가액

—

SECTION 06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0,25년 기출)

(1) 취지

(2) 과세요건

- ①
- ②
- ③
- ④

(3) 배제사유

- ①
- ②

(4) 조세회피목적의 추정

- ①
- ②

(5) 증여의제시기

- ①
- ②

(6) 납세의무자

(7)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8)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①

②

(9) 합산배제증여재산

(10) 과세표준

과세표준 = * -

*

판례

(1)

(2)

(3)

(4)

1) -

2)

3)

①

②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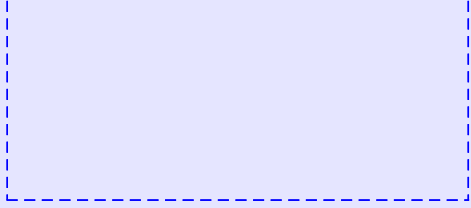
()

이유 : ①

②

③

상증



(6) 18년() 판례 :

(7)

(8)

(9)

(10)

(11)

(12)

()

(13)

(25년 기출)

2.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취지

(2) 과세대상자

한계보유비율	
①	: %
②	: %

1) 지배주주

①

②

상증

2) 지배주주의 친족

(3) 과세요건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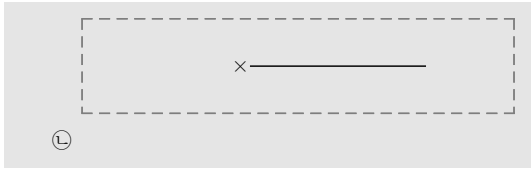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②

㉠



* 과세제의 매출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4) 증여의제이익

1) 증여의제이익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증여의제이익} &= + \\ \text{㉠ 직접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 &= \times \left[\begin{array}{l} - \% \\ - \%* \end{array} \right] \\ \text{㉡ 간접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 &= \times \left[\begin{array}{l} - \% \\ - \%* \end{array} \right] \end{aligned}$$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증여의제이익} &= + \\ \text{㉠ 직접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 &= \times \left[\begin{array}{l} - \% \\ - \%* \end{array} \right] \\ \text{㉡ 간접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 &= \left[\begin{array}{l} - \% \\ - \%* \end{array} \right] \end{aligned}$$

* %(또는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증여의제이익} &= + \\ \text{㉠ 직접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 &= \times \left[\begin{array}{l} - \% \\ - \%* \end{array} \right] \\ \text{㉡ 간접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 &= \times \left[\begin{array}{l} - \% \\ - \%* \end{array} \right] \end{aligned}$$

2) 세후영업이익

$$\left[\begin{array}{l} - \left[\begin{array}{l} - \\ - \end{array} \right] \times \text{—————} \\ \times \left[\begin{array}{l} - \text{—————} \\ (\quad)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ax 영업손익

$$= \begin{array}{l} (\quad - \quad - \quad) \\ \pm \end{array}$$

3) 증여의제이의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

- ①
- ②
- ③
- ④

(5) 증여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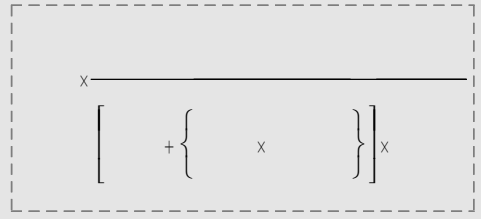
(6) 증여세 신고기한

(7) 이중과세 조정

①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조정



㉡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의 금액



삼중

② 양도소득과의 이중과세조정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년 기출)

(1) 과세대상자(수증자)

* 지배주주의 범위 :

(2) 과세요건

(3)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

$$= \left[\left(\begin{array}{c} \times \\ \times \end{array} \right) - \begin{array}{c} \times \\ \times \end{array} \right]$$

정산증여의제이익

$$= \begin{array}{c} \times \\ \times \end{array} - \begin{array}{c} \times \\ \times \end{array}$$

2)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시 3년 간 배당소득 상당액 공제

(4) 증여의제시기

(5) 증여세 신고기한

$$\begin{array}{c} \times \\ \times \end{array}$$

(6)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조정

3) 정산 신고기한

$$\begin{array}{c} \times \\ \times \end{array}$$

(8) 양도소득과의 이중과세조정

(7) 정산

1) 정산방법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2,20년 기준)

(1) 취지

(2) 증여요건

1) 특정법인에 해당될 것

*

2)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할 것

①
②
③
④

㉠
㉡
㉢
㉣
㉤

㉥
㉦
㉧
㉨

*

(3) 증여시기

(4) 증여의제이익 및 수증자

$$\left[\quad - \left(\quad - \quad \right) \right] \times$$

(5) 한도

(6) 증여세 신고기한

상증

SECTION 07

증여세 과세가액

1. 비과세 증여재산

- ①
- ②
- ③
- ④
- ⑤

2.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2)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1) 자익신탁의 과세가액불산입

- ①
- ②
- ③

2) 타익신탁의 과세가액불산입

- ①
- ②
- ③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
- ㉡
- ㉢

3) 한도

4) 증여세 부과

- ①
- ②
- ③
- ④

3. 부담부증여 (06.21년 기출)

(1) 개념

(2) 증여세 과세상 취급

1)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2)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3) 양도소득세법의 취급

1)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text{양도(취득)가액} = \text{ } \times \text{ } \text{---}$$

2)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①

②

4. 재차증여재산가액

세부 합산배제증여재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상증

SECTION 08 증여세 과세표준

1. 증여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증여재산

$$= \text{ } - \text{ } - \text{ } - \text{ }$$

(2) 합산배제증여재산

①

$$= \text{ } (\text{ }) - \text{ }$$

② 그 외의 합산배제증여재산

$$= \text{ } - \text{ } - \text{ }$$

2. 증여재산공제

증 여 자	공제금액
①	원
②	원 (단, : 원)
③	원
④	원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액

1) 혼인 증여재산공제

2) 출산 증여재산공제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배제

(3) 반환특례

①

②

③

(4)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①

②

4. 재해손실공제

= -

5.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①
- ②
- ③

6. 증여세 과세최저한

SECTION 09 증여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1) 세율

% ~ %의

(2)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2. 세액공제 등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징수유예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납부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begin{aligned} & \text{공제액} \\ & = \left[(\quad) - \quad - \quad \right] \times \% \end{aligned}$$

SECTION 10 증여세 납세절차 및 결정

1. 과표신고

2. 분할납부

- ①
- ②

상증

3. 연부연납

4. 결정 (21년 기출)

Chapter 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SECTION

01 재산평가

(1) 원칙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03년 기출)

1) 불특정다수 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객관적인 교환가액)

*

2) 시가로 인정하는 것(예시적 규정)

①

㉠

㉡

②

③

㉠

㉞

$$< \text{Min}(\quad \times \% , \quad)$$

㉟

㊱

3) 평가기간의 연장

4) 유사매매가액

판례

(1)

(2)

보론 소급감정가액

상증

(2) 예외

1) 토지 :

2) 건물 :

3) 주택 :

4) 영업권

① 초과이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

$$\text{영업권} = \quad / (+ \%)$$

$$n : \quad (\quad)$$

② 초과이익금액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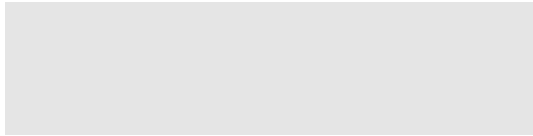
$$\ominus \quad \times \%$$

$$\frac{(-) \text{㉞} \quad \times \quad (\%)}{\ominus \quad (-)}$$

5) 가상자산

①

②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21년 기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액 = Max(,)

①

②

판례



(4) 정기금

① :
 ② : ×
 ③

판례

(1)



(2)

(5)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79,18년 기출)

1) 상장주식

- ① (=)
- ②

구 분	평가대상기간
㉠	
㉡	
㉢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00,18년 기출)

① 1주당가액

(가) 원칙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 = Max(,)

㉠ [(+ (×) ÷ (≥ × %)]

$$\text{㉔} \quad \frac{(\text{순자산가치} \times \text{평가대상 법인} \times \text{순자산가치 평가대상 법인})}{\text{순자산가치} \times \%} \div$$

(㉔)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법인

- ㉑
- ㉒
- ㉓
- ㉔
- ㉕

㉑ 1주당 순손익가치

(㉑)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text{1주당 순손익가치} = \frac{\text{순손익액}}{\text{주당 순손익액}} (\%)$$

(㉒)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left(\frac{\text{1년} \times \text{순손익액} + \text{2년} \times \text{순손익액} + \text{3년} \times \text{순손익액}}{\text{1} + \text{2} + \text{3}} \right) \times \text{—}$$

(㉓)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text{—}$$

㉑ 1주당 순자산가치

$$\text{1주당 순자산가치} = \text{—}$$

3)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

상증

*

SECTION 02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1.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1) 공익법인 등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

① 상속세

② 증여세

(2)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

2. 과세가액불산입 배제

①의 주식 :

☐

☐

☐

☐

②

② 비율 :

(-) : %

☐

☐

(-) ☐

☐

판례

(1)

(2)

세부

①

SECTION 0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85,08년 기출)

취지

1. 자기내부거래규제

(1) 상속세 과세

(2) 증여세 과세

2.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

(1) 출연재산

(2) 운용소득

①

②

상증

(3) 매각대금

①

②

판례

()

3.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1) 공익법인이 취득시 (08년 기출)

(2) 주식보유 20%를 인정하는 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3) 공익법인 의무지출을 위반한 경우

①

㉠

㉡

②

$$\text{가산세} = (\quad - \quad) \times \%*$$

*

(4) 공익법인의 전체주식보유규모 제한

(5) 요건 미충족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①

②

(6)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7)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제한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수수 없이 계열기업 광고·홍보 금지 :

4. 기타

(1)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

(08년 기출)

(2)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08년 기출)

5.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

(1) 신고의무

(2)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

$$\text{가산세액} = \text{ } \times \%$$

6. 출연재산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의무

(1) 보고서제출의무

(2) 세무확인의무 및 회계감사의무

(3) 전용계좌 개설·사용·신고의무

①

:

②

$$\text{㉠} \times \%$$

$$\text{㉡} \times \%$$

(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5) 장부의 작성의무

상증

PART V

부가가치세법

- Chapter 01 총설
-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Chapter 03 과세거래
-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등
- Chapter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Chapter 07 세액공제
- Chapter 08 경영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 Chapter 10 간이과세

Chapter 01

총설

SECTION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과세방법 등

1. 과세유형

(1)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

$$\begin{aligned} & \text{부가가치} \\ & = \quad - \\ & = \quad + \quad + \quad + \quad + \end{aligned}$$

(2) 소득형(국민순생산형) 부가가치세

$$\begin{aligned} & \text{부가가치} \\ & = \quad - \quad - \\ & = \quad + \quad + \quad + \end{aligned}$$

(3) 소비형 부가가치세

$$\begin{aligned} & \text{부가가치} \\ & = \quad - \quad - \end{aligned}$$

2. 과세방법

(1) 가산법

$$\text{부가가치세} = (\quad + \quad + \quad + \quad) \times$$

(2) 공제법

1) 전단계거래액공제법 (14년 기출)

$$\text{부가가치세} = (\quad - \quad)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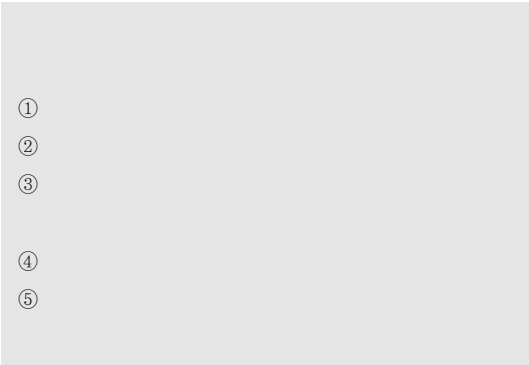
2) 전단계세액공제법 (14년 기출)

$$\text{부가가치세} = (\quad \times \quad) -$$

3. 국경세조정

(1) 원산지국(생산지국) 과세원칙

(2) 소비지국과세원칙 (09년 기출)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SECTION

01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 ,

2. 사업자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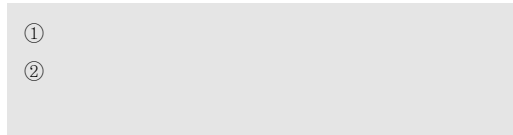
3.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

(1) 과세사업자

(2) 수입자

(3) 실질과세의 원칙 (11년 기출)

핵심 부동산매매업(예시적 규정임)



판례

(1)

(2)

(3)

①

②

㉠

㉡

㉢

㉣

③

부가

SECTION

02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

1. 납세의무자 (20,23년 기출)

(1) 원칙 : 수탁자

(2) 예외 : 위탁자

(3)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1)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 ②

(2)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①
- ②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

- ①
- ②
- ③

4.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1) 재화의 공급 간주

- ①
- ②

(2) 납세의무자

5.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급

(2)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급

(3) 물적납세의무의 승계

(4) 국세우선권의 제한

6.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7.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8. 매입세액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 ①
- ②

SECTION 03 납세지

1. 개요 (11년 기출)

① 원칙 :

② 예외 :

2. 사업장의 범위

(1) 사업장

(2) 구체적인 사업장

- ① 광업 :
- ② 제조업 :
- ③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
- ④ 부동산임대업 :
- ⑤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4) 직매장과 하치장

(5) 임시사업장

3. 주사업장 총괄 납부 (99,02,04,11년 기출)

(1) 취지

(2) 총괄 납부의 대상자 및 주된 사업장

① 총괄 납부 대상자

② 주된 사업장

법인 : , 개인 :

(3) 총괄 납부의 신청

1) 계속사업자

①



②



2) 신규사업자



(4) 총괄 납부의 효력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

②

③

(5)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사유

①

②

③

④

⑤

(6) 적용제외 및 포기

1) 적용제외 (02년 기출)

2) 총괄 납부의 포기

① 절차 :

②

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11년 기출)

(1) 취지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3)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①

②

③

(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효력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서의 사업장

2)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의 공급의제규정 적용배제

(5) 변경사유 발생시

(6) 포기

- ① 절차 :
-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비교]

구 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취지		
주된사업장 ()	① 법인 : ② 개인 :	① 법인 : ② 개인 :
적용 절차		
변경사유 발생시		
효력	①	①

	②	②
적용제외		
포기신고		

부가

SECTION 04 사업자등록

1. 의의

세부 법적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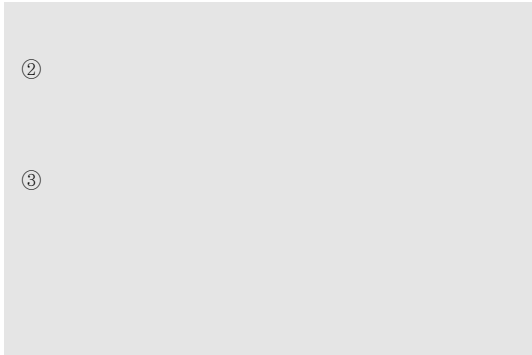
2. 신고절차

(1) 등록신청

1) 사업장단위등록

2) 사업자단위등록

①



(2) 등록증 발급

1) 등록증의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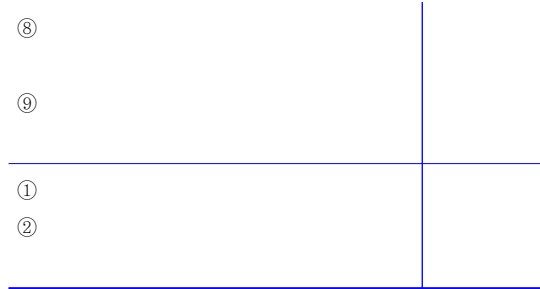
일() + 일() 이
내 발급

2) 등록거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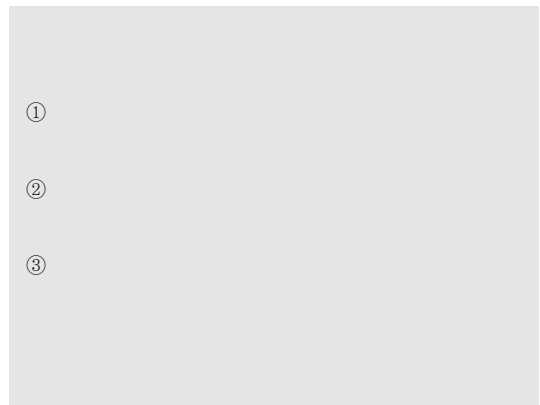
(3) 휴·폐업의 신고

(4) 등록정정

등록정정 사유	재발급 기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등록말소



(6) 등록갱신

3. 등록과 관련된 제재(불이익)

(1) 미등록에 대한 제재 (11년 기출)

1) 미등록가산세

가산세 = () × % (%)

2)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2) 타인명의등록에 따른 제재(타인명의등록가산세)

$$\text{가산세} = (\quad) \times \%(\%)$$

판례

(1)

(2)

Chapter 03

과세거래

SECTION

01 과세대상 거래

1. 재화의 공급

(1) 재화 (17년 기출)

부가

(2) 재화의 공급의 개념

(3) 실질공급(본래 재화의 공급)

1) 매매계약

①

②

2) 가공계약 (17년 기출)

① 주요 자재의

:

② 주요 자재의

:

3) 교환거래

①

② 기부채납 :

4) 현물출자

- ①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 인도 :
- ② 출자지분의 양도 :

5) 경매·수용·현물출자 그 밖의 원인에 따른 공급

①

②

③

④

판례

핵심 재화의 공급요건

①

②

③

④

2. 재화 공급의 특례

(1)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95,16년 기출))

1) 자가공급 (88,01,03년 기출)

① 면세사업 등에 전용 (19년 기출)

㉠ 내용 :

㉡ 취지 :

세부 자기생산취득재화

㉠

㉡

㉢

판례

②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내용

㉡

㉢

(L) 취지 :

판례



③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

㉠ 내용 :

㉡ 취지 :

㉢ 배제 :

2) 개인적 공급

① 내용 :

㉠

㉡

㉢

㉣

㉤

㉥

② 취지 :

3) 사업을 위한 증여(사업상 증여)

① 내용 :

② 취지 :

③ 배제 : ㉠

㉡

㉢

㉣

4)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

① 내용 :

② 취지 :

핵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공급시 과세가 되는 경우 :

(2) 위탁매매와 대리매매 (23년 기출)

부가

(3)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1) 재화의 공급 간주

- ①
- ②

2) 납세의무자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6년 기출)

1) 담보제공

2) 사업양도 (22년 기출)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② 취지

③ 적용배제

④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24년 기출)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 ㉡ 사업양도자의 처리
- ㉢ 사업양수자의 처리

판례



3) 물납

4) 신탁재산의 이전

- ①
- ②
- ③

3. 용역의 공급

(1) 용역 (17년 기출)

(2) 용역의 공급

핵심 용역의 공급요건

- ①
- ②
- ③
- ④

(3) 용역 공급의 범위

- ①
- ②
- ③

세부 다음의 사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
- ㉡

(4) 용역 공급의 특례 (16년 기출)

1) 용역의 자가공급 (03년 기출)

2) 용역의 무상공급

① 일반적인 경우

②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 ㉠
- ㉡

3) 근로의 제공

판례

- (1)
- (2)

보론 재화와 용역의 구분 실익

- ①
- ②

부가

- ③
- ④

4. 재화의 수입 (09년 기출)

(1) 취지

(2) 재화의 수입

- ①
- ②

(3) 보세구역에서의 적용

- ①
- ②

(4) 공급시기

(5) 과세표준



(6) 부가가치세 징수

(7) 수입시기

5. 부수재화 또는 용역 (84,17년 기출)

취지

(1)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는 경우

1) 유형

- ① 대가관계
- ② 거래의 관행

2) 구분의 실익(독립된 거래가 아님)

- ①
- ②

판례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

1) 유형

- ① 우연히·일시적 공급

② 필연적 부산물

2) 구분의 실익(독립된 거래임)

SECTION 02 공급시기 (78년 기출) 와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원칙

- ① 이동이 필요한 경우 :
- ②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판례

(2)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03,10년 기출)

- ① :
- ② :
- ③ :
- ④

⑤ :

⑥ :

⑦ :

⑧

㉠

㉡

㉢

㉣

⑨

㉠

㉡

㉢

⑩

: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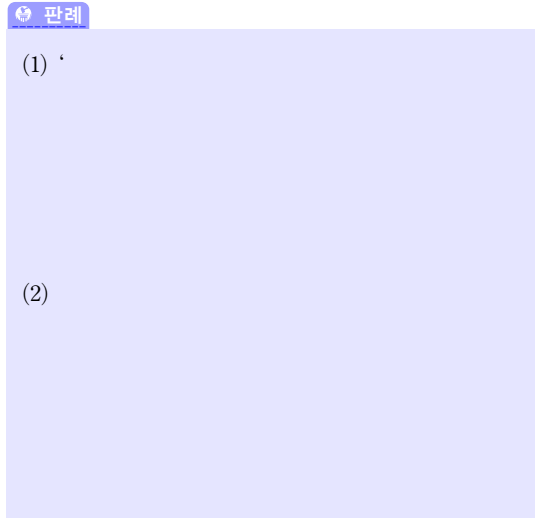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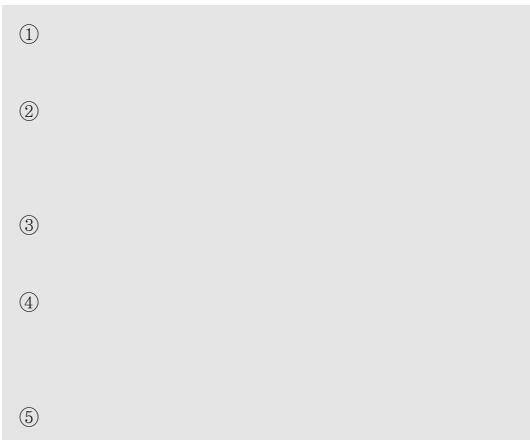
- ⑪ :
- ⑫ :

-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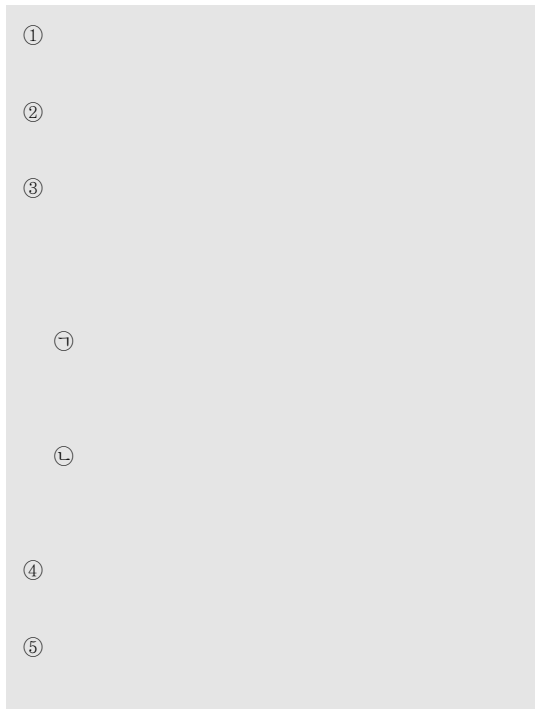
2.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원칙

(2)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3. 공급시기의 특례 (10,21년 기준)



⑥

4. 재화의 수입시기

5.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 ① 이동이 필요한 경우 :
- ②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2) 용역의 공급장소

- ①
- ②
- ③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83,02년 기출)

SECTION

01 영세율 (07,09년 기출)

1. 취지 (90,02,07년 기출)

- ①
- ②
- ③

2. 영세율 적용대상자(07,15년 기출)

()

3. 영세율의 경제적 효과(98년 기출)

(1) 영세율의 가격효과

(2) 환수효과

(3) 수출지원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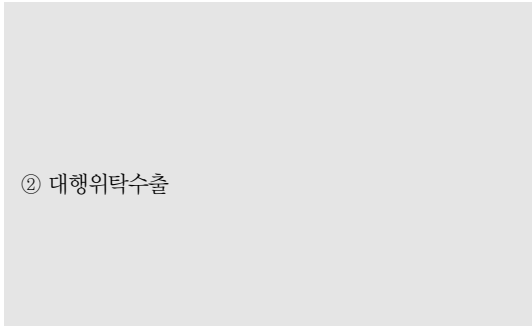
4.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07년 기출)

(1) 수출하는 재화

1) 재화의 국외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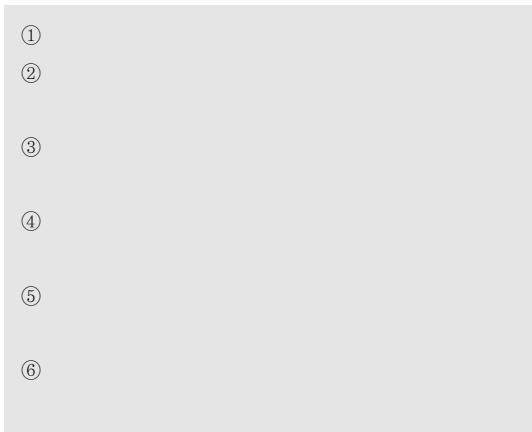
- ① 직수출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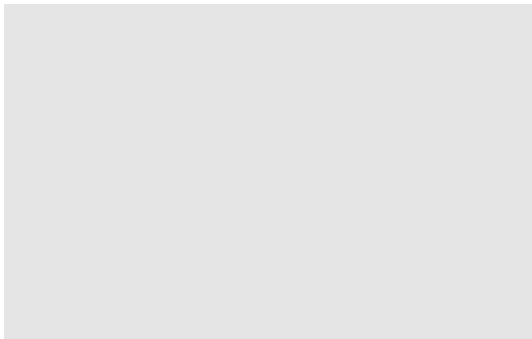
② 대행위탁수출

2)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3) 국내거래이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



판례

(1)

(2)

(근거 :

:)

(3)

(2) 용역의 국외공급 (15년 기출)

판례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②

(4) 외화획득재화·용역의 공급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① 재화

㉠
+ ㉡
+ ㉢
+ ㉣

② 용역

㉠
+ ㉡
+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①

②

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4)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5)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6) 그 밖의 영세율대상 거래

①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

㉠

㉡

② 지정사업장에서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것

5.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의무 (02.07년 기출)

6.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SECTION
02 **면세**

1. 취지 (90,98,02년 기출)

①
②
③

2. 경제적 효과(영세율과 비교)

(1) 가격효과

(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3. 면세효과

4.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

① ()
)* (17년 기출)

*

①

②
③
④

- ②
③
④
⑤
⑥

- ⑦ (17년 기출)
⑧

세부 |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과세·면세의 판단

구 분	건 물	주택부수토지
주택면적		주택부수토지 = Min(,)
		①
사업용 건물면적	㉠	② : Max(,)
		㉡ × ()
주택면적		주택부수토지 = Min(,)
사업용 건물면적	㉠	① × (/)
		② 한도 : Max(,)
	㉡	× ()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취지

() *1 ()

),
*2

*1 의료·보건용역 중 과세 대상

- ①
- ②
- ㉠
- ㉡
- ㉢
- ㉣
- ㉤

*2 다음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과세

- ①
- ②

(3)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97.05년 기출)

취지

*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

- ①
- ②
- ③
- ④

부가

(5) 기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대상

- ①
- ㉠
- ㉡
- ②
- ③
- ④

판례

(1)

(2)

(3)

(4)

(5)

(6)

(7)

(8)

5. 면세의 문제점

(1) 환수·누적효과의 문제발생

(2) 상호검증기능의 문제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3)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4) 과세형평상 문제점

6.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02년 기출)

7. 면세의 포기 (02,15년 기출)

(1) 면세포기의 대상

①

②

*

(2) 면세포기의 신고 및 효력

①

②

()

(3) 면세포기신고시 면세적용배제

(4) 면세적용

핵심 기부채납(과세거래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

①

②

핵심 공유수면매립공사

면세 정도		
대리 납부 의무		

부가

8.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세율	면 세
취지		
적용 범위		
부가 가치 세법상 의무		
매입 세액 환급 (공제) 여부		

판례

(1)

(2)

(3)

(4)

①

②

c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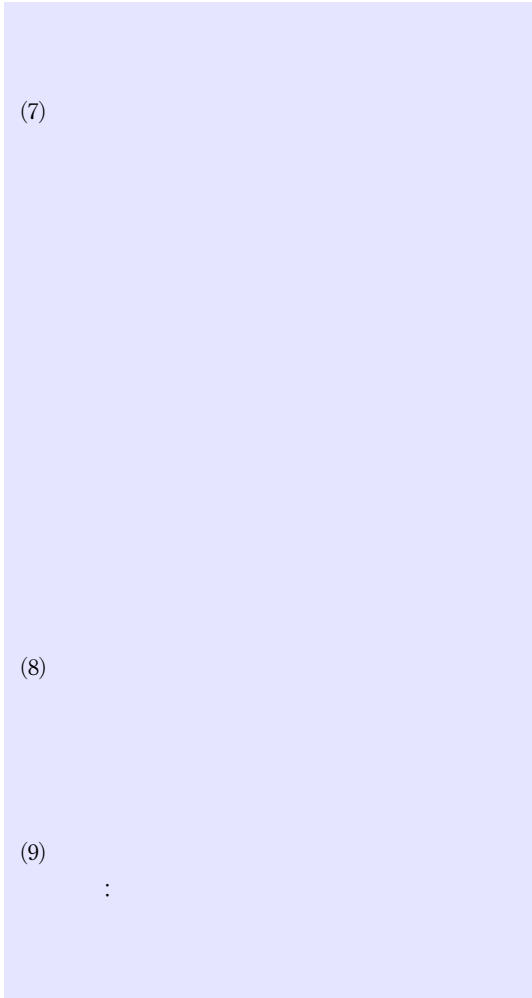
(5)

(

)

(6)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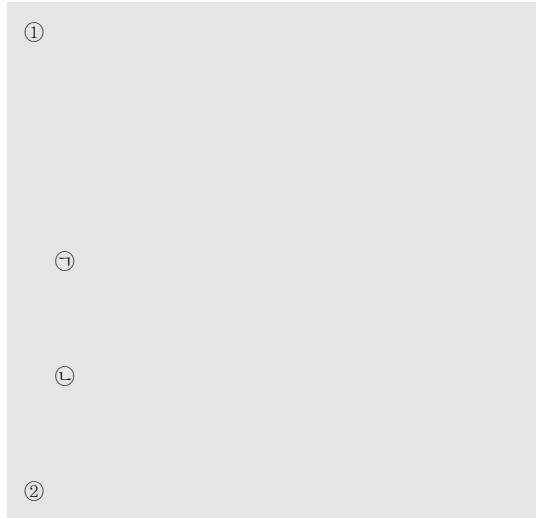


(4)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

(23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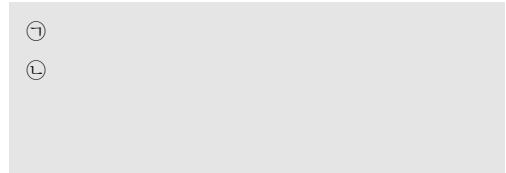
1) 마일리지등의 개념

2) 마일리지등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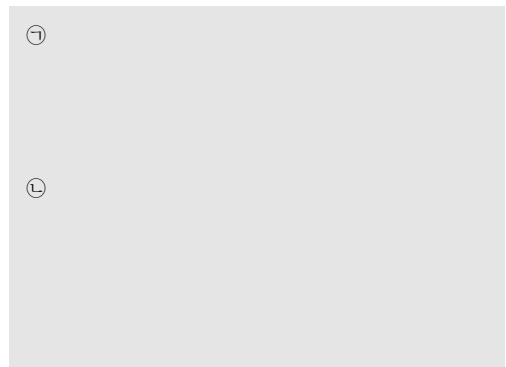


3)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

① 일반적인 경우 : +



②



4)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5)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08년 기출)

- ①
- ②
- ③

판례

(근거: ①

②

)

②

$$\begin{array}{l}
 \text{㉠ 세관장:} \quad \quad \quad () \\
 = \quad \quad \quad + \quad + \quad + \\
 \quad + \quad \cdot \quad \cdot \quad + \\
 \quad + \\
 \text{㉡ 사업자:} \quad = \quad -
 \end{array}$$

부가

2.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1) 간주공급의 공급가액

1)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의 경우

(6) 거래형태별 공급가액(08년 기출)

- ①
- ②
- ③
- ㉠
- ㉡
- ④
- ⑤
- ⑥

2) 판매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 외의 경우

① :

②
㉠ 일반적인 경우

$$\times \left[- \% (\%) \times \right]$$

㉡ 면세일부전용

$$\times \left[- \% (\%) \times \right] \times$$

(7) 재화수입의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

(2)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22년 기출)

①

②

㉠

㉡

구분	내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1단계】
	【2단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 곤란한 경우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1) 일반적인 경우

$$= \quad + \quad +$$

① 임대료 : (,)

② 간주임대료 = $\times \times /$

③

2) 겸용주택의 경우

- ①
- ②
- ③ ()
- ④ ()

SECTION 02 대손세액공제특례 (02,18,25년 기출)

1.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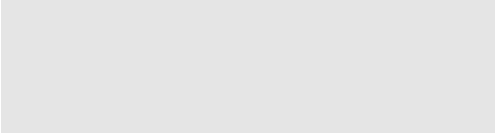
2.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3. 대손세액 공제요건

- ①
- ②

㉠

㉡



③

④

4. 대손세액의 계산

$$\text{대손세액} = (\quad) \times /$$

5. 대손세액의 조정방법

(1) 공급자에 대한 조정

- ①
- ②

(2) 공급받은 자에 대한 조정

- ①
- ②

6. 절차

+

판례

(1)

(2)

(3)

(25년 기출)

부가

SECTION

03

세율

1. 세율

①

②

2.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97년 기출)

(1) 역진성

(2)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①
- ②

SECTION

04

납부세액

1.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 ②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10,23년 기출)

(1) 개요

(2) 요건

- ①
- ②
- ③

(3) 발행 절차

① 신청 :

②

- ㉠
- ㉡
- ㉢
- ㉣

③

(4) 매입세액공제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6,14,18년 기출)

(1) 매입처별T/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1) 미제출, 부실기재분(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

2)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 ①
- ②
- ③

(2) 세금계산서의 미수령·부실기재분

1) 미수령분, 부실기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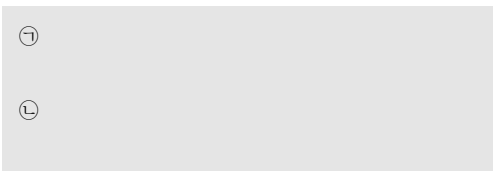
2)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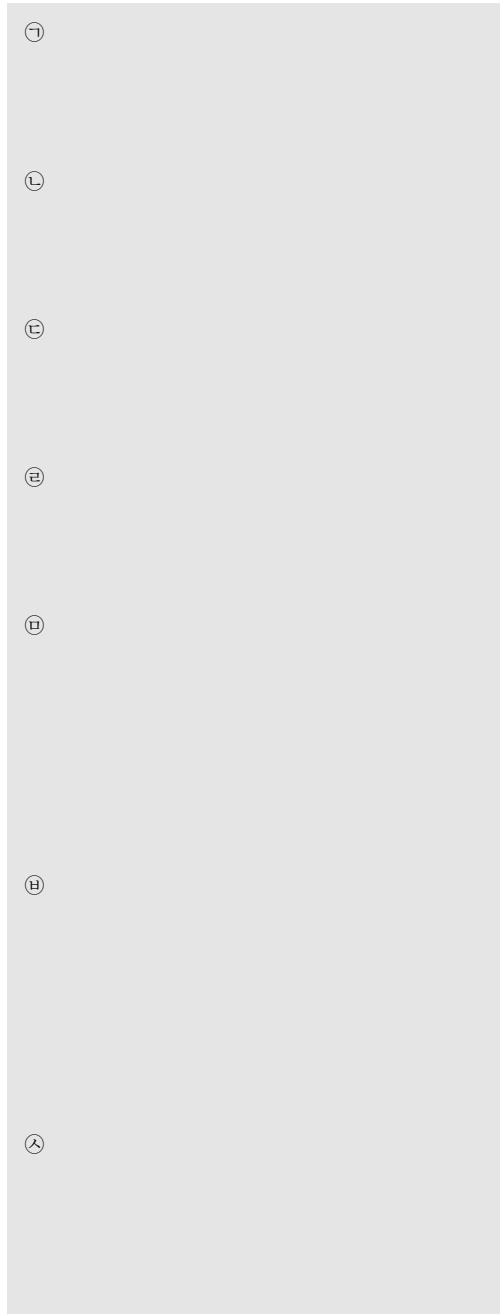
⑤

⑥

⑦

⑧

⑨



부가

⑩

⑪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①
- ②
- ③

(4)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 ①
- ②
- ③

(8)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 판례

(1) (1) (1)

(2) (2) (2))

(3) (11년 기출)

(4) ①

②

(5)

(6)

(14년 기출)

(7)

(8)

(9)

(10)

(11)

※ 보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1. 매입세액공제 견해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기본원리 침해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배

(3) 과잉금지의 원칙

2. 매입세액 불공제 견해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①

②

③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 :

- ①
- ②
- ㉠
- ㉡

5. 의제매입세액공제 (12년 기준)

(1) 취지

(2) 요건

①

②

③

*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Min(,)

① ×

② 한도 : × ×

(4)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① 적용대상사업자

㉠

㉡

② 2기 과세기간 공제액

Min(,) -

① ×

②

(5) 공제시기

*

(6)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6.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00,12년 기출)

(1) 중간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중간단계에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환수효과} &= \text{ } \times \text{ } \\ \text{누적효과} &= \text{ } - \text{ } \times \text{ } \end{aligned}$$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1) 면세로 인한 환수·누적효과를 완화제도

- ①
- ②
- ③
- ④

2) 간이과세로 인한 누적효과 완화제도

- ①
- ②
- ③
- ④

7. 재고매입세액 (01,23년 기출) ()

(1) 취지

(2) 공제대상

(3) 산식

1) 이전 공급받는 분

구 분	재고매입세액
재 고 품	$\times / \times(-)$
건설중인 자 산	$\times(-)$
매 입 한 상각자산	$\times / \times(- \times) \times(-)$
제 작 한 상각자산	$\times(- \times) \times(-)$

2) 이후 공급받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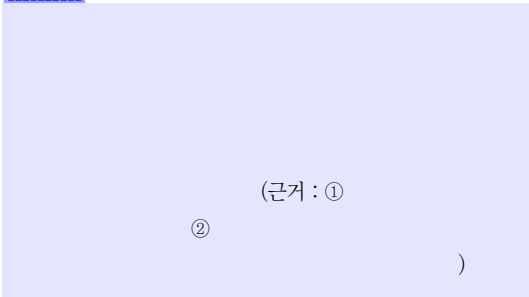
구 분	재고매입세액
재 고 품	$\times / \times(- \% \times /)$
건설중인 자 산	$\times(- \%) \times /)$
매 입 한 상각자산	$\times / \times(- \times) \times(- \% \times /)$
제 작 한 상각자산	$\times(- \times) \times(- \% \times /)$

(4) 신고

(5) 승인통지

(6) 공제

판례



Chapter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SECTION

01 거래징수의 법률관계(법적성격)

- (1) 과세권자와 사업자의 관계
- (2) 거래상대방과 과세권자의 관계
- (3)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관계

판례

훈시규정설



SECTION

02 세금계산서 (82,89,99,06년 기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06년 기출)

(1) 본원적 기능(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간)

- ①
- ②
- ③

(2) 부차적 기능

- ①
- ②

2. T/I 필요적 기재사항

- ①
- ②
- ③
- ④

3. 전자세금계산서 (24년 기출)

(1) 취지

(2) 발급의무자

(3) 발급명세 전송의무

(4) 혜택

- ①
- ②

③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

②

부가

4.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칙

2) 발급시기 특례

- ①
- ②
- ③

5. 수정세금계산서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 ③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 ④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2)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위 (1)의 ①~③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위 (1)의 ①~③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영수증(발급대상자)

(1)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 ②
- ㉠
- ㉡

(2)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세금계산서발급의무의 면제

부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8. 세금계산서 발급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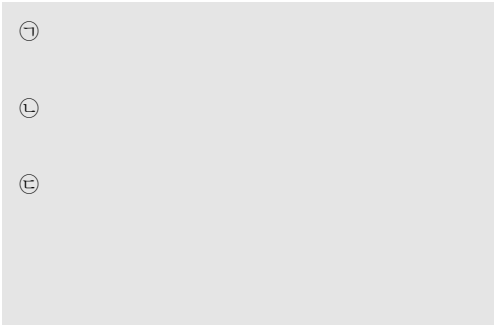
9. 수입세금계산서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①

②



③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위탁판매 (23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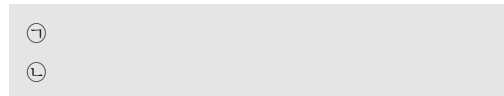
(1) 원칙

(2) 예외(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11.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①

②



12. 세금계산서 문제점 (06년 기출)

(1)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동대사기능의 한계

(2)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문란

Chapter 07

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99.03년 기출)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액 = Min(,)

① () × %

②

2. 전자신고세액공제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세액공제액 = Min(,)

① ×

② 한도 :

세부 부가가치세액의 산정

Chapter 08

경영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1. 공급가액 안분계산 (13년 기출)

(1) 공급가액의 계산

1) 원칙

$$= \quad \times \quad \underline{\hspace{2cm}}$$

2) 특례

$$\text{공급가액} = \quad \times \quad \underline{\hspace{2cm}}$$

(2) 안분계산의 생략(공급가액 전부 = 과표)

- ①
- ②
- ③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87,13,19,24년 기출)

(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19년 기출)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13년 기출)

1) 안분계산의 방법

- ① 원칙적인 방법

$$\text{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text{---} \times \text{---}$$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

② 예외적인 방법 :

- ㉠
 - ㉡
 - ㉢
- (건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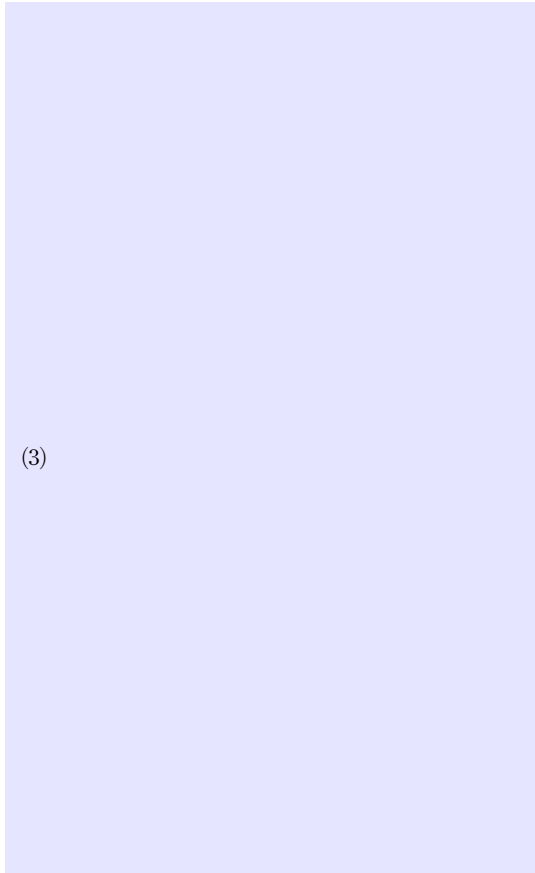
③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경우 :

2)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매입세액 전액 = 공제되는 매입세액)

- ①
- ②
- ③

판례

- (1)
- (2)



부가

(3)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03년 기술)

(1) 개념

(2) 정산방법

$$\times \left(\text{---} \right) -$$

*

4.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01,03년 기출)

(1) 재계산의 요건

- ①
- ②
- ③

(2) 재계산방법

$$\times \left[- \% (\%) \times \right] \times$$

(3) 재계산시기

(4) 재계산의 배제

- ①
- ②

5.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19년 기출)

(1) 취지

(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 ①
- ②

- ③

(3) 전부 전환하는 매입세액공제액

$$\times \left[- \% (\%) \times \right]$$

(4) 과세사업에 일부전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1) 원칙

$$\times \left[- \% (\%) \times \right] \times$$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 ①
- ②
- ③

3)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times \quad -$$

(5) 절차

확정신고시 공제

매입시	보유시	공급시
(1) 사업에 공할 목적 ⇒	(1)	(1)
(2) 사업에 공할 목적 ⇒	(2)	(2)

(3) 사업에 공할 목적 ⇒ ()	(3) ⇒	(3) ⇒
----------------------------------	--------------	--------------

보론 면세전용, 과세전환 및 재계산 비교

(1) 취득목적의 차이

- ① 면세전용 :
- ② 과세전환 :
- ③ 재계산 :

(2) 정산방식의 차이

- ① 면세전용 :
- ② 과세전환, 재계산 :

(3) 적용시기의 차이

- ① 면세전용 :
- ② 과세전환, 재계산 :

(4) 대상재화의 차이

- ① 면세전용 :
- ② 과세전환, 재계산 :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SECTION

01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납부 (02년 기준)

(1) 예정신고

(2)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3) 개인사업자와 영세 법인사업자

1) 예정고지납부

- ①
- ②
- ③

2) 예정신고하는 경우

- ①

②

세부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규정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24년 기출)

(1) 취지

(2) 적용대상자(납부유예 적용요건)

①

②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

㉡ 직전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인 경우 :

③

㉢

㉣

㉤

㉥

(3) 적용방법

1) 재화수입시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예받은 세액의 정산

(4)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절차

1) 적용대상자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요청

①

②

2) 납부유예 적용신청

3)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5) 납부유예 취소

- ①
- ②

$$\text{과세표준} = \quad \times \quad \underline{\hspace{2cm}}$$

세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18년 기출)

4.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 (92.01.09, 18, 23년 기출)

(1) 취지

- ①
- ②

부가

(2) 적용 대상

1) 용역 등의 공급자

- ①
- ②

판례

2) 공급받는 자

(3)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4) 대리납부세액

$$\underline{\hspace{2cm}} \times \%$$

세부 경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18, 23년 기출)

판례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1)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2) 재화의 공급장소 특례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5년 기출)

(1) 취지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특례

1) 국외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2) 국외사업자가 제3자(오픈마켓 사업자 등)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간편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

2) 등록

3) 직권말소

(4) 신고납부의무

1) 신고

2) 납부

(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특례

1) 과세표준 계산

2) 매입세액 계산

(6) 공급시기

(7) 납세지

(8)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

(9)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①

②

세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 ①
- ②
- ③

SECTION

02

결정 및 경정

1. 결정·경정사유

- ①
- ②
- ③
- ④

2. 결정·경정방법

(1) 실지조사방법(원칙)

(2) 추계조사방법(예외)

1) 추계결정·경정 사유

- ①
- ②

2) 추계결정·경정방법

- ①
- ②
- ③
- ④

3. 추계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4. 수시부과

(1) 수시부과 사유

- ①
 - ㉠
 - ㉡
 - ㉢
- ②

부가



(2) 수시부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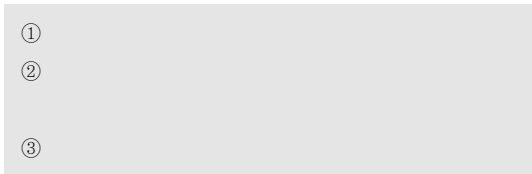
SECTION 03 환급

1. 일반환급

2. 조기환급

(1) 취지

(2) 조기환급의 대상



(3) 조기환급신고 방법

① 예정·확정신고 기간분 :

② 조기환급 기간분 :

(4) 조기환급시기

*

3. 경정시 환급

SECTION 04 가산세

1. 등록 관련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2)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



(3) 타인명의(허위)등록가산세

1) 가산세액

× %

2) 타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① 지연발급(동일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 내 발급) :

× %

② 미발급

: × %

다만,

㉠

㉡

③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 × %

④ 전자T/I발급명세지연전송분(

): × %

⑤ 전자T/I발급명세미전송분(

): × %

⑥ 가공세금계산서(T/I) 발급 및 분 :

× %

㉠

㉡

⑦ 위장세금계산서(T/I) 발급 및 분 : × %

㉠

㉡

⑧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및

: × 2%

⑨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 %

(21년 기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 × %

② 지연제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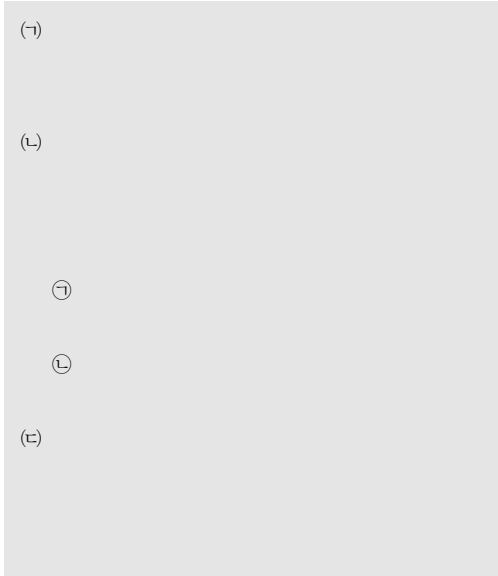
× %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경정시 공제 :

부가

② 지연 수령 및 사전발급 :



③ 과다기재 :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불성실가산세

- ① 경정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 %
- ②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 %

4.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

5.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 배제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 ② (%), ③ (%), ④ (%) <p>(%)이 적용되는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판례

(1)

(2) ①

②

③

(3)

Chapter 10

간이과세 (80,91,96,00,04년 기출)

취지

SECTION

01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자 (99,00,25년 기출)

부가

(1) 간이과세자의 범위

①

②

③

④

(2) 간이과세 배제사업

①

②

③

④

⑤

*

SECTION 02

과세유형의 변경 (00년 기출)

1.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1)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 공급대가 합계액의 증감에 따른 적용기간

① 계속사업자의 경우

② 신규사업자의 경우

(2) 결정·경정으로 인한 과세유형 변경

(3)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을 경영하게 된 경우

(4) 일반과세적용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과세 유형 전환

① 기존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인 경우 :

②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

③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

SECTION 0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납부세액계산

$$\text{납부세액} = (\quad) \times \quad \times \%(\%)$$

2. 재고납부세액 (01년 기준) (\Rightarrow)

(1) 의의

(2)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3) 산식

구 분	재고납부세액
재 고 품	$\times / \times(- \% \times /)$
건설중인 자산	$\times(- \% \times /)$
매 입 한 상각자산	$\times / \times(- \times) \times(- \% \times /)$
제 작 한 상각자산	$\times(- \times) \times(- \% \times /)$

(4) 신고

(5) 승인통지

(6) 납부

구 분	재고매입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
전환유형	\Rightarrow	\Rightarrow
산식	/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승인통지		
공제·납부시기		

부가

3. 공제세액

(1)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text{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quad \times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times \text{-----} \times \%$$

(2) 전자신고 세액공제

-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 × % (또는 %)
- ③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 %
- ④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 %
- 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 × %
- ⑥ 세금계산서 : × %
- ⑦ 세금계산서 : × %
- ⑧ 공급가액 : × %

(3)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 × %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 %
-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 × %
-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 %

4. 납세의무면제(25년 기출)

- ① :
- ②
- ③

SECTION 05 간이과세의 포기(02년 기출)

1. 간이과세의 포기신고(승인 ×)

- ①
- ②

부가

2. 간이과세의 적용제한 및 재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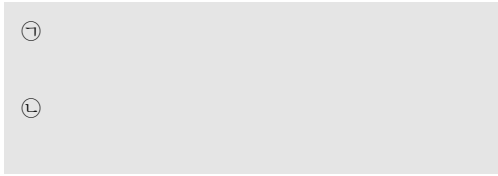
(1) 재적용의 제한

- ①
- ②

(2) 재적용신고

3. 간이과세 포기 철회

- ①



②

SECTION 06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91.00년 기출)

- ①
- ②
- ③

구분	면세포기	간이과세포기
적용 대상	면세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① ②	
포기 신고	()	(신규사업개시자 :)
승인 여부		
재적용 제한		
재적용 신고		

PART VI

개별소비세법

- Chapter 01 총설
-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 Chapter 04 납세의무자
- Chapter 05 과세시기(성립시기)
- Chapter 06 과세표준
- Chapter 07 미납세반출
-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 Chapter 09 면세
- Chapter 10 보칙

Chapter 01

총설

1.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97년 기출)

(1) 간접소비세

(2)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3) 물세

(4) 총괄 납부

(5) 간주공급과 반출의제

(6) 영세율과 면세

(7)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
· 납부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2. 차이점(부가가치세 vs 개별소비세) (06년 기출)

(1)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

(2) 과세물품의 규정방식

(3) 세율구조의 차이

(4) 다단계과세와 단단계과세

(5) 과세표준의 차이

개소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SECTION

0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1. 과세물품

(1) 물품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물품

_____ , _____ : %

(2) 기준가격 초과 과세물품

_____ (11년 기준), _____ [_____ (23년 기준), _____ (20년 기준), _____ (15년 기준)]

: _____ 의 %

(3) 자동차

_____ : %

세부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②

③

④

(4) 유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담배 (18년 기준)

①

②

③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개비당 원
	제2종	그램당 원
	제3종	그램당 원
	제4종	그램당 원
	제5종	_____ 밀리리터당 원
		① 썬련형 : 개비당 원 ② 기타유형 : 그램당 원
제6종	그램당 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그램당 원
냄새 맡는 담배		그램당 원

2.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

①
②
③
④
⑤

(21년 기출)

3.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 (21년 기출)

의 %
* 과세유흥장소 :

판례

4.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

연간매출액	세 율
이하	× %
초과 이하	(-) × %
초과	+ (-) × %

SECTION 02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1. 탄력세율(25년 기출)

(1) 의미 및 적용대상

$$\pm \quad \times \quad \%($$

$$\%) :$$

개소

①

(-)

㉠
㉡

(-)
③

④

(-)

(-)
(-)

㉠
㉡

(-)
⑤
⑥

(2) 탄력세율의 적용한도

2. 잠정세율(25년 기출)

- ①
- ②
- ③

3. 세율적용순서

> >

SECTION 03 비과세 (06년 기출)

- ①
- ②
- ③
- ④

SECTION 04 과세기준가격

1) 보석 및 귀금속제품, 고급모피와 그 제품 (11,15년 기출)

개당 만원

2) 고급시계 (23년 기출), 고급가방 (20년 기출)

개당 만원

3) 고급용단

개당 Max(× 만원/m², 만원)

4) 고급가구

조당 만원 또는 개당 만원

* “조”란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83,00년 기출)

1. 과세물품의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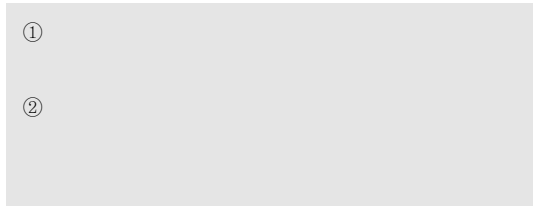
(1) 일반적인 기준(실질에 따른 판정)

(2) 구체적 판정기준

1) 동일한 과세물품이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기출)



2) 완제품의 의제



3)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판정기준 (20년 기출)



4)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2. 과세유통장소(과세영업장소)의 판정

개소

Chapter 04

납세의무자 (05,09년 기출)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1) 과세물품의 경우

- ①
- ②
- ③

(2)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우

2. 납세의무자의 확장(의제)

- ①
- ②
- ③
- ④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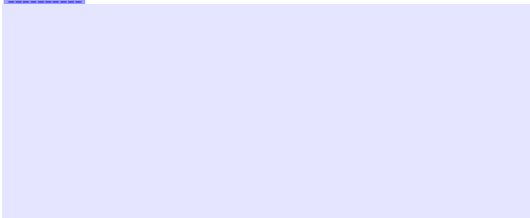
*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①

②

(15,20년 기출)

* “제조”란

판례



Chapter 05

과세시기(성립시기)

1. 과세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 (09년 기출)

- ①
- ②
- ③
- ④
- ⑤

* “반출”이란

2. 제조로 보는 경우(제조의제) (02년 기출)

(1) 의의

(2) 제조로 보는 경우

1)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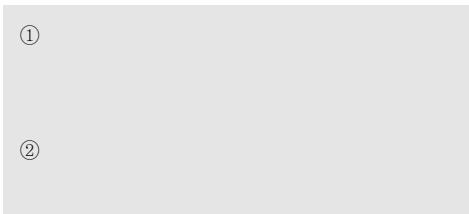
- ①
- ②
- ③

2)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행위

1)

세부

(1)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 :



(2) 로 보는 경우()

① “장식”이란

<예>

② “조립”이란

1)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예>

판례



개소

3. 반출의제 (02,07,09년 기출)

(1) 의의

(2) 반출로 보는 경우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 ①
- ②
- ③

핵심

2)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핵심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핵심

구분	부가가치세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	개별소비세 (반출의제)
의제 여부	⇒	① ⇒ ② ⇒ ㉠

		㉠
과세 표준		
신고 납부		
차이점		

[반출의제와 간주공급의 비교]

반출의제	간주공급
	원칙 : (,) :

* 「부가가치세법」상

[반출의제 기타 규정]

구분	과세표준	신고납부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사업폐지의 경우		

4. 과세유형음식행위(과세영업행위)의 의제

Chapter 06

과세표준 (10년 기준)

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1) 원칙적인 과세표준

① 제조장 과세물품 :

$$\text{과세표준} = \text{제조장 판매액} \times (1 - \text{과세율})$$

개소

②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

*

③ 위 ② 이외의 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

(2)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10년 기준)

① 외상·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

② 원재료 또는 자금공급조건으로 저가반출하거나 저가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

③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

④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가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

344 Core 세법학

- ⑤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
- ⑥ 제조장에서 무상반출하는 경우 :
- ⑦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
- ⑧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물품의 경우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4년 기출)

㉠

㉡

㉢

*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

2) 기준판매비율 :

㉤

⑩ 수탁가공*한 물품(보석·귀금속제품 제외)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15, 20, 23년 기출)

*

㉥

㉦

㉧

(3)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1)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

$$\begin{matrix} \text{판매가격} \\ \text{상당액} \end{matrix} = \text{—————} \times$$

2) 원재료의 전부·일부를 제공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

①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② 보석 등과 귀금속제품 또는 캠핑용자동차 (24년 기출)

(ㄱ) 보석 등과 금귀속 제품 또는 캠핑용자동차():

- ㉠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
- ㉡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경우 :

(ㄴ) 캠핑용자동차():

- ㉠
- ㉡
- ㉢

3)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5)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1) 원칙 (20년 기출)

2) 예외

① 제외되는 경우와 신청절차

- ㉠ 반환조건부로 반출하는 경우
- ㉡ 수입의 경우

개소

② 개별소비세 징수

2. 과세장소의 과세표준 (21년 기출)

× _____

3. 과세유통장소의 과세표준 (03,21년 기출)

(1) 원칙

①

②

③

(2) 예외

1)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 발급의 경우

- ① 무상 :
- ② 외상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 :

판례

4.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text{총매출액} = \quad -$$

Chapter 07

미납세반출 (80,01,05,06,15,17,23년 기출)

I. 의의

1. 개념

2. 취지

①

②

II. 미납세반출의 대상

1. 수출할 물품 (23년 기출)

①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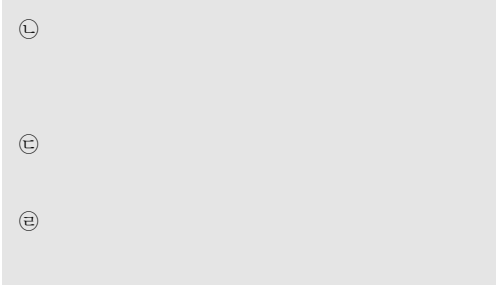
㉡

2.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①

과 관련되는 다음의 것 (17,20년 기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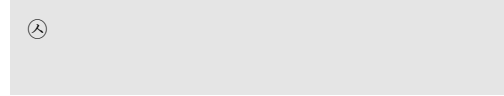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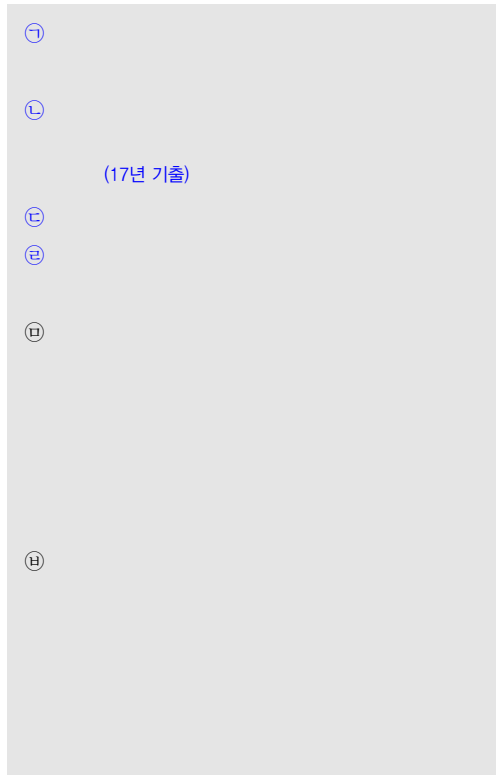
②

(15,20년 기출)

③

④

⑤



Ⅲ. 미납세반출의 절차 (15,17년 기출)

1. 원칙적인 절차(사전승인제도)

(1)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개소

②

(2) 반입신고와 확인

①

②

(3) 반입증명

2. 미납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사후승인제도)

Ⅳ. 사후관리

1. 용도 미증명시 개별소비세의 징수

2. 멸실승인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1. 신고기한

(1) 과세물품의 경우

(2) 수입물품의 경우

①

②

(3) 과세장소의 경우

(4)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5) 과세영업장소의 경우

(6) 공매, 경매, 파산, 제조 폐지, 폐업의 경우

- ①
- ②
- ③

2. 세액의 납부

(1) 법정납부기한

(2) 납세담보 (14년 기출)

1) 담보제공 사유 및 한도

- 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 ②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의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공요구

3) 납세담보의 처분

3. 총괄 납부 (99.04년 기출)

(1) 의의

(2) 총괄 납부대상자

- ①
- ②
- ㄱ
- ㄴ
- ③
- ④

개소

(3) 신청 및 승인

1) 신청

2) 승인

- ①
- ②
- ③
- ④

(4) 승인철회 및 포기

1) 승인철회

2) 포기

구 분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취지		
총괄 사업장	법인 : 개인 :	
총괄 납부의 사유		
신청		
승인		
적용 제외		
포기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

(2) 사업자단위 신고

1) 사업자단위로 개업신고

구 분	개업신고

2) 사업자단위로 변경신고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기(사업장단위로 신고 변경)

구 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개별소비세)
취지		
대상자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장		
적용절차	① 신규사업자 :	① 신규사업자 :
	② 계속사업자 :	② 계속사업자 :
효력		
포기		

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1) 신고납부특례

취지

(2) 절차

1) 신고절차

2) 통지의무

6.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 특례 내용

- ①
- ②
- ③

(2) 혼유 등의 범위

- ①
- ②

(3) 절차

1) 신고절차

2) 통지의무

7. 과세표준의 결정 등

(1) 결정 및 경정결정

(2) 수시부과

개소

Chapter 09

면세

SECTION

01

수출 및 군납면세 (12,19,23년 기출)

1. 취지

2. 수출 및 군납면세의 대상

- (1) 수출하는 것
-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3. 면세승인절차

(1) 일반적인 경우의 면세승인절차(사전승인제도)

- ① 면세신청

② 면세승인

③ 용도증명

(2)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사후승인제도)

4.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의 징수

①

②

:

(2) 멸실면세

해석 수출의 범위()

①

②

SECTION
02 외교관면세

1. 취지

2. 대상

- ①
- ②
- ③

3. 면세절차

(1) 일반적인 절차

① 면세신청

② 면세승인

(2)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① 석유류 판매시 사전면세

② 통보

③ 면세보고

계 보고

④ 환급

4.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 징수

1) 개별소비세 징수

개소

2) 개별소비세 징수면제 (19년 기출)

- ①
- ②

(2) 멸실면세

5. 상호주의

해석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집행기준 16-0-2)

SECTION 03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1. 취지

2.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3. 절차

(1) 원칙적인 절차

① 면세신청

② 면세승인

③ 반입증명

(2) 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사후승인제도)

4. 면세판매신고서 제출

5.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 징수

- ①
- ②
- ③
- ④

(2) 멸실면세

보론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2)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①
②
③
④

보론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13년 기출)

(1)

(2)

(3)

(4)

(5)



개소

SECTION 04 조건부면세 (08,16,22년 기출)

1. 의의

2. 조건부면세의 대상(승용자동차)

①

②

③

(08년 기출)

㉠
㉡
㉢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3. 절차

(1) 원칙적인 절차

① 면세신청

② 면세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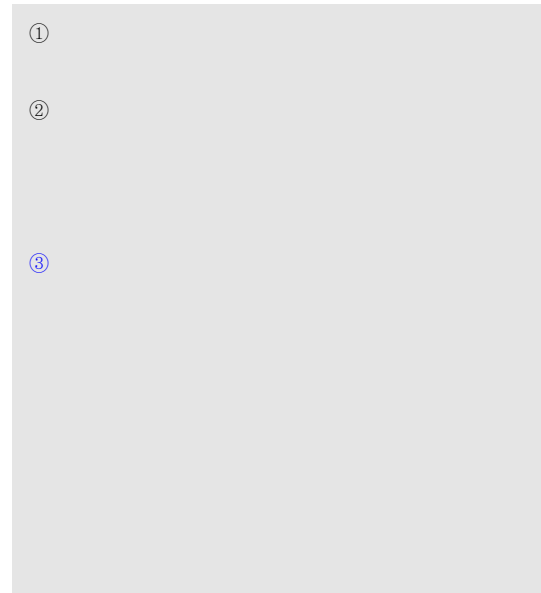
③ 반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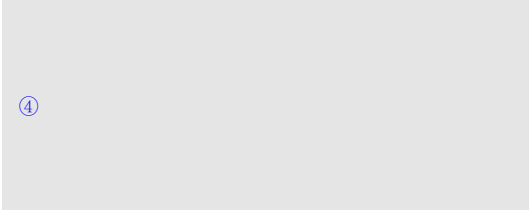
④ 반입증명

(2) 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사후승인제도)

4.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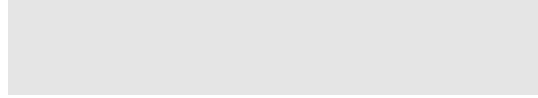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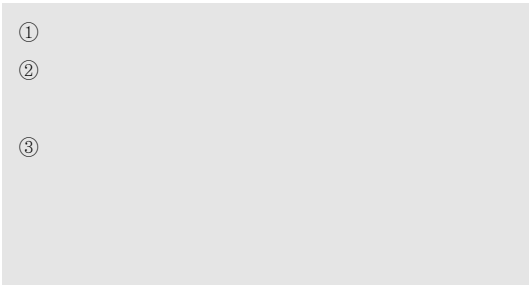
(2) 멸실면세

보통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16년 기출)

(1)

(2)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1) 서류제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 통보

개소

4) 행정정보 확인

(3)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②

(ㄱ)

(ㄴ)

:

㉠

㉡

㉢

㉣

2)

세부

판례

(22년 기출)

SECTION 05 무조건면세

1. 의의

2. 무조건면세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⑪

⑫

⑬

(17,20년 기출)

⑭

⑮

⑯

3. 면세절차

① 면세신청

② 면세승인

4. 사후관리 :

SECTION

06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 ·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13년 기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개소

SECTION

07

입장행위의 면세

1. 취지

2. 면세대상

①

(21년 기출)

②

③

※

SECTION 08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03년 기출)

1. 취지

2. 면세대상

보론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면세제도와 비교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와 차이점

구 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	개별소비세법상 면세제도
취지		
면제정도		
대상		

사후관리		
------	--	--

(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유사점

구 분	유 사 점
취지	
대상	
면제정도	

※ 개별소비세법의 면세는

SECTION 09 세액의 공제와 환급 (05년 기출)

1. 세액의 공제

(1) 의의

*

①

②

③

* '단용원자재'의 사전적 의미는

(2) 사유

①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

㉡

②

㉠

㉡

㉢

③

(3) 공제의 방법

(4) 공제의 배제

2. 세액의 환급 (14년 기출)

(1) 취지

개소

(2) 사유

①

②

③

(3) 세액의 환급방법

세부

3. 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1) 용도변경 등의 경우

(2) 가산세

4. 공제 또는 환급세액의 추정

☞ 판례

(1)

(2)

(3)

SECTION 1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환급특례 (23년 기출)

1.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1) 가정용부탄 환급세액

$$\times (\quad - \quad)$$

세부

①

②

③

2)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times (\quad - \quad)$$

2. 신청

3.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 징수

① 공급자 :

$$+ \quad \times \% (\quad \%)$$

② 공급받은 사업자 :

$$+ \quad \times \% (\quad \%)$$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개소

-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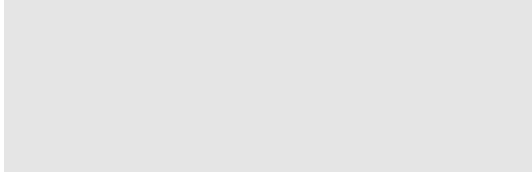
SECTION 11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1. 미납세반출 (18년 기출)

(1) 대상

- ①
- ㉠
- ㉡
- ②
- ③



(2) 미납세 반출 절차 및 추징(사후관리)



2. 면제

(1) 면세 사유

- ①
- ②
- ㉠
- ㉡
- ㉢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2) 면세절차 및 추징(사후관리)

1) 수출의 경우

2) 위 1) 외의 경우

3. 세액의 공제 및 환급

(1) 공제 및 환급사유

- ①
- ②
- ③
- ④

(2) 절차 및 추징(사후관리)

Chapter 10

보칙

1. 개업신고

2. 휴업신고

3. 폐업신고

4.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11년 기출)

(1) 사업승계의 신고

(2) 사업폐지 배제 (20년 기출)

(3) 권리·업무 승계의 범위

①

②

③

④

해석

1.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집행 기준 22-0-2, 22-0-3)

(1)

①

②

③

④

(2)

①

②

2. 사업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 폐업 의제(집행기준 21-0-3)

개소

5. 장부기록의 의무

①

②

6.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

②

③

7. 과태료

①

②

PART VII

지방세법

-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 Chapter 02 취득세
- Chapter 03 등록면허세
- Chapter 04 재산세
- Chapter 05 지방세특례제한법

TAXATION LAW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SECTION

01

지방세기본법 주요 사항

1. 정의

(1) 표준세율

(2) 일정세율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 ① 취득세 :
-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③ 재산세 :

(2) 납세의무의 확정

1) 취득세·등록면허세

- ①
- ②

2) 재산세

3. 납부의무의 소멸

(1) 부과 제척기간

1) 원칙적인 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①	년
②	년
㉠	년
㉡	
㉢	
③	년

지방

2) 특례제척기간

- ①
- ②
- ③

3) 명의대여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①

②

(2) 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②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2) 후발적 경정청구

3) 기한후신고

5. 가산세

1) 신고 관련 가산세

구 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times \%$
과소 신고 가산세	$\times \%$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text{가산세액} = +$ $\textcircled{1} \times \%$ $\textcircled{2} (\quad - \quad) \times \%$

2) 납부지연가산세

$$\begin{aligned} \text{납부지연가산세} &= + + + \\ \text{①} & \quad \quad \quad \times \quad \quad \quad \times \quad \% \\ \text{②} & \quad \quad \quad \times \quad \quad \quad \times \quad \% \\ \text{③} & \quad \quad \quad \quad \quad \quad \quad \times \% \\ \text{④} & \quad \quad \quad \quad \quad \quad \quad \times \% \end{aligned}$$

② 행정소송 제기기간

(3)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①
 - ㉠ 개인인 경우 :
 - ㉡ 법인인 경우 :
- ②
- ③
- ④

지방

6. 권리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불복청구제도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전치주의

Chapter 02

취득세

SECTION

01 통칙

1. 취득세의 과세권자

2. 취득세의 과세대상

(1) 취득물건의 범위

- 1) 부동산
-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 3) 각종 권리

(2) 취득의 범위

1) 본래의 취득 (18년 기출)

- ① 유상승계취득 :
- ㉠ 무상승계취득 :
- ② 원시취득()

2) 간주취득

- ①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 ②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 ③ 건축물의 개수
- ④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판례

3. 납세의무자

(1) 부동산 등의 취득(사실상의 취득자)

(2) 주체구조부 취득자

(3) 시설대여업자

(4) 수입자

(5) 각 상속인

(6)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21년 기출)

(7)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8) 선박·차량 등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0)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증여 의제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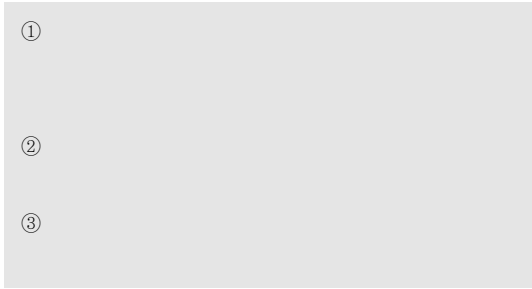
㉢

㉣

(11) 부담부증여의 납세의무

(12)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시

지방



(1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1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세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 등

보론 부동산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1) 개념 :

(2) 법률관계 :

(3) 취득세 납세의무

1) 명의신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2.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23년 기출)

(1) 개념 :

(2) 법률관계 :

(3) 취득세 납세의무

1)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2)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경우

4)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회복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5)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3. 계약명의신탁 (23년 기출)

(1) 개념 :

(2) 법률관계 :

(3) 취득세 납세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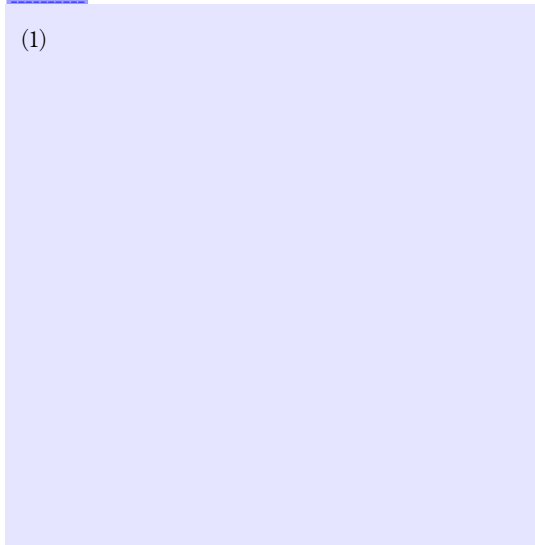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지방

판례

(1)



(10)

(근거 : ①

②

)

(11)

(12)

(13)

(14)

(15)

(16)

(17)

(18)

SECTION
02

취득세의 과세표준 (03,11,18년 기출)

1. 과세표준의 기준

세부 과세표준 현황부과의 원칙(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원칙 : 시가인정액

1) 시가인정액의 범위

- ①
- ②
- ③

2)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세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 등

세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 등

(2) 예외 : 시가표준액 등

①

②

③

①

②

③

㉠

㉡

㉢

㉣

㉤

지방

(3) 부담부 증여의 경우(11년 기출)

세부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사실상 취득가격

①

②

③

④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①
- ②
- ③
- ④
- 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원칙 : 사실상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5.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④

⑤

⑥

$$\text{가액} = \times [- (\times /)]$$

A :

B :

C :

D :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
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

①

㉠ 대물변제 :

㉡ 교환 :

㉢ 양도담보 :

②

③

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등의 종류 변경

① 사실상 취득가격

㉠

㉡

②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

(2)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

$$\text{과세 표준액} = \quad \times \text{—————}$$

【세부】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

①

②

㉠ 주택 부분

$$\quad \quad \quad +$$

$$\times \text{—————}$$

㉡ 주택 외 부분

$$\quad \quad \quad +$$

$$\times \text{—————}$$

③

㉠ 주택 부분

$$\times \text{—————}$$

㉡ 주택 외 부분

$$\times \text{—————}$$

판례

(1)

(2)

(3)

(4)

SECTION 03 세율

1. 표준세율(일반세율)

(1) 부동산 취득 세율 (03.17.24년 기출)

구 분	세 율
상속	%()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원시취득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

*1 상속에 포함되는 것 :

*2

*3

(17년 기출)

*4 또는 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판례

(2) 유상취득분 주택의 세율적용

구 분	세 율
취득당시가액이 이하	%
취득당시가액이 초과하고 이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 — —) × —
취득당시가액이 초과	%

*1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2

판례

(1)

(2)

(3) 차량

구 분	세 율
①	%()

지방

②		%
③	비영업용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로 함)
	영업용	%
④		%

(4) 그 밖의 자산

구 분		세 율
기계장비		(%) %
항공기	항공기	%
	항공기	(%) %
입 목		%
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2. 종과세율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종과세

() + % × (취지 :

)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요건
 ①
 + ②
 + ③

2)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24년 기출)

①

②

판례



(2)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

(취지 :

)

() × - % ×

*

1)

2) 대도시(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4년 기출)

3) 중과세의 적용대상 제외

- ①
- ②
- ③

휴면법인의 범위

:

휴면법인의 인수

:

판례



(3) 사치성재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의 취득

$$(\quad) + \% \times (\text{취지} : \quad)$$

1) 골프장

(14년 기출)

*

2) 고급주택

3) 고급오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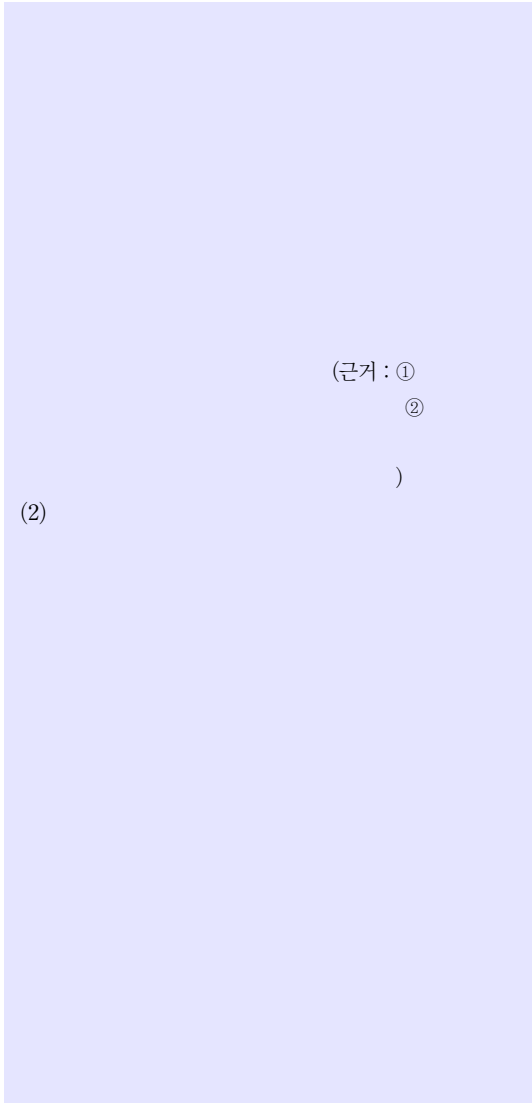
4) 고급선박

판례

(1)



지방



(2)

(근거: ①
②
)

(4) 종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quad) \times$$

2)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과 사치성 재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quad) \times + \% \times$$

*

(5)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종과

1) 법인 및 다주택자 주택 취득에 대한 종과세율

:

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text{종과세율} = \% + \% \times =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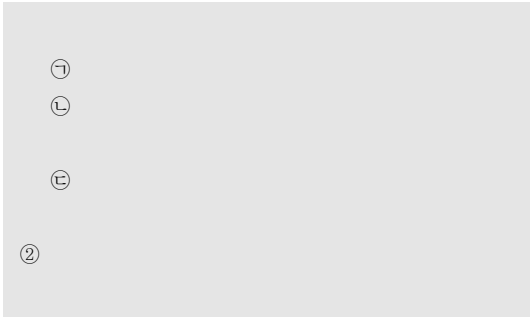
$$\text{종과세율} = \% + \% \times = \%$$

③

$$\text{종과세율} = \% + \% \times = \%$$

2) 무상취득에 대한 종과세율

①



$$\text{중과세율} = \% + \% \time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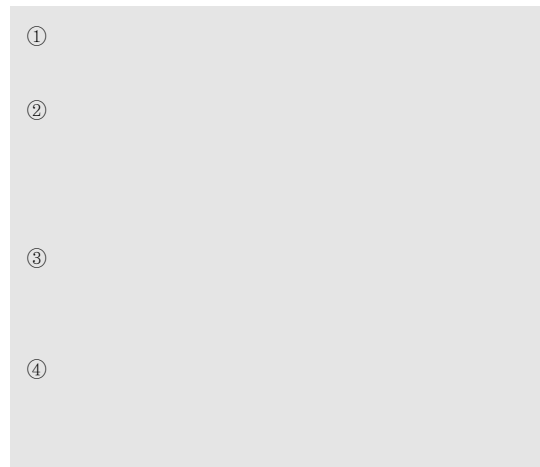
3)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또는 4주택 이상
조 정 대상지역	%~ %	%	%	%
비 조 정 대상지역	%~ %	%~ %	%	%

세부 일시적 2주택

세부 세대의 기준

4) 주택 수의 판단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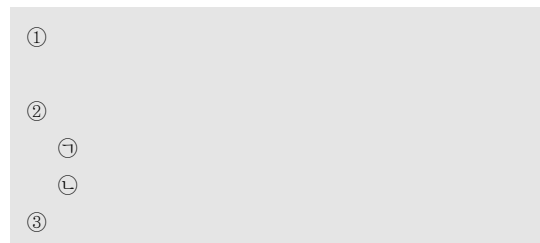


지방

3. 세율의 특례

(1)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 () - %(

)



- ④
- ⑤
- ⑥
- ⑦

판례

(근거 :
)

(2) 간주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 특례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4. 세율 적용

(1) 취득 후 5년 이내에 종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취득 후 5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안 재산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종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취득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치성 재산의 증축의 경우

×

(3)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신·증설한 자가 다른 경우

(4) 종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

- ①

②

2)

①
②

SECTION 04 면세점

①

②

SECTION 05 비과세 (01,06,10년 기출)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②

㉠
㉡

2. 신탁(신탁등기 병행)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①
②
③

* 단,

3. 법률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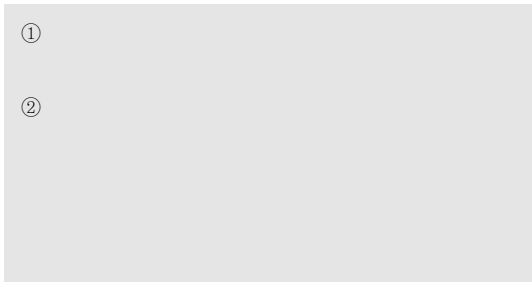
4. 임시건축물의 취득

판례



5. 공동주택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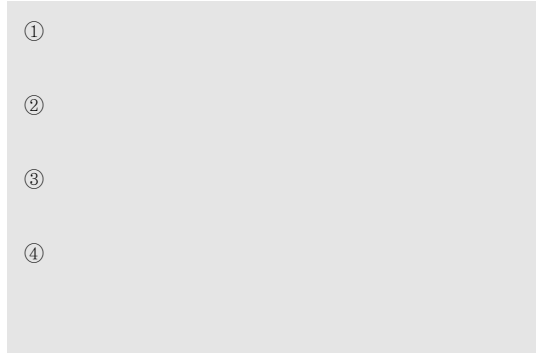
6.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SECTION 06 취득시기 (98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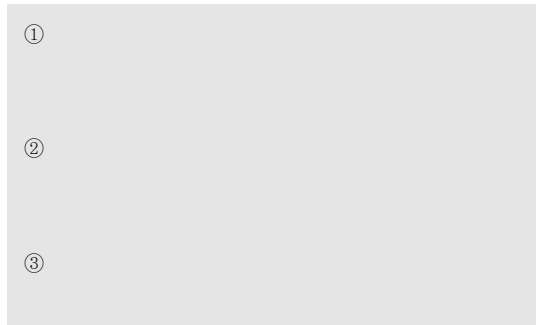
1. 승계취득의 경우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07년 기출)



핵심

(2) 무상승계취득 (11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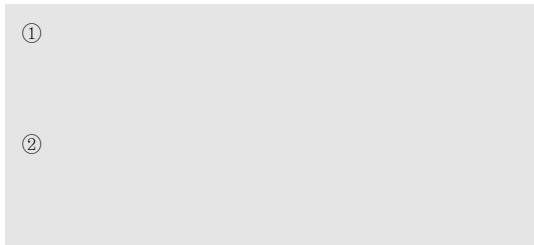
판례





(3) 그 밖의 승계취득 및 원시취득

1)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제조·조립·건조



2) 수입

3) 연부(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

4)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 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6)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7) 토지의 경우

8) 민법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

(4)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유상·무상승계취득 및 연부취득의 경우) (20년 기출)

핵심 대물변제

(=)

지방

2. 간주취득

(1)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2) 토지의 지목변경

(3)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판례

(1)



(2)

(3)

(4)

(5)

(6)

(7)

(8)

보론 계약 무효(취소)시 취득세 납세의무

(1) 매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

(2) 원소유자에게 환원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례

(1)

(2)

(3)

(4)

SECTION
07 납세절차

1. 징수방법

2. 신고납부 (03,05,17년 기출)

(1)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①

②

③

④

(2) 취득 후 종과세대상이 된 경우

* 종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은

납부세액 = _____

(3) 비과세 등을 받은 후에 부과대상이 된 경우

지방

(4)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5)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3. 보통징수 및 가산세

(1) 보통징수와 가산세

*

(2) 증가산세

①

$$\text{징수세액} = \quad + \quad \times \quad \%(\quad)$$

② 증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

4. 장부 작성과 보존

(1) 법인의 장부 작성 및 보존의무

(2) 작성 및 보존의무 이행 ×

$$\text{가산세} = \quad \cdot \quad \times \quad \%$$

SECTION

0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08,15,16년 기출)

1. 의의

2. 간주취득의 요건

(1)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

세부 과점주주의 범위

①

②

③

(ㄱ) 본인이 개인인 경우 :

(ㄴ) 본인이 법인인 경우

㉠

㉡

*

㉢ 영리법인인 경우 :

㉔ 비영리법인인 경우 :

(2) 주식의 취득

- ①
②

(3) 간주취득의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16년 기준)

(4) 과세표준

과세표준 = _____ × _____

(5) 세율

%*

*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1) 법인설립 당시 주식 취득

(2)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3)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4) 비과점주주(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방

판례

(1)

(2) ①

②

(3)

(4) 연대납세의무 :

(5) 이중과세 해당 여부 :

(6)

(7)

(8)

(9)

(10)



Chapter 03

등록면허세

SECTION

01 통칙

1. 등록의 정의

- ①
- ②
- ③
- ④

판례

- (1)
- (근거 :
-)
- (2)

- (3)
- (4)

지방

2. 납세의무자

3.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99년 기출)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형식적인 등록에 대한 비과세

- ①
- ②

③

SECTION
02 **등록면허세**

1. 과세표준(25년 기준)

(1) 과세표준의 산정

1) 원칙(등록 당시의 가액)

2) 예외

①

②

(2)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2. 세율

(1) 일반적인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1) 법인등기

① 설립

$$\cdot \times \%(\quad \%)$$

②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times \%(\quad \%)$$

③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원

④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원

⑤ 그 밖의 등기

건당 원

*

2) 차량의 등록

구 분		세 율
소유 권의 등록		%, %
		%, %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①	건당 원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②	건당	원
	③	건당	원
그 밖의 등록		건당	원

* 제7조 제10항 :

3) 기계장비 등록 (25년 기출)

구 분	세 율		
소유권의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 대여업체의 등록	①	건당	원
	②	건당	원
	③	건당	원
그 밖의 등록		건당	원

(2) 중과세 (13년 기출)

1) 중과세의 적용(3배 중과)

2) 중과세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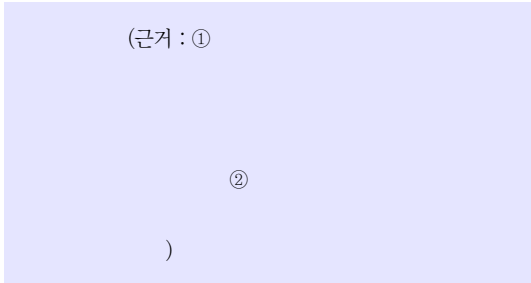
지방

- ①
- ②
- ③
- ④
- ⑤

판례

(1)

(2)



3. 신고납부 (05년 기출)

(1) 일반적인 신고납부

(2) 등록 후 종과세대상이 된 경우

() - ()

(3) 비과세 등을 받은 후에 부과대상이 된 경우

(4) 신고 및 납부 특례

(5)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4. 보통징수 및 가산세

Chapter 04

재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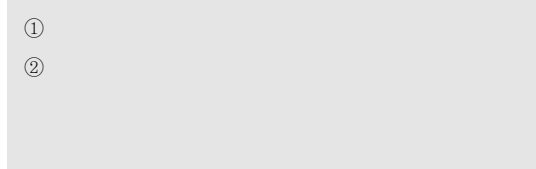
SECTION

01 통칙

1. 과세권자

2. 납세의무자 (02,12,21년 기출)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2) 예외적인 또는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

2) 주된 상속자



:

3) 공부상의 소유자

4) 그 매수계약자

취지

5) 위탁자

6) 사업시행자

7) 수입하는 자

8) 파산재단의 경우

(3)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례

(1)

(2)

(3)

지방

3. 재산세의 과세대상 (22년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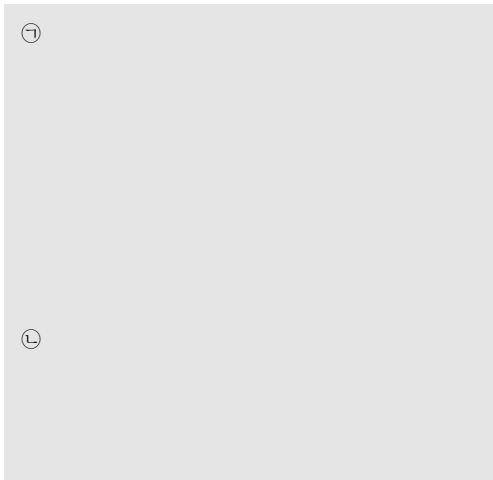
(1) 토지

1) 분리과세대상

①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② 0.2% 저율분리과세대상

(가) 공장용지



(나)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

(22년 기준)

③ 4% 고율분리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① 일정한 건축물¹⁾의 부속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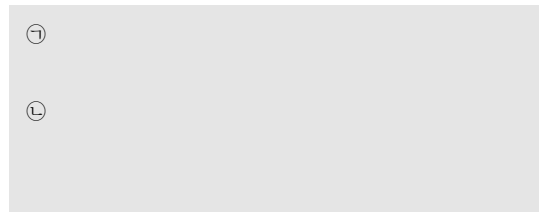
1)

$$\text{㉞ 건축물의 부속토지} = \quad \times \quad (\sim \text{배})$$

②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

③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2) 건축물

(3) 주택

1) 주택

2) 겸용주택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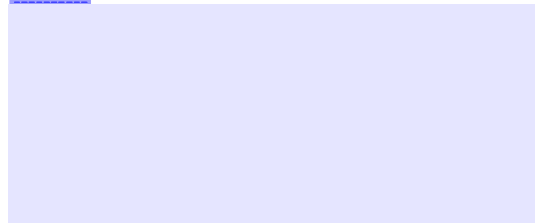
③ 무허가 이용 토지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

(5)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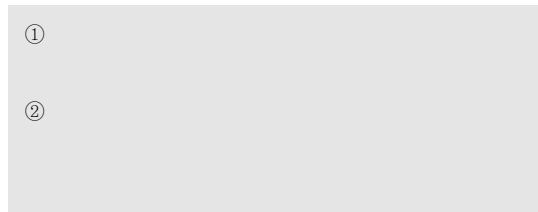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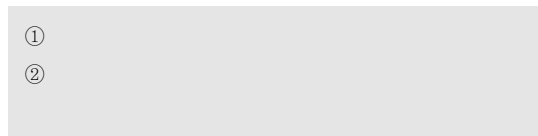
SECTION 02 비과세

1. 국가 등에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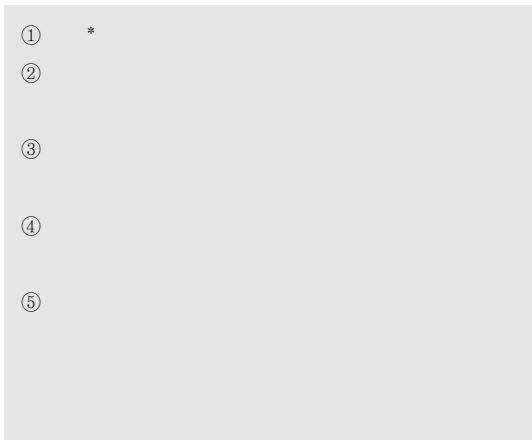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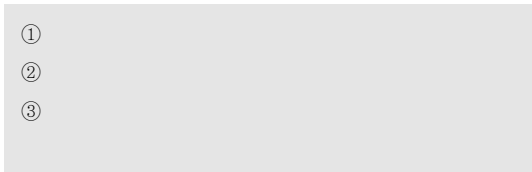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비과세대상 재산



* 도로 :

(2) 비과세대상 제외



판례

(1)

(2)

SECTION

03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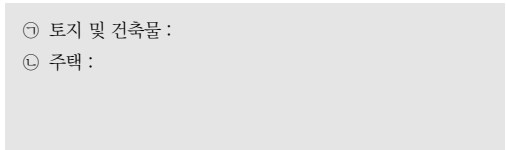
1. 재산세의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및 건축물 : %, 주택 :

$$\text{과세 표준} = \text{시가표준액} \times \begin{matrix} * \text{ 토지 및 건축물 : } \% , \\ \text{주택 : } \% \end{matrix}$$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
- ㉢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

$$\text{과세표준상한액} = \text{시가표준액} + \left[\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과세표준상한율} \right]$$

* 과세표준상한율 =

(2) 항공기·선박

시가표준액

2. 세율

(1) 표준세율

1) 토지(97년 기출)

① 분리과세대상

- ㉠
- ㉡
-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이하	%
초과 이하	+ %
초과	+ %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이하	%
초과 이하	+ %
초과	+ %

지방

2) 건축물

- ①
- ②
- ③

3) 주택(건축물과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 율
이하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초과	+ %

4) 선박

- ①
- ②

5) 항공기 :

(2) 과밀억제권역 내 신·증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24년 기출)

: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과세표준	세 율
이하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초과	+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text{재산세액} = \text{ } \times \text{ } + \text{ } \times \text{ } \%$$

5. 세율적용

(1)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2) 분리과세대상

(2) 주택

SECTION 04 부과·징수

1. 과세기준일

2. 납기 (05년 기출)

(1) 토지 : ~

(2) 건축물·선박·항공기 : ~

(3) 주택

1) 산출세액의 1/2 : ~

2) 산출세액의 1/2 : ~

단, ~

3. 징수방법

()

[법률 제19230호 부칙 15조 :

]

구 분	세부담의 상한
주택*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인 주택	× %
주택*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인 주택	× %
주택*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하는 주택	× %

* 주택 :

SECTION

05

물납과 분납(00년 기출) 및 납부유예

1. 물납

(1) 물납의 요건

- 1) 납부세액 :
- 2) 물납대상 지방세 :
- 3) 물납대상재산

4) 물납의 신청과 허가

- ① 신청 :
- ② 허가 여부 통지 :

(2)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①
- ②

2. 분할납부

(1) 분할납부의 요건

- 1) 납부세액 :
- 2) 분할납부대상 지방세 :

(2) 분납세액

- 1)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
- 2)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납부유예

(1) 납부유예의 요건 및 신청

①
②
③
㉠
㉡
④
⑤

(2) 납부유예 허가 여부 통지

(3)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①
②
③
④
⑤

⑥

(4) 납부유예 허가 취소시 통지의무

(5) 납부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6) 납부지연가산세 배제

지방

※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증가내용

1. 취득세 : () + % ×

2. 재산세

(1) : %, : %

(2) : %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증가 내용

1. 취득세

(1) : () + % ×

(2) : () × - % ×

(3) : ×

2. 재산세

Chapter 05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ㄱ)

ㄱ

ㄴ

ㄷ

ㄴ

(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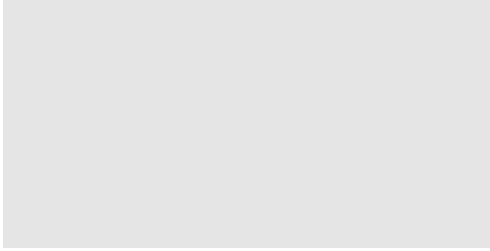
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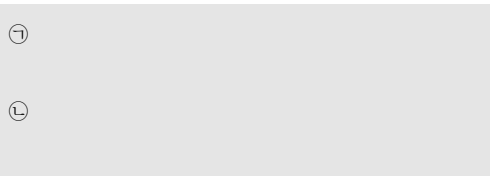


②



(3)

지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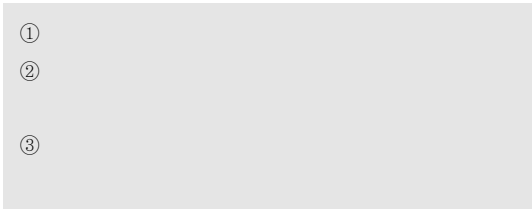
⊕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4. 학교·종교 및 향교에 대한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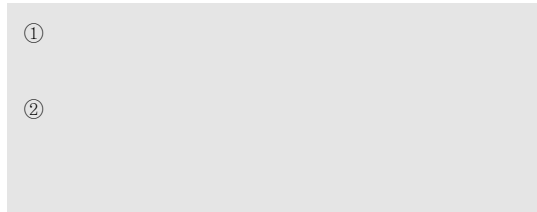
(1)



①

②

③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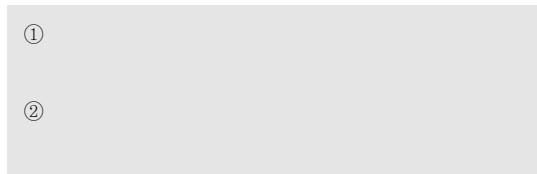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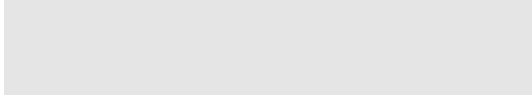
(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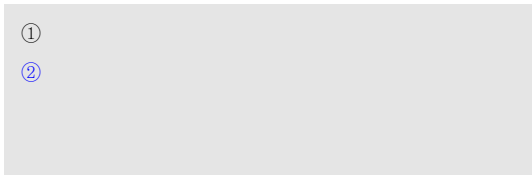
②

판례



6.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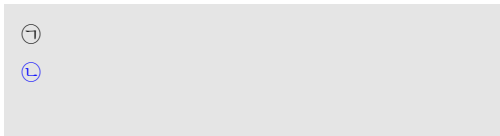
(1)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2)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7.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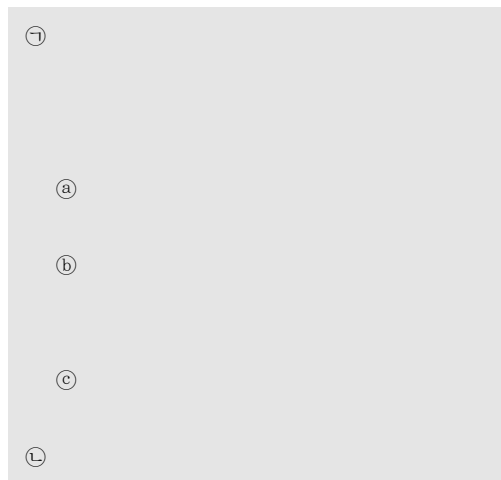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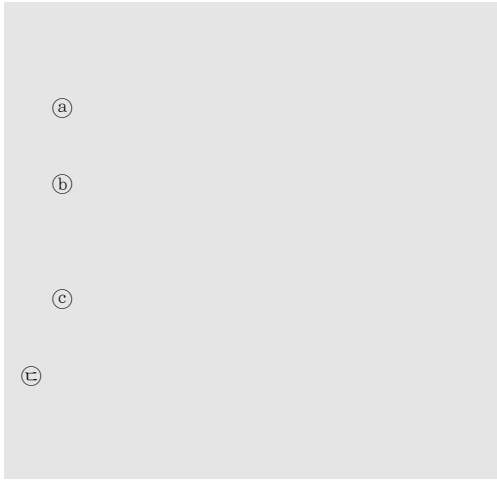
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9.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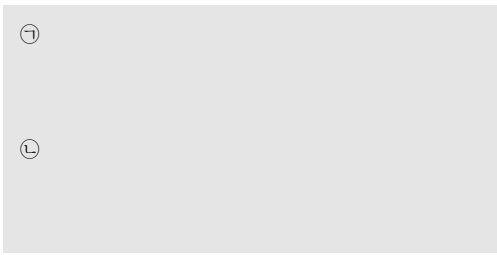
10.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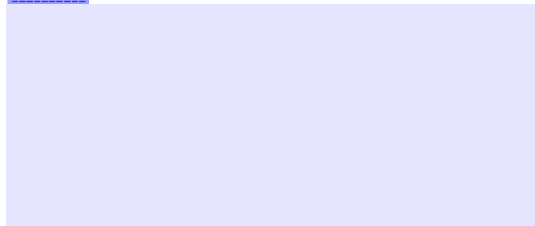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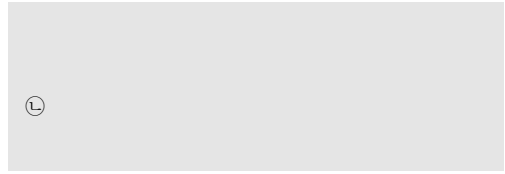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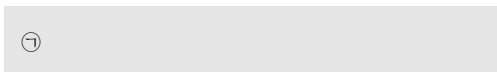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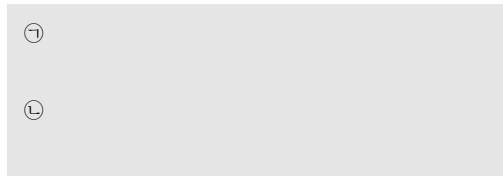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②



③

④

지방

PART VIII

조세특례제한법

- Chapter 01 총설
- Chapter 02 직접국세
- Chapter 03 간접국세
-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 Chapter 06 보칙

Chapter 01

총설

SECTION

01 조세감면의 유형 (06년 기출)

1. 조세특례 (17년 기출)

2. 직접감면 (06년 기출)

3. 간접감면 (06년 기출)

(예 :

)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01년 기출)

(1) 이월과세

(2) 과세이연

세부 연구개발의 정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조특

세부 위기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①

②

③

Chapter 02

직접국세

SECTION

0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80,95년 기출)

I.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1) 규모요건

(2)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①

②

(3) 업종요건

(4)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아닐 것

2. 유예기간

(1) 규모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①

②

③

④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①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

② 개정으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

+

II. 조세특례의 내용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7.25년 기출)

(1) 세액감면 내용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ㄱ)

㉠

㉡

(ㄴ)

㉢

㉣

㉤

㉥

②

*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①

②

㉠

㉡

2) 창업벤처중소기업(5년간 50% 세액감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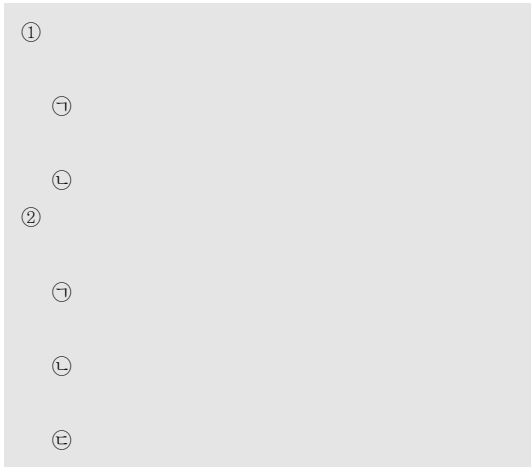
②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5년간 50% 세액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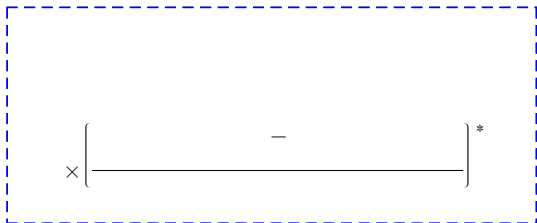
4)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3년간 75%,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

5)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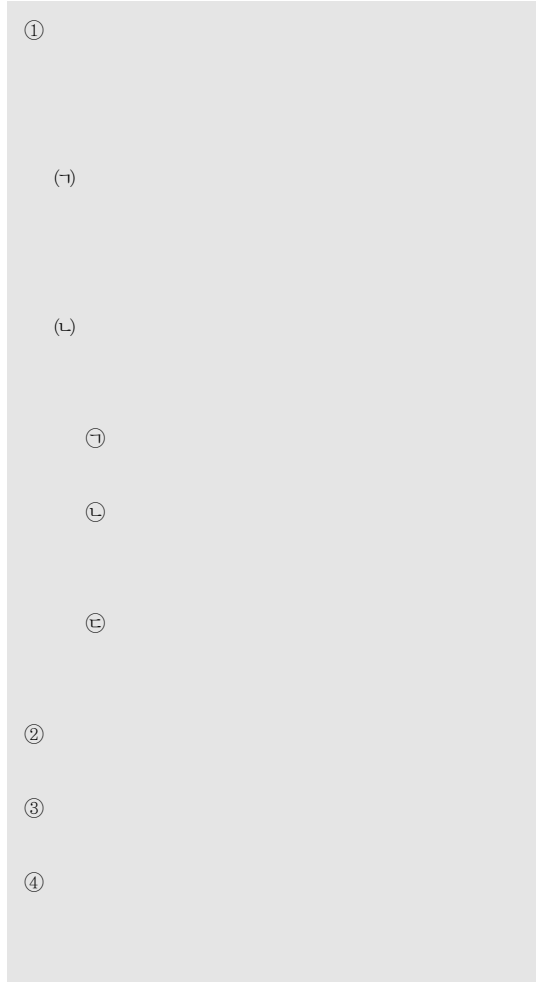
6) 추가감면



* 다만,

(2)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3) 세액감면 배제

(4) 감면 한도

판례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감면내용

1) 일반적인 경우 :

구 분	사업장 소재지	업 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그 외의 감면업종
기업*	수도권 내	%	%
	수도권 외		%
기업	수도권 내	-	:
	수도권 외	%	%

* 소기업 :

2)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 :

①

②

③

3) 알뜰주유소 경영 중소기업(일몰)

① 감면 요건

㉠

㉡

㉢

② 감면 비율

㉠

㉡

㉢

(2) 감면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

-

×

②

(3) 감면비율의 적용방법

조특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년 기출)

(1) 취지

(2) 적용요건

(3)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 +

①

(-) × %

A :

B :

②

(-) × %

C :

D :

③

(-) × %

E :

F :

세부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①
- ②
- ③
- ㉠
- ㉡
- ④
- ⑤
- ⑥

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 공제

(1) 기금출연

① 요건 및 세액공제액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② 사후관리

(2) 무상임대

① 요건 및 세액공제액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② 사후관리

(3)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left(\quad \frac{\%}{\%} \right)$$

(4)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시 세액공제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5)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요건

② 특례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	
㉡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left(\quad \frac{\%}{\%} \right)$$

③ 사후관리

세부 구분경리

조특

SECTION 0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86년 기출)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begin{array}{l} \text{신성장·원천기술} \\ \text{연구개발비에} \\ \text{대한 세액공제액} \end{array} = \quad \times \quad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과세표준	공제율
(가)	$\% + \text{Min} \left(\text{---} \times , \% \right)$
(나)	$\%* + \text{Min} \left(\text{---} \times , \% \right)$

*

%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국가전략기술 :

$$\begin{array}{l} \text{국가전략기술} \\ \text{연구개발비에} \\ \text{대한 세액공제액} \end{array} = \quad \times \quad *$$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과세표준	공제율
(가)	$\% + \text{Min} \left(\text{---} \times , \% \right)$
(나)	$\%* + \text{Min} \left(\text{---} \times , \% \right)$

*

%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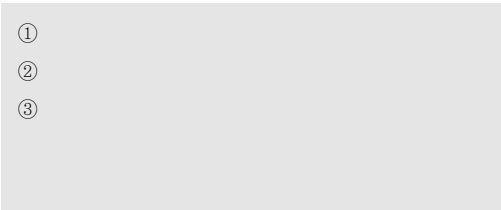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①
- ②
- (ㄱ)
- (ㄴ)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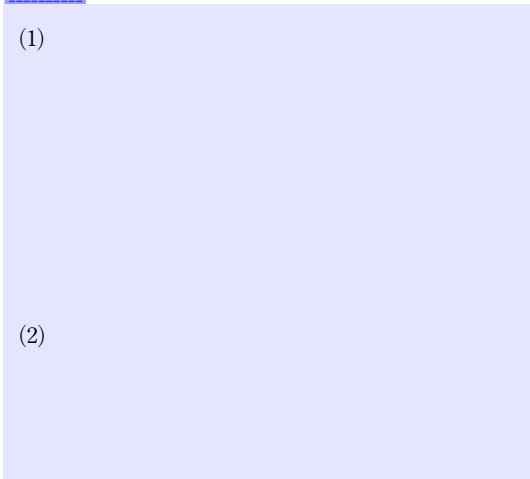


세부

전



판례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 과세특례

1) 익금불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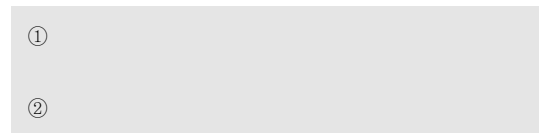
2) 익금산입

①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사후관리

조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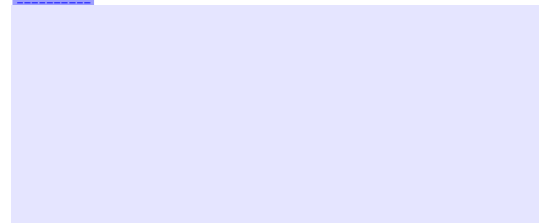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판례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요건

①

②

(2) 과세특례

① : % , ② : %

(3) 감면배제

- ①
- ②
- ③

(4) 감면한도

$$\text{감면한도} = \text{①} + \text{②} \times \% \times \text{③} \times \text{④} \left(\text{⑤} \right)$$

(5) 사후관리

1)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 ①
- ②

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일몰)

(1) 취지

(2) 요건

$$\text{①} \geq \text{②} \times \% \times \text{③}$$

④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3) 과세특례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4) 사후관리

- ①
- ②

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 요건

- ①
 - ②
 - ③
- $$\text{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 \geq \quad \times \quad \% \times$$
- ④

- 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2) 과세특례 내용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3) 사후관리

조특

- ①
- ②
- ③

7.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취지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3) 주식 취득방법

1) 창업기업,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①~④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주식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2)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①~③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주식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①
- ②
- ③
- ④

(4)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

①

②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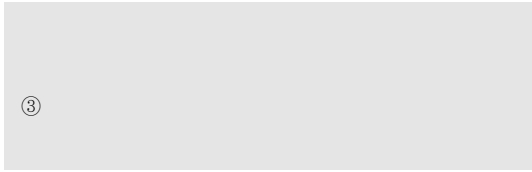
2)

8.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내용(5% 세액공제)

1)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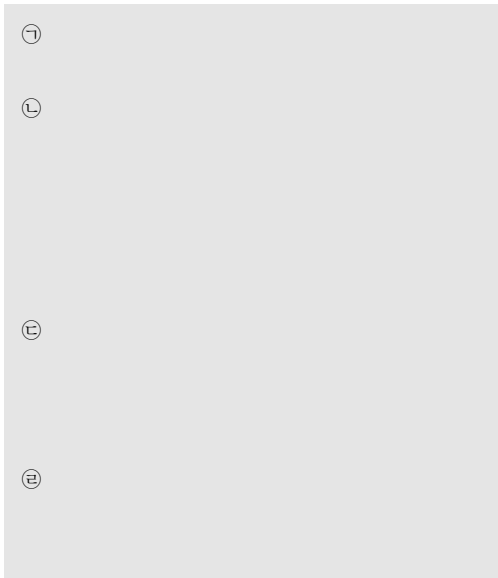


(2)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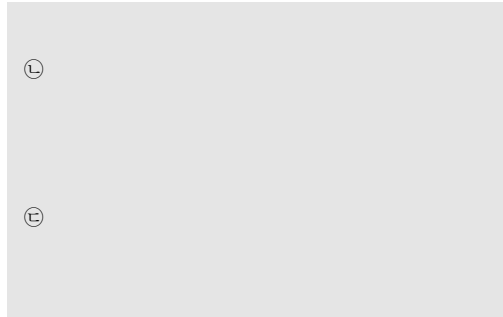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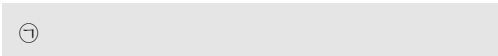
1) 적용대상

2) 적용요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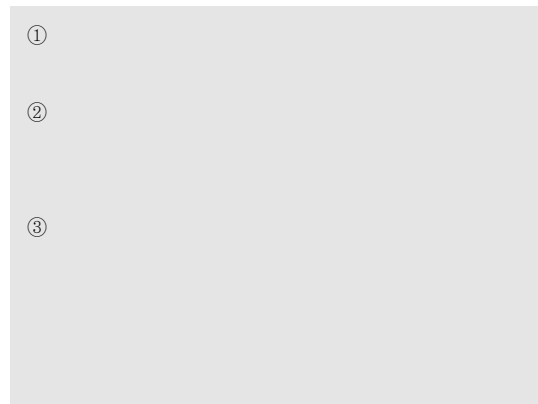


②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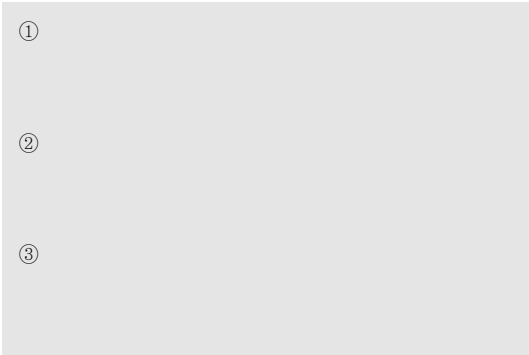
3) 세액공제액 : Min(,) × %(%, %)

4)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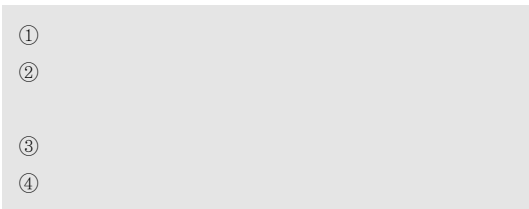


10.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주식 취득방법



(3)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1.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취지

(2) 양도소득세 비과세

(3) 배당소득 과세 제외



(4) 원천징수특례

1) 배당소득

2)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5)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 원천징수의무면제

2) 5년간 분할 납부

2)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

—

조특

양도소득금액 = - - (-)

A :

B :

C :

D :

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16년 기출)

(1) 취지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4)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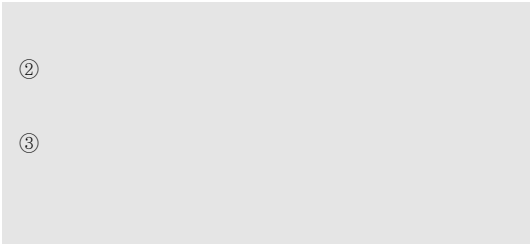
①

②

(3) 과세특례 내용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종합소득세 비과세

①



1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20년간 19% 세율로 분리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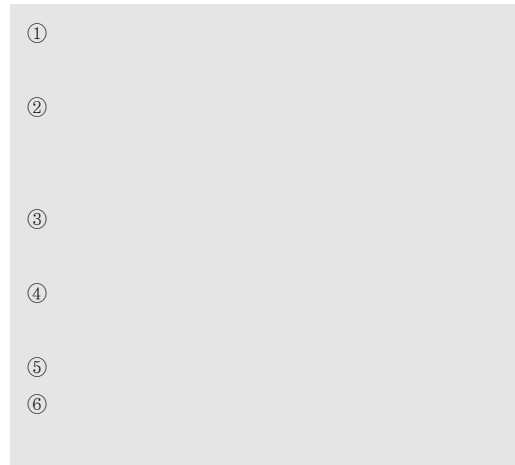
(2) 비과세 등 적용배제

19.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년간 50% 감면)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례

세부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함



2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등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 세액공제)

(2)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50% 세액감면)

- ①
- ②

SECTION 03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 ㉠
- ㉡

②

SECTION 04.1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 자산

- ①
- ②

조특

- (㉠)
- (㉡)
- (㉢)

(2) 세액공제액

1) 공제금액 = ① + ②

① 기본공제 금액 :

×

구분	㉠ 중소기업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	㉣ ㉠~㉢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추가공제 금액

2)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 ㉠ + ㉡ (일몰)

㉠ 기본공제 금액 :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추가공제 금액

(3)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요건

1) 내국인 요건

①

㉠

㉡

㉢

㉣

②

2)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①

②

③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요건

(2) 공제금액

① 기본공제 금액 = $\text{ } \times \%$
 ($\text{ } \%$)

② 추가공제 금액 = $\text{ } \times \%$ ($\text{ } \%$)

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

조특

$\times \text{-----}$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취지

(2) 적용요건

(3) 10%(중소기업 : 15%)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text{ } \times \%$ (중 $\text{ } \%$)

5.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9% 세율로 분리과세)(일몰)

6.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분리과세)

- ①
- ②
- ③

7.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

* 신고내용연수 :

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 취지

(2)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내용

*

* 신고내용연수 :

SECTION 04.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년 기출)

(1) 근로소득 증대세제

1) 일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 충족하는 경우

- ①
- ②

$$\text{세액 공제액} = \text{세액} \times \left(\frac{\text{공제율}}{100} \right)$$

2)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 공제

- ①
- ②
- ③

$$\begin{matrix} \text{세액} \\ \text{공제액} \end{matrix} = \quad \times \quad \%$$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①
- ②

$$\begin{matrix} \text{세액} \\ \text{공제액} \end{matrix} = \quad \times \left(\begin{matrix} \% \\ \% \end{matrix} \right)$$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 취지

(2) 요건

(3) 과세특례

- ①
 - ㉠
 - ㉡
- ②
 - ㉠
 - ㉡

(4)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조특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일몰)

(1)

- ①
 - ②
 - ㉠
 - ㉡
- ⋮
⋮

(2) 사후관리

4. 통합고용세액공제

(1) 기본공제

$$\text{기본공제액} = \quad + \quad [\quad = \quad + \quad - \quad]$$

1)

①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에 대한 금액

$\times (\quad)$

B : 전년 과세연도 대비
에 대한 금액

$\times (\quad)$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에 대한 금액

$\times (\quad)$

② 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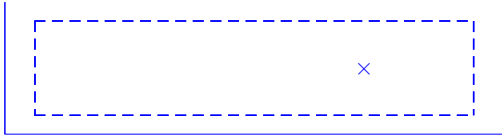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에 대한 금액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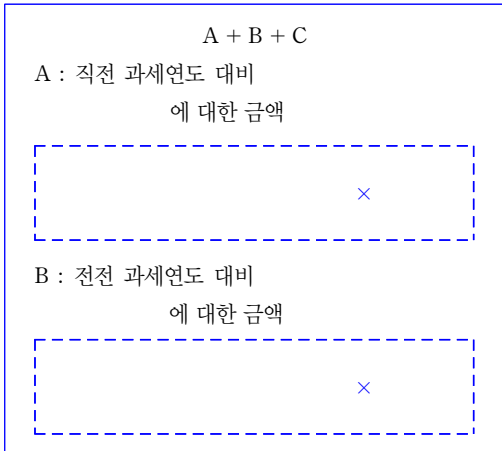
B : 전년 과세연도 대비
에 대한 금액

\times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에 대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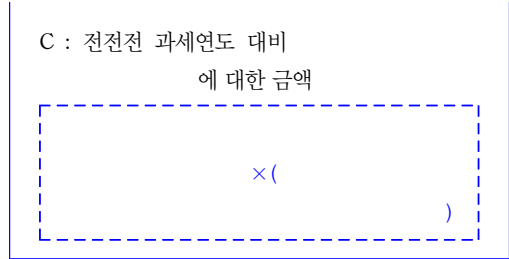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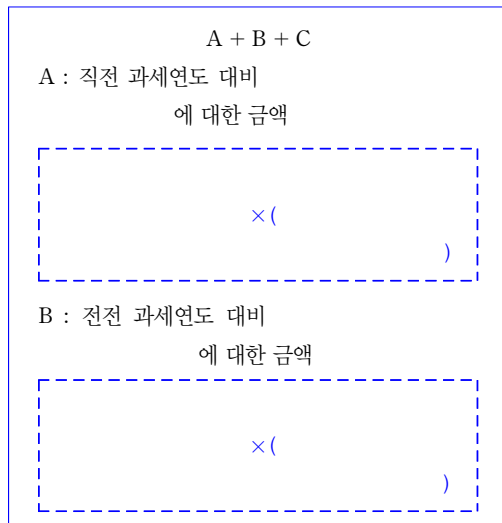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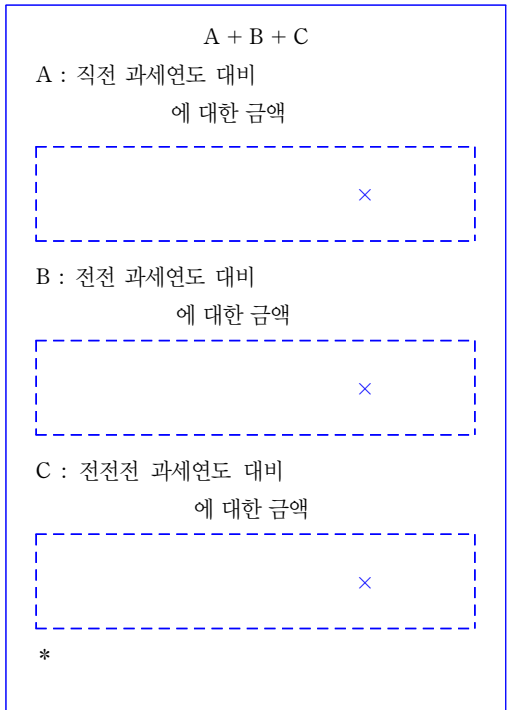


2)

① 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에 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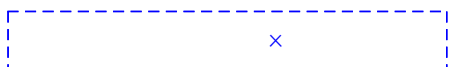
①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ㄱ)

㉠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조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ㄴ)
$$\boxed{\quad \times \quad}$$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ㄴ)
$$\boxed{\quad \times \quad + \quad \left(\quad - \quad \right) \times \quad}$$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ㄴ)
$$\boxed{\quad \times \quad + \quad \left(\quad - \quad \right) \times \quad}$$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ㄴ)
$$\boxed{\quad \times \quad + \quad \left(\quad - \quad \right) \times \quad}$$

② 종건기업이 아닌 경우

(ㄱ)

인 경우 :

(ㄴ)

㉠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ㄴ)
$$\boxed{\left(\quad - \quad \right) \times \quad}$$

㉡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ㄴ)
$$\boxed{\left(\quad - \quad \right) \times \quad}$$

세부

“ ”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함

- ①
- ②

세부

“ ”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함

- ①
- ②
- ③

(2) 추가공제

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요건(적용대상)

×()

2) 육아휴직 복귀자

- ①
- ②
- ③

×()

3)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2) 과세특례

(3) 감면 신청 및 근로자 명단 제출의무 등

1) 감면 신청

조특

2) 원천징수의무자의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의무

3) 감면 요건 미충족의 경우 통지 의무

(4) 사후관리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 ①
- ②
- ③

2) 세액공제액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begin{aligned}
 & \text{세액공제액} \\
 & = ① (\quad \times \%) + ② (\quad \times \%) \\
 & ① \left[\quad - \quad \right] \\
 & \quad \times \quad \times \% \\
 & ② \left[\quad - \quad \times \% \right] \\
 & \quad \times \quad \times \%
 \end{aligned}$$

(2) 상시근로자에 대한 특례

(3)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일몰)

(1)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begin{aligned}
 & ① \quad \times \% \\
 & + \quad ② \quad \times \% \left[\begin{array}{l} \quad \\ : \% \quad \end{array} \right]
 \end{aligned}$$

(2) 고용 감소시 세액공제 중단 및 공제세액 납부

(3)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일몰)

SECTION 0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1년 기출)

(1) 취지

(2) 요건

1) 당사자 및 창업자금의 요건

2) 창업요건

세부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4) 특례신청

(3) 과세특례

$$\text{증여세액} = (\quad - \quad) \times \%$$

(4) 사후관리

1) 가산세 부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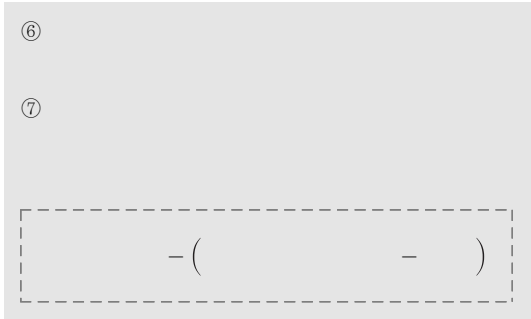
②

$$\text{가산세} = \quad \cdot \quad \times \%$$

2) 증여세 등 추징(이자상당액가산)

- ①
- ②
- ③
- ④
- ⑤

조특



(5) 사후관리 위반시 자진신고납부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①
- ②
- ③
- ④

2.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21년 기출)

(1) 취지

(2) 요건

- 1) 증여자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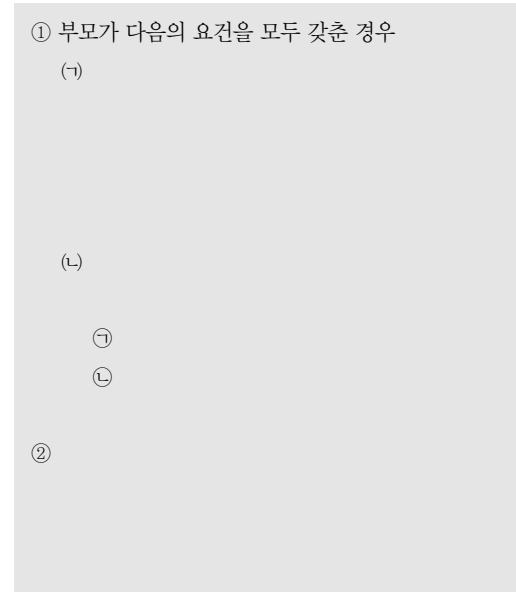
2) 수증자 요건

3) 증여재산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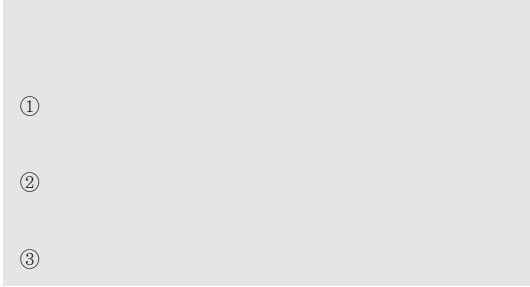
4) 신고기한까지 특례 신청

세부

“ ”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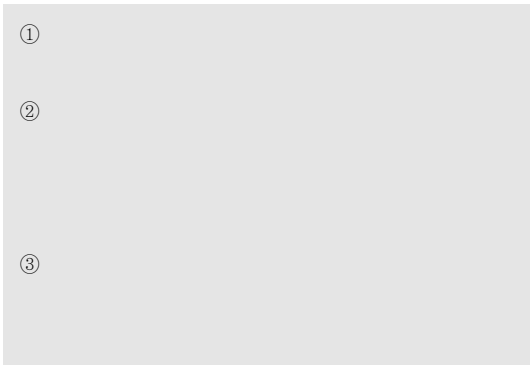


(3)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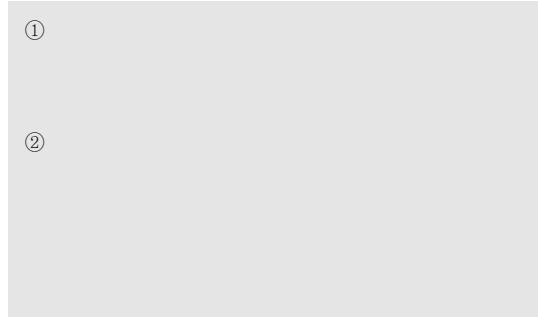


$$= \left(\quad - \quad \right) \times \% \left(\quad \% \right)$$

(4) 사후관리(증여세 추정)



(5) 조세법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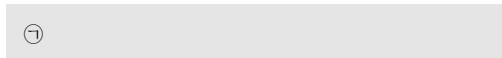


(6) 자진 신고·납부

조특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판례

(25년 기출)

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취지

(1) 납부유예 요건 및 납부유예 가능세액

1) 납부유예 요건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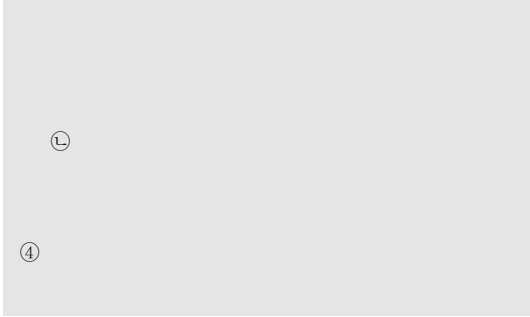
2) 납부유예 가능세액

납부유예 가능 세액 = \times _____

(2) 담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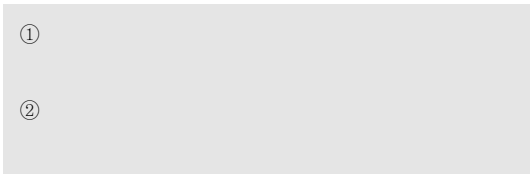
(3) 증여세 납부사유(사후관리)

①
②
㉠
㉡
③ $\times (\quad \div \quad)$
㉠



(4) 사후관리 위반시 자진신고납부

(5) 허가의 취소 및 변경



(6) 준용 규정

- ①
- ②
-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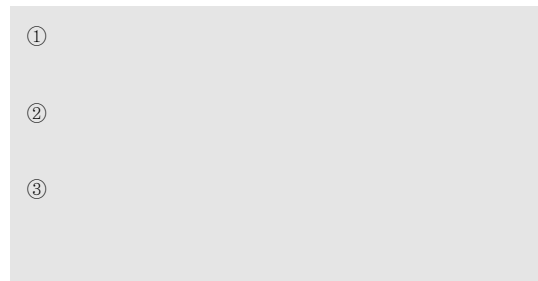
구 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방식
적 용 대 상		
적 용 혜 택	증여세 과세금액 이하: % 초과: 20% 의 증여세율 적용	
한 도	가업영위기간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억원	
사 후 관 리	고 용 유 지	
	지 분 유 지	

조특

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5년 기술)

(1) 취지

(2) 요건



④

(3) 과세특례

①

②

③

(4) 사후관리

①
②

판례

(1)

(2)

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0년 기출)

(1) 취지

(2) 요건

①
②
③ 자본금요건
: ≧

(3) 과세특례

①

②

③

(4) 사후관리

①
②

6.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일몰)

(1) 요건

①

②

(2) 과세특례내용

1) 법인의 경우

2) 거주자의 경우

① 취득의 경우 :

② 취득의 경우 :

(3) 사후관리

①

②

(4)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①

②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3년 기출)

(1) 과세이연요건(적격합병 요건과 유사)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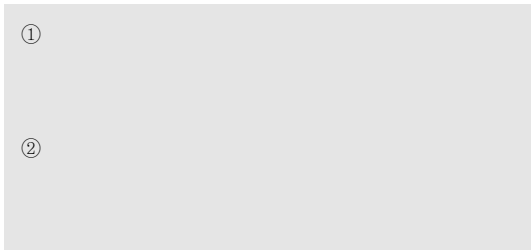
(2) 과세특례

1)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

2)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3) 사후관리



세부 과세특례 내용

(1)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

$$\text{손금산입액} = \begin{matrix} - \\ \text{㉠} - \\ \text{㉡} \text{Min}(\end{matrix}$$

② ()

$$= \times \text{_____}$$

(2)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금액

$$\text{양도소득} = \text{Min}(\begin{matrix} , \\ \text{㉠} - \\ \text{㉡} \end{matrix})$$

②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left[\begin{matrix} + \\ - \end{matrix} \right] \times \text{_____}$$

8.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의 내용

1)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③
④
⑤

조특

3)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4)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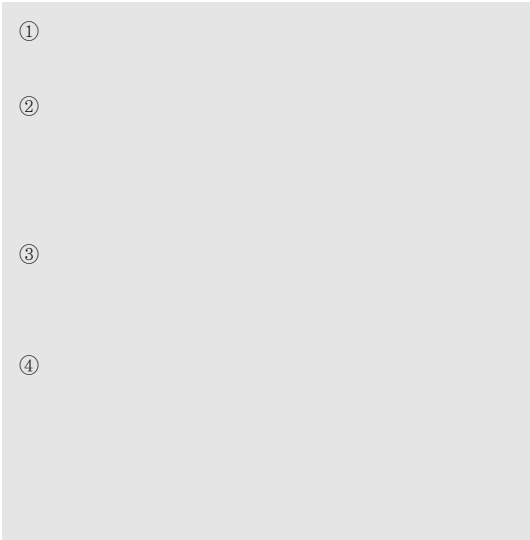
()

(2) 과세이연방법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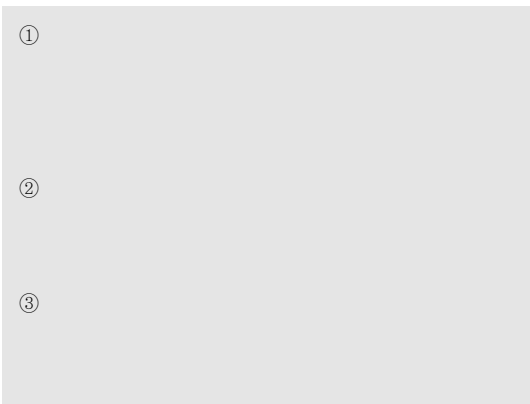
(3) 사후관리



9.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취지

(2) 적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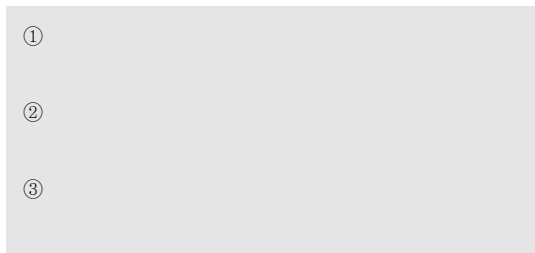


(3) 과세특례(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4) 사후관리

1)

2)



1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2) 특례(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3) 사후관리

- ①
- ②
- ③

11.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 ①
- ②
- ③
- ㉠
- ㉡

(2) 과세특례(2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3) 사후관리

조특

- ①
- ②
- ③

1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 요건

①

②

(2) 과세특례

1)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손금산입

②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 거주자인 경우 :

㉡ 내국법인인 경우 :

3)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 배제

(3) 사후관리

①

②

③

1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①

②

(2) 과세특례

1)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2) 양도 등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특례(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3)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 배제

4) 원천징수의무 면제

(3) 사후관리

- ①
- ②
- ③

1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 (10년 기출)

(1)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 ④

(3) 과세특례의 내용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

(4) 사후관리

1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조특

- ①
- ②
- ③

(2)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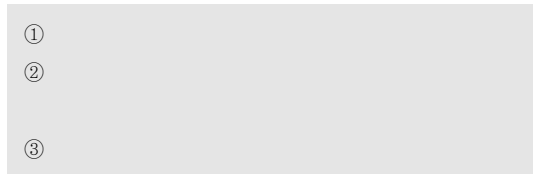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begin{array}{l}
 \text{취득가액} \\
 = \\
 - \quad \times \text{_____}
 \end{array}$$

(3) 사후관리

16.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1) 요건



(2) 과세특례

(3)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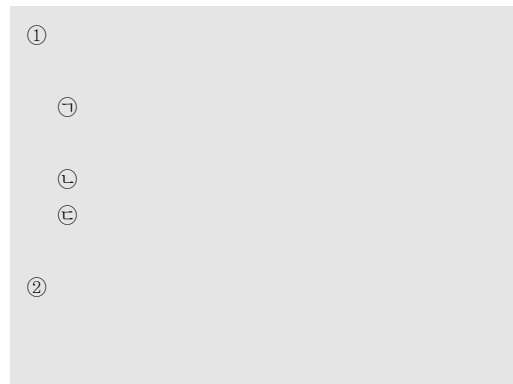
17.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1) 취지

(2) 적용요건

(3) 과세특례

세부



(4) 사후관리

SECTION
06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begin{aligned}
 & \textcircled{1} \quad : \quad \times / \\
 & \textcircled{2} \quad : \quad \times / + (\quad - \quad) \times \% \\
 & \textcircled{3} \quad : \quad \times / + \text{만원} \times \% + (\quad - \quad) \\
 & \quad \times \% *
 \end{aligned}$$

*

%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1) 과세특례 요건 (04년 기출)

1) 대상사업자

2) 이전요건

① ()

② ()

3) 업종요건

(2) 과세특례

()

*

(3) 사후관리

()

①

②

③

3.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특

(1) 과세특례 요건 (04년 기출)

1) 적용대상

2) 이전요건

① ()

② ()

3) 업종요건

(2) 과세특례

()

(3) 사후관리

()

)

①

- ②
- ③
- ④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 취지 :

(2) 요건

1) 적용대상

2) 세액감면 요건

①

②

㉠ 선이전 후양도 :

㉡ 선양도 후이전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
- ㉡

④ 업종의 동일성 요건 :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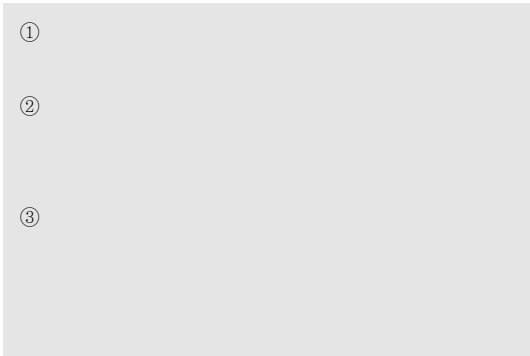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②

:

(4) 감면의 배제

(5) 사후관리



(6) 그 밖의 특례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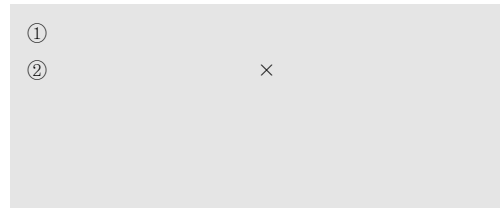
2) 재산세에 대한 특례

①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의제

② 사후관리

(7) 감면한도

1)



2)

3)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1) 취지 :

(2)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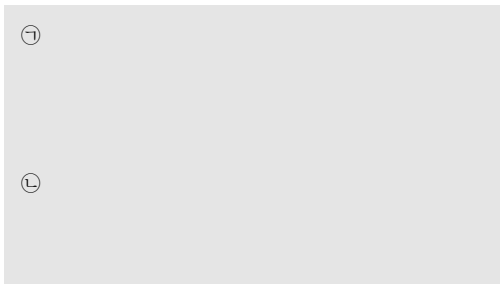
1) 적용대상

조특

2) 세액감면 요건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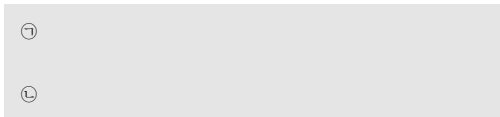


③

④

:

*



(3) 세액감면

1) 감면대상 소득 = ① × ② × ③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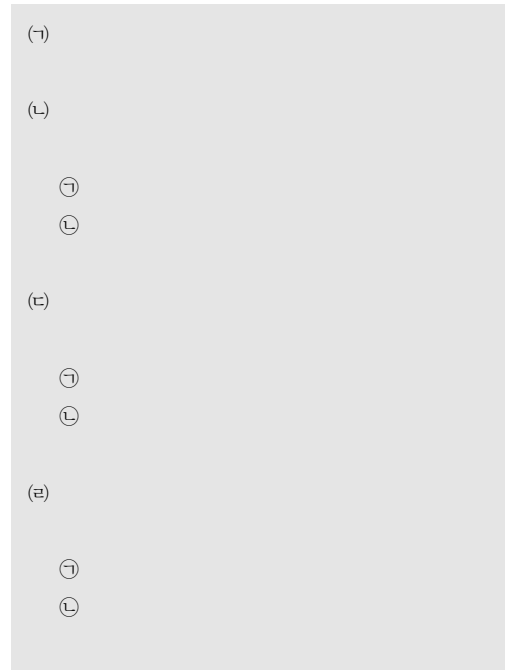
②

③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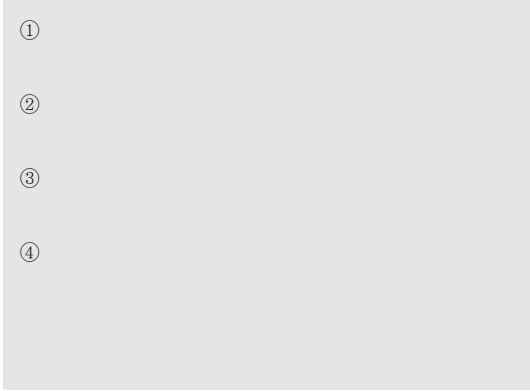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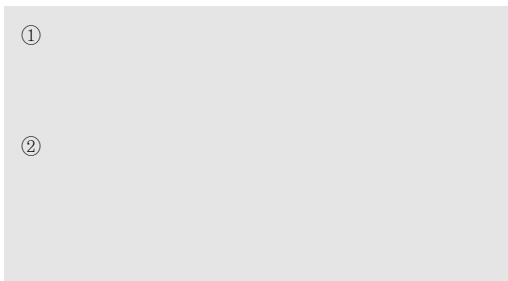
:

(4)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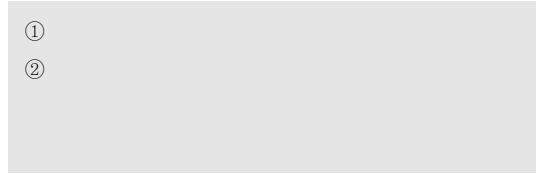
(5) 양도차익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세부 세액감면의 중단



(6) 감면한도

1)



2)

3)

6.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 취지

(2)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1)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조특

2) 양도차익에 대한 사후관리

- ①
- ②
- ③
- ④

(3) 세액감면 특례(일몰)

1)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2) 세액감면 배제

3)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7.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2년 기출)

(1) 세액감면

- ①
- ②

(2) 감면한도

$$\text{감면한도} = \text{①} + \text{②} \times \% \times \text{만원()}$$

(3) 사후관리

1)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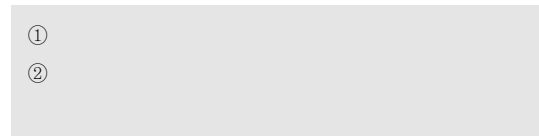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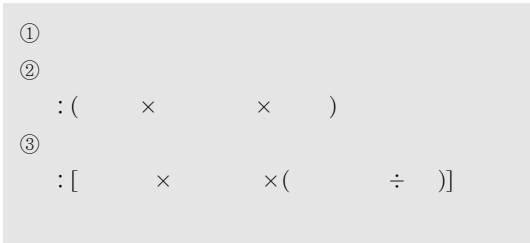
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02,24년 기출)

(1)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2) 사후관리



(2)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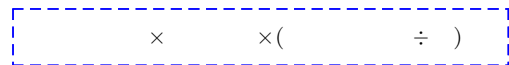
③

9.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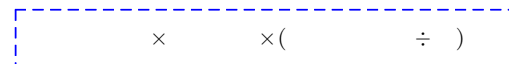
(04년 기출)

(1)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②



(2)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1) 배당소득세 면제

2) 원천징수세율 특례

:

(3) 양도소득세 감면

1) 양도소득세 100% 감면

2) 사후관리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①

②

* “농업인”이란

2) 사후관리

1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02년 기출)

(1) 법인세 면제

①

②

③

(2)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면제

①

②

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04,12,13,19년 기출)

(1) 취지

(2) 감면의 요건

1) 면제대상자

2)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

①

②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기간

4)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②

(3)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경우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text{양도소득금액} \times \frac{\text{---}}{\text{---}}$$

(4) 사후관리 (04년 기출)

①
②
③

판례

1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취지

(2) 요건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축사용지

(3)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경우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4) 사후관리

조특

13.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세액
이상	미만	양도세의 %
이상	미만	양도세의 %
이상	미만	양도세의 %
이상	미만	양도세의 %
이상		양도세의 %

1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년 기출)

(1) 요건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농지의 요건

㉠

㉡

[Blank area]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

[] × / [/]

3)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②

(2)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경우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3)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
㉡

1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특례

①
②

(3)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에 대한 처리

(4)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①
②

조특

17.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취지

(2) 요건

1) 농지 등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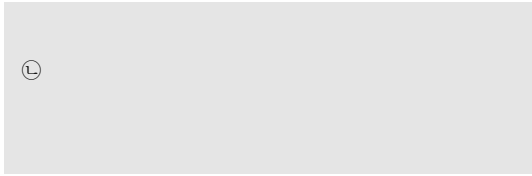
①
②
③

2)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범위

① 자경농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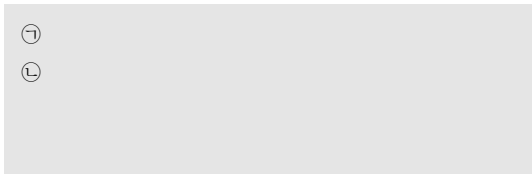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② 영농자녀 등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3) 과세특례

1)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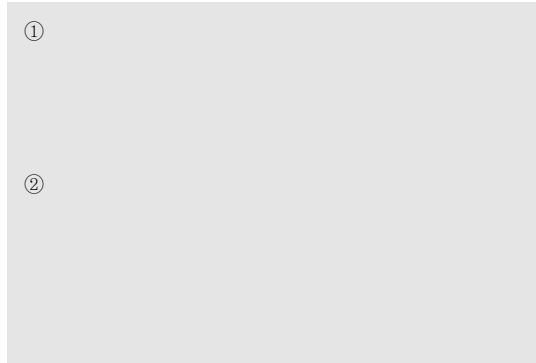
② ()

2) 양도소득세 특례

(4) 사후관리

*

(5)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6) 사후관리 위반시 자진신고 납부

(7) 감면한도

18.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 취지

(2) 과세특례 내용

① 양도소득세

- ①
- ②

② 종합부동산세

(3) 신청

①

②

세부 “인구감소지역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함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①
 - ㉠
 - ㉡
 - ㉢
- ②

- ㉠
-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①
 - ㉠
 - ㉡
- ②

조특

SECTION

07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당기순이익 과세

당기순이익 과세

$$= \left[\quad + \quad \right] \times \% \left(\quad \% \quad \right)$$

(2) 일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배제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

②

:

3. 기부장려금

(1) 취지

(2) 기부장려금 신청

(3) 기부장려금의 결정

$$\text{기부장려금} = \text{---} - \text{---} \times \text{---}$$

①

②

*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4)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5)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그 밖의 규정

1) 환급

2) 사후관리

$$\text{①} \times \%$$

$$\text{②} \times \text{---} \times \%$$

3)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취소

① 지정 취소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②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배제

4.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05년 기출)

(1) 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

- ① 10만원 이하 :
- ② 10만원 초과 :

(2) 적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3)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년 기출)

(1) 감면대상소득

(2) 과세특례

(3) 사후관리(이자상당가산액 추정)

1) 공익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①

②

㉠

㉡

2) 세액감면받는 자가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조특

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취지

(2) 요건

1) 공장요건

2) 지역요건

3) 이전요건

①

②

(3) 과세특례

1) 내국법인 :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2) 거주자 : 5년거치 5년분할 납부

(4) 사후관리

- ①
- ②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1) 적용대상

2) 지역요건

3) 이전요건

- ①
- ②

(2) 과세특례

1) 내국법인

2) 거주자

(3) 사후관리

- ①
- ②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1) 적용대상

①

2) 이전요건

- ①
- ②

(2) 과세특례

- 1) 내국법인
- 2) 거주자

(3) 사후관리

- ①
- ②

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9년 기출)

(1) 취지

(2) 적용요건

(3) 대토보상 명세 통보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4) 과세특례

(5) 사후관리

- 1) 4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액(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 ①
- ②

- 2)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감면세액의 차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 ①
- ②
- ③
- ④

조특

1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
- (2)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1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 사회적기업
 - 1) 과세특례

2) 감면적용배제

(2) 장애인 표준사업장

1) 과세특례

2) 감면적용배제

(3) 감면한도

①	+	×
②	+	×

SECTION 08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1) 취지

(2) 소득공제

$$\text{소득공제액} = \text{Min}(\quad , \quad) \times (\quad - \quad) / \quad$$

①

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이하인 경우	만원
초과	이하인 경우	만원
초과	이하인 경우	만원
초과인 경우		만원

(3) 공제금 수령시 과세방법

1) 소득의 구분

① 퇴직소득

발생하여 지급받는 경우 :

※ 2015.12.31. 이전에 가입자 :

② 기타소득

다만, ㉠

, ㉡

2) 수입시기(현금주의)

세부 폐업 등의 사유

“폐업 등의 사유”란

는 것을 말함

해당하

- ①
- ②
- ③
- ④

【세부】 해외이주 등의 사유

“해외이주 등의 사유”란 _____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

- ①
- ②
- ③
- ④
- 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1) 소득공제

$$\text{소득공제} = \text{ () } \times 40\%$$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비과세

1) 비과세

- ①
- ㉠
- ㉡
- ②

2) 사후관리

조특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①
- ②
- ③

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①
- ②
- ③

- ①
- ②

(2)

6) 자사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특

- ①
- ②
- ③

- ①
 - (-)
 - (L)
 - (㉠)
 - (L)
- ② 원천징수세율
 - (㉠)
 - (L)

판례

7.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1)

8.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1)

-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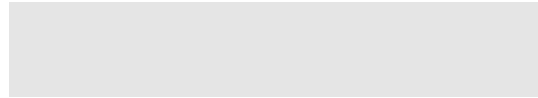
(2)

- ①
 - (ㄱ)
 - (ㄴ)
 - (ㄷ)
 - (ㄹ)
- ② 원천징수세율
 - (ㄱ)
 - (ㄴ)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 가입대상자

- ①
- ②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요건

“ ”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times \left[+ \left(\quad \right) \right] -$$

(3) 과세특례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①
- ②
- ③

2) 위 1) 외의 경우

(4) 사후관리

(5) 3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
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 ㉔
- ㉓
- ㉒
- ㉑

$$\text{소득공제액} = \quad \times \quad \%$$

10.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12.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일몰)

조특

- ①
- ②

1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13.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일몰)

(1) 비과세 규정

- ①
- ㉑
- ㉒

- ①
- ②

SECTION
09.1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2) 혼인인 무효가 된 경우 가산세 면제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8년 기출)

①

$$\text{세액공제액} = \text{Min}(\quad , \quad) \times \%*$$

*

②

㉠

㉡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 요건

1) 임대사업자 요건

①

②

2) 임대주택 요건

①

②

③

(2) 과세특례 : 세액감면

대해서는 다음에 따

른 세액을 감면함

①

②

(3) 사후관리

조특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1) 세액공제

$$\text{세액공제액} = \text{세액공제대상액} \times \text{세액공제율} (\%)$$

(2) 세액공제 배제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요건

- ①
- ②
- ㉠
- ㉡
- ㉢
- ㉣

(2) 특례 내용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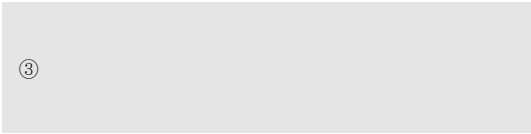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일몰)

(1) 취지

(2)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하는 경우

- ①
- ②



(3) 과세특례

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일몰)

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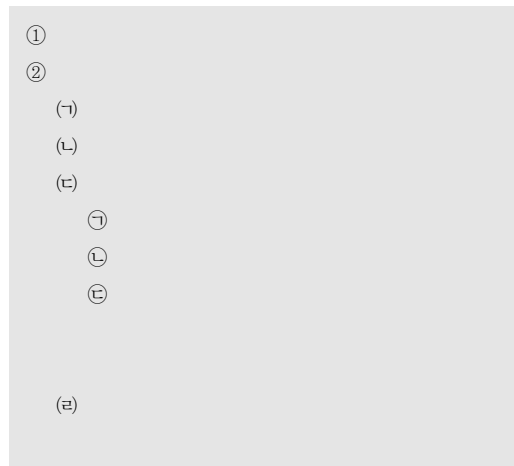
(2) 과세특례 내용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세부

“ 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



조특

(마)

1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1) 요건

1) 농어촌주택의 범위

①

②

2) 고향주택의 범위

①

②

(2) 과세특례

(3) 특례배제

(4) 사후관리

13.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

②

③

④

⑤

14.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3) 감면한도

$$\text{감면한도} = \text{①} + \text{②} \times \text{③} \% \times \text{④} \left(\text{⑤} \right)$$

- ①
- ㉠
- ㉡
- ②
- ③
- ④
- ⑤

(4) 사후관리

1) 고용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조특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후관리

15.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감면대상

- ①
- ②

(2) 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5) 창업의 범위

1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1)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적용 요건)

①

②

㉠

㉡

㉢

③

④

⑤

⑥

(2) 체납액 징수특례의 의미

“ ”란 다음의 것을 말함

①

②

(3)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

17. 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 취지

(2) 적용요건 및 특례 내용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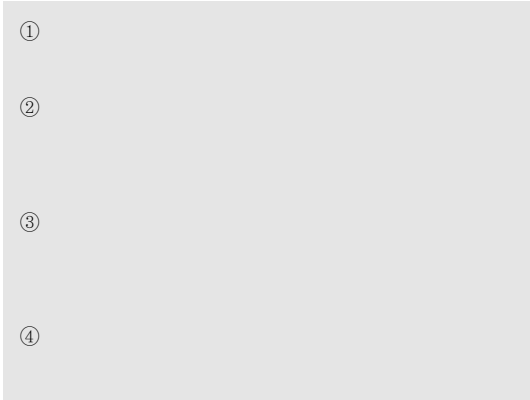
③

④

⑤

⑥

(3) 체납액의 범위



(4) 절차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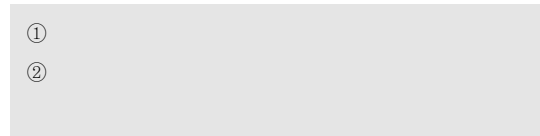
③

18.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19.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취지

(2) 적용대상



조특

(3) 과세특례

(4) 사후관리

SECTION 09.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도입배경과 효과 (14년 기출)

(1) 도입배경

(2) 효과

- 1) 근로유인의 효과
- 2) 빈곤탈출 지원효과

2.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4년 기출)

1) 근로장려금 신청자

㉠

㉡

①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만원
	만원
	만원

② 재산기준요건

2) 신청할 수 없는 자

①

㉠

㉡

②

세부

(1) 단독가구 :

(2) 홑벌이 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①

②

㉠

㉡

㉢

③ 맞벌이 가구 :

㉠

㉡

㉢

(2) 근로장려금의 산정 (14년 기출)

1) 근로장려금의 산정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① 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미만	$x /$
이상 미만	
이상 미만	$-(\quad - \quad)x /$

② 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미만	$x /$
이상 미만	
이상 미만	$-(\quad - \quad)x /$

③ 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미만	$x /$
미만	
이상 미만	$-(\quad - \quad)x /$

2)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①

$A \div B \times C$

A :

B :

C : +

②

3) 배우자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조특

4) 재산의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

(3) 근로장려금의 신청

1) 거주자의 신청

2) 반기신청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4) 직권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

1) 결정과 결정기한

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3) 결정된 근로장려금

(5)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환급의 제한

1) 근로장려금의 환급

2)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배제

3) 통지 및 환급

4) 체납액에 대한 총당

5) 반기 신청시 환급의 제한

①

②

6) 압류의 제한 :

7) 반기 신청시 근로장려금 정산

8)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

①

②

(6)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1) 경정사유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배제

3)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적용

$$\times (\sim) \times \%$$

SECTION 09.3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자녀장려세제

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 적격 신청 요건

- ①
- ②
- ③

(2) 신청 부적격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을 신청할 수 없음

- ①
- ㉠
- ㉡
- ②

3. 자녀장려금의 산정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미만	×
이상 미만	× { -(-) × —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미만	×
이상 미만	× { -(-) × — }

조특

4.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1) 자녀장려금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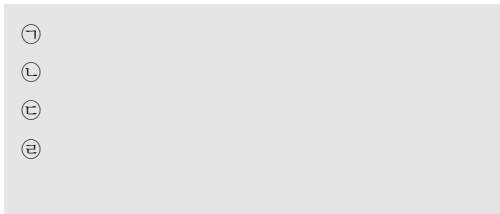
(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3) 반기 신청을 한 경우

SECTION
09.4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적용대상

①



②

③

2. 동업기업 및 동업자 납세의무

(1) 동업기업의 납세의무(소득세, 법인세) 면제

(2) 동업자의 납세의무

(3)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1)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2) 신고

3) 납부

3. 적용 및 포기신청

(1) 적용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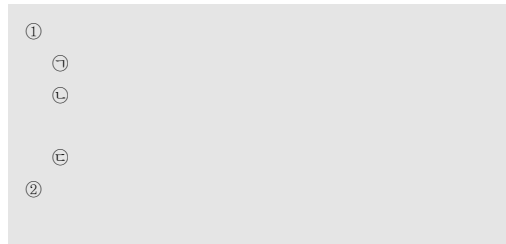
(2) 포기

4.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1)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 란



(2) 결손금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

*



(3) 동업자의 소득구분

1)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구분

- ① 거주자 :
- ② 비거주자 :
- ③ 내국법인 :
- ④ 외국법인 :

2)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 ① 거주자 :
- ② 비거주자 :
- ③ 내국법인 :
- ④ 외국법인 :

(4) 세액공제 등 배분

- ①
- ②
- ③
- ④

(5) 신고납부시 공제 또는 가산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1)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준용

조특

6. 지분가액의 조정

(1) 최저지분가액

×

(2) 지분가액의 증액조정

구 분	증액조정하는 금액
①	
②	
③	
④	

(3) 지분가액의 감액조정

구 분	감액조정하는 금액
①	

②	
③	
④	

(4) 지분가액 조정순서

적용 순서	내	유
①	•	
②	•	
③	•	
④	•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 분배받은 자산시가 > 지분가액

(2) 분배받은 자산시가 < 지분가액

(3) 지분가액 상당액의 익금불산입

9.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0.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배분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능동적 동업자

② 수동적 동업자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

11. 가산세

(1)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	$\quad \times \%$
미달신고 :	$\quad \times \%$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 Min(,)	
①	$\quad \times (\quad \times \quad \% + \quad \%)$
②	$\quad \times \quad \%$

SECTION 10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취지

2. 적용대상

3. 미환류소득의 산정

(1) 산정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

1) 방법 A :

$$\times \% - (\quad + \quad + \quad + \quad)$$

2) 방법 B : 투자 제외 방식

$$\times \% - (\quad + \quad + \quad)$$

(2) 기업소득

$$\text{기업소득} = \quad + \quad - \quad$$

1) 가산항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 차감항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조특

(3) 배당합계액 :

(4) 임금증가금액

$$\text{임금증가금액} = ① + ② + ③$$

- ①

㉠ :
 ㉡ :
 $\times \% +$
 $\times \%$
 ㉢ :
 ㉣ :

(5) 상생협력출연금액 :

4. 미환류소득 신고

(1) 미환류소득의 신고

(2) 신고한 산정방법 계속 적용

①
 ②

(3) 무신고시 산정방법

5.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의 처리

(1) 미환류소득의 처리

①

②

$$\left(\quad - \quad \right) \times \%$$

(2) 초과환류액의 처리

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left(\quad \right) \times \%$

7. 투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①
②

㉠
㉡
㉢
㉣

SECTION 11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

(2)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

① :
②
③
④ : ()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② :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3) 전자고지세액공제

①
②
③

조특

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1) 취지

(2) 과세표준계산특례

1) 적용대상

2) 과세특례내용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 ① + ②

① =

$$\text{개별선박표준이익} \\ = (\quad \times \quad) \times \quad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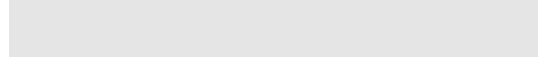
② =

3) 특례적용기간

4) 적용배제

(3) 그 밖의 특례

- ①
- ②
- ③
- ④



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 손금산입

(2) 손실 발생시 상계

(3) 익금산입

(4) 사후관리

① ②

5.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일몰)

(1)

$$\text{세액공제액} \\ = (\quad - \quad) \times \% (\quad : \%)$$

(2)

$$\text{세액공제액} \\ = \left[\quad - \quad \times \% \right] \times \% (\quad : \%)$$

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

(2) 사후관리

①

②

(3)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규정 준용

7.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 토지 등 수익용기본재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2) 유가증권 등 수익용 기본재산(과세이연)

:

(3) 사후관리

①

②

(4) 수익 출연에 대한 전액 손금산입

한도 =

- (+ +)

조특

8.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 운동경비부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text{세액 공제액} = \text{ } \times \text{ \%}$$

(2) 장애인운동경기부

$$\text{세액 공제액} = \text{ } \times \text{ \%}$$

(3) 이스포츠경기부

3년간 비용의 10% 세액공제

$$\text{세액공제액} = \text{ } \times \text{ \%}$$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 취지

(2) 요건

1) 적용대상요건

- ① 해외사업장 철수방식
- ② 선창업 후 양도

㉠ 선양도 후 창업

② 해외사업장 축소·유지방식

㉡

㉢

㉣

2) 업종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②

(3) 과세특례내용

①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의 경우 :

10.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취지

(2) 적용요건

①

②

③

㉠

㉡

조특

② 해외사업장 축소·유지방식의 경우 :

(4)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3) 과세특례내용(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배당소득	세율
이하	총 금액의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초과	+ (%)

(4) 적용신청

(5) 공시

세부 배당성향

$$\text{배당성향} = \frac{\text{ () }}{\text{ ()}}$$

11.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 채권포기액에 대한 손금산입

(2) 증여 또는 익금에서 배제

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①

②

③

④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text{손금한도} = \left[\text{ () } - \text{ () } \right] \times \text{ ()}$$

(3) 손금산입률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	%	%	~	%

(4) 대손발생시

(5) 대여금의 출자전환차액 손금산입

1) 손금산입

①

②

③

2)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

3) 사후관리

①

②

조특

1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 취지

(2) 적용대상

(3) 과세특례

①

②

(4) 사후관리

①

②

1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3

간접국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97년 기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농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1) 취지

(2) 적용대상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4) 환급절차

1) 환급신청

2) 환급대행자의 통보의무 및 가산세(환급받은 세액의 10%) 부과

(5) 사후관리

6.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화

* 제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 ①
- ②
- ③

(2) 금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거래징수의무 면제

2) 결제의무

3)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3) 매입자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매입세액불공제)

(4) 가산세 징수

1) 금거래계좌 미사용가산세

$$\text{가산세} = \quad \times \quad \%$$

2) 납부지연가산세

$$\text{가산세} = \quad \times \quad * \times \quad \%$$

*

(5) 공급한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6) 부가가치세 환급 보류

- ①
- ②

(7)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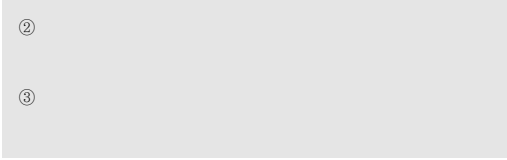
(8) 세금계산서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7.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1)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 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함

- ①



(2)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거래징수의무의 면제

2) 결제의무

(3) 매입세액불공제

(4) 가산세 징수

1)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가산세

$$\text{미사용가산세} = \quad \times \quad \%$$

2) 납부지연가산세

$$\begin{array}{l} \text{납부지연} \\ \text{가산세} \end{array} = \quad \times \quad \times \quad \%$$

(5) 공급한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6) 부가가치세 환급 보류

(7)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

(8) 세금계산서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8.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조특

* 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다만, 제외

$$\text{대리납부금액} = \quad \times \quad \text{---}$$

(2) 특례사업자 처리방법

1) 특례사업자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 예정고지납부 및 예정부과납부 규정에 따른 결정세액에서 차감

3) 특례사업자의 세액공제

는 다음의 금액을 에서
할 수 있음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quad \%$$

(3) 정보 제공 및 필요한 경비 지원

①

②

9. 면세점승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 면세점승객용역 거래계좌 개설의무화

(2)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거래징수의무의 면제

2) 결제의무

(3) 매입자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

1) 매입세액불공제

2) 미사용가산세

$$\text{미사용가산세} = \quad \times \quad \%$$

3) 납부지연가산세

$$\text{납부지연가산세} = \quad \times \quad \times \quad \%$$

(4) 공급한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5) 부가가치세 환급제한

①

②

(6)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

10. 외국인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특례

- 1) 간접세특례
 - ① 부가가치세 특례

② 개별소비세 특례

2) 사후관리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3)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1.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1)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

(2) 부가가치세액 징수

1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1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 취지

(2) 공제요건

(3) 과세특례

$$\begin{array}{l} \text{매입세액공제액} \\ = \quad \quad \quad \times \text{---} \left(\quad \quad \quad \text{---} \right) \end{array}$$

(4) 확정신고시 정산 등

1)

①

②

2)

15.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 하이브리드 자동차

①

②

(2) 전기자동차

①

②

(3) 수소전기자동차

①

②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일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1)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①

②

(2) 조세감면내용

1)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2) 지방세 감면(2019.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적용)

① 취득세 및 재산세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3)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9.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적용)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

2. 조세의 추징

①

②

③

조특

SECTION

0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1) 세액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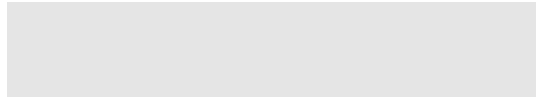
① : ②

(2) 감면한도

① × %
 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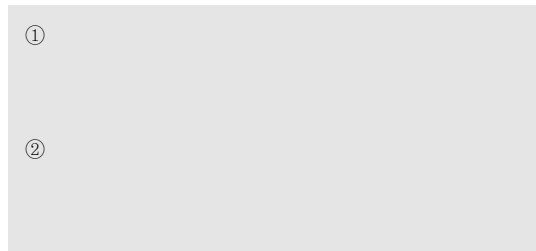
(3) 사후관리

1)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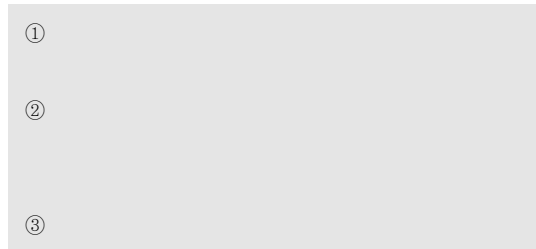


구 분	과세특례
입주기업의 경우	: % , : %
개발사업의 경우	: % , : %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

- ①
- ②

4.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5.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①
- ②
- ③

SECTION 0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조세특례의 내용(법인세·소득세 감면)

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이 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가 하는 개발사업 등

2. 감면세액의 추정

- ①
- ②
- ③

SECTION 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첨단의료 복합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과세특례

: %, %

(2) 감면한도

- ① × %
- ② × (



(3) 사후관리

1)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2)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조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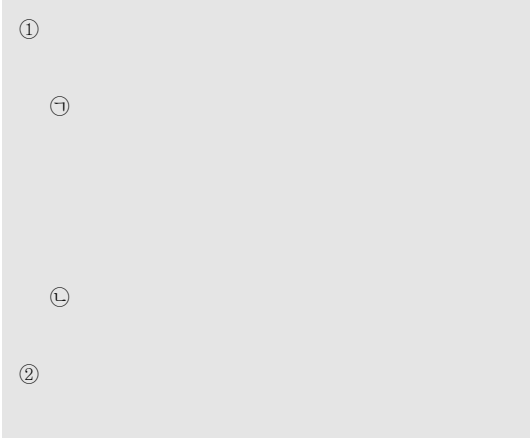
- ①
- ②

SECTION 05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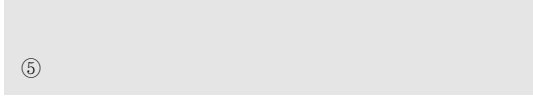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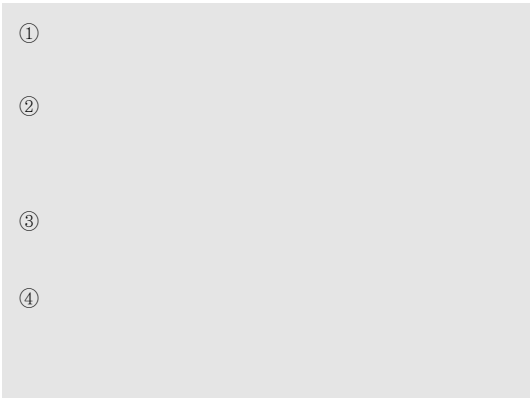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2) 과세특례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3) 사후관리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 요건

(2) 과세특례 내용

1) 모회사 :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

2) 자회사(양도대상법인) :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3)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4) 법인의 다른 주주 :

(3) 사후관리

- ①
- ②
- ③
- ④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1) 요건

- ①
- ②

(2) 과세특례

1) 수증법인 :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 주주

- ①
- ②

㉠ 거주자 :

㉡ 내국법인 :

3)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 배제

(3) 사후관리

- ①
- ②
- ③
- ④

조특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2)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 :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 산입

(3) 사후관리

- ①
- ②

5.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①
- ②

(2) 원천징수특례

(3) 사후관리

- ①
- ②
- ③

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특례

(1)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 사후관리

- ①
- ②

SECTION 06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감면대상

(2) 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3) 감면한도

$$\begin{array}{l} \textcircled{1} \quad \quad \quad \times \% \\ \textcircled{2} \quad \quad \quad \times \quad (\quad \quad \quad) \end{array}$$

(4) 사후관리

1)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2) 폐업(해산)한 경우 등의 사후관리

- ①
- ②

(5) 창업의 범위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1) 과세이연

① 법인 :

② 거주자 :

조특

(2) 적용 요건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① 선취득 후양도 :

② 선양도 후취득 :

(3) 사후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 ②
- ③

* “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①
- ㉠
- ㉡
- ②

③

(3)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세액 추정)

(4)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2) 전용계좌 요건

- ①
- ②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SECTION 01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 의료비 등 공제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

②

③

④

⑤

⑥

(2) 월세세액공제

(3) 사후관리

(4) 적용배제

조특

2.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일몰)

세액공제액 = 선택(,)

①
$$\left[\frac{\text{ } - \text{ }}{\text{ } \times \text{ } \times \%} \right] \times \%$$

②
$$\text{ } \times \text{ } \times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 공제대상액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1) 절차

1) 현금거래 사실 확인신청

2)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3)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4) 거래사실 확인 후 통지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적용배제

(3) 현금거래의 확인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text{세액공제액} = \text{Min}(\text{①}, \text{②})$$

$$\text{①} \quad \times \quad \%$$

$$\text{② 한도 : } (\quad \quad \quad \text{경우 : } \quad \quad \quad)$$

(2) 사후관리

(3) 적용배제

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 특례

(1) 금지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②

(2) 매입세액으로 의제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결제방법

(4)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5) 금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액 납부방법

(6) 보관기관을 사업자로 의제

(7) 관세면제

SECTION 02

조세특례의 제한 등 (05년 기출)

1. 중복지원의 배제

(1) 취지

(2)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경우

- 1)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지원 배제
- 2) 투자세액공제 상호간 중복적용 배제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text{세액공제액} = \quad \times$$

4)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상호간 중복적용배제

5) 세액감면 상호간 중복적용배제

6) 양도소득세감면 상호간 중복적용배제

7) 77조, 85조의7 중복적용배제

8) 98조의2, 98조의3 중복적용배제

9)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중복적용배제

2.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25년 기출)

(1) 추계결정하는 경우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3)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4) 사업용계좌 개설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3.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 (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배제

4. 최저한세(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2년 기준)

(1) 의의

(2) 법인세 최저한세

$$\text{최저한세} = \text{Max}(\text{①}, \text{②})$$

① × %*(%)

②

*

%

(3) 소득세 최저한세

$$\text{최저한세} = \text{Max}(\text{①}, \text{②})$$

① × %*(%)

②

(4)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조세우대조치의 부인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2) 경정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조특

5.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유형1)

① (조)

② (조)

③ (조)

④ (조)

⑤ (조)

⑥ (조)

⑦ (조의)

⑧ (조의)

⑨ (조의)

⑩	(조)
⑪	(조의)
⑫	(조)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금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②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유형2)

①
②

(3) 증여세감면한도액

6.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1)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례

$$\text{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text{Min} \left[\quad \times \quad \% \right]$$

* “ ”란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①

- ②
- ③
- ④
- ⑤

- ⑤
- ⑥

(2)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①
- ②

조특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text{Min} \left[\quad \times \quad \% \right]$$

7.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①
- ②
- ③
- ④
- ㉠
- ㉡
- ㉢

Chapter 06

보칙

1.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 사전계획

(2) 조세감면건의

(3) 의견제출

①

②

(4) 평가

(5)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6)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